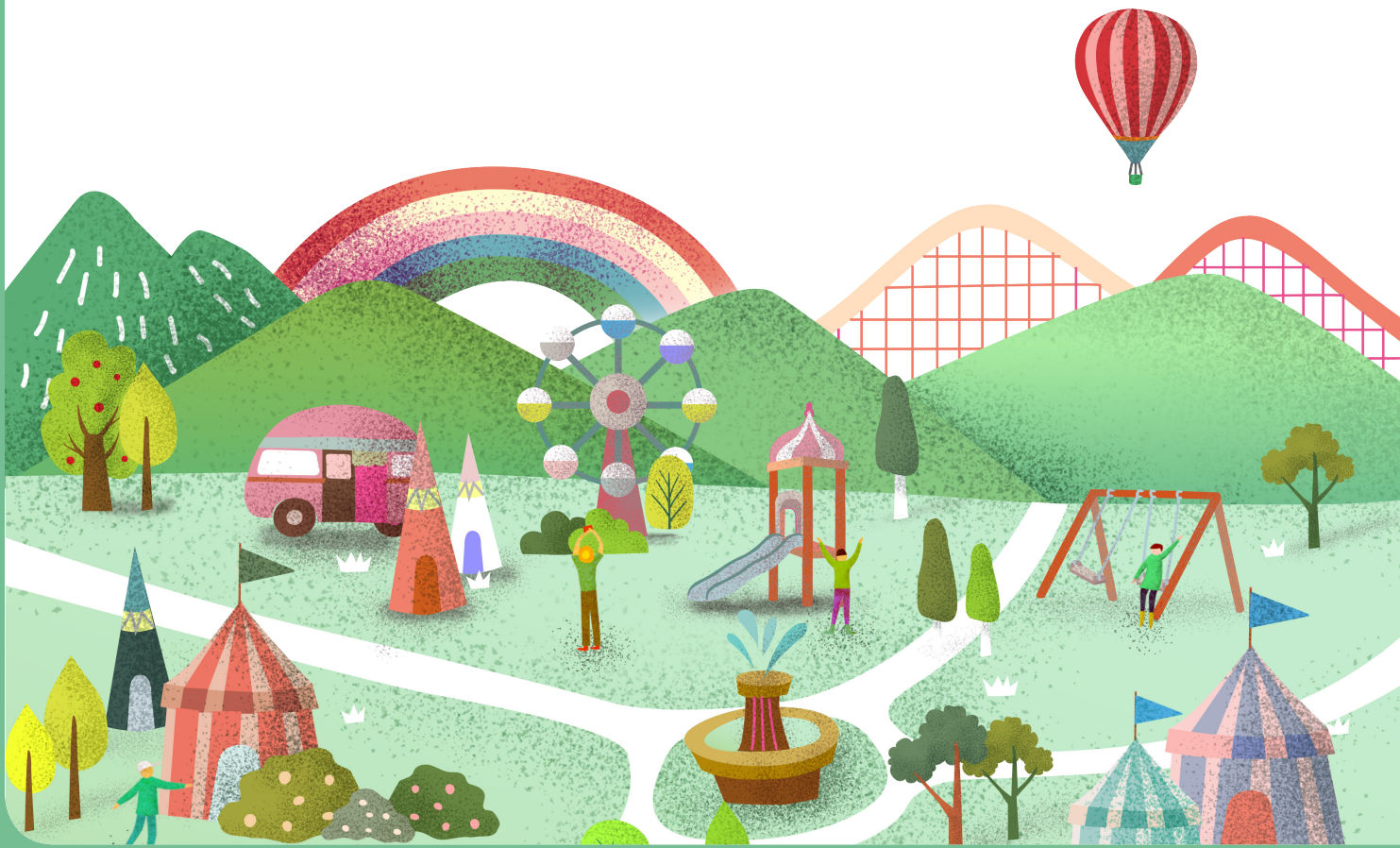


2018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안 내 】

본 매뉴얼은 유원시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행정업무, 안전관리, 민원사례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유원시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발간한 것입니다.

차 례

I. 행정업무

1.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현황	3
가. 유원시설업의 정의	3
1) 유원시설업의 정의	3
2) 관련 용어	6
나. 유원시설업 현황	8
1) 국내 유원시설업 현황	8
2) 해외 유원시설업 현황	11
2. 유원시설업 업무 체계	12
가. 개요	12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5
다. 기타유원시설업	19
라. 기타유원시설업관련 키즈카페	22
3. 주요 행정 업무	28
가. 시설 및 설비기준	28
1) 유원시설업 종류	28
2) 설비 및 설비기준	28
나. 허가·변경허가·조건부허가	30
1) 허가	30
2) 변경허가	34

3) 조건부 영업허가	36
다. 신고·변경신고	40
1) 신고	40
2) 변경신고	43
라. 관광사업의 양수	45
1) 지위 승계	45
2) 처분 또는 명령의 승계	47
3) 휴업 및 폐업 고지	48
마. 보험가입 등	49
바. 타인경영 금지	50
사. 물놀이형 유기사설업자의 안전 기준	51
1)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51
2) 안전요원	59
아.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	61
1) 영업질서 유지	61
2) 안전관리	61
3) 보고 및 사후조치	63
4) 상호 표시	63
5) 게임물 관리	63
자.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64
1) 유원시설업자 등의 의무	65
2)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65
3) 안전성검사 시기	65

4) 안전성검사 방법	66
5) 안전성검사 의미 및 결과	67
6)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 및 검사결과 통보	68
7) 검사종류	69
8) 검사기준	76
9) 검사대상	79
차.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91
1) 안전관리자 자격	91
2)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94
3) 안전관리자의 임무	94
4)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95
5) 안전관리자 선임	96
카. 사고통지 및 조치	97
1)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97
2) 중대한 사고 등	97
3) 조치내용	98
4) 운행적합검사	98
5) 사고통보기한 및 보고내용	98
타.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 기관	101
1) 안전성검사 위탁 근거	101
2) 안전성검사 위탁업체에 대한 형법 적용상 지위	101
3) 안전성검사 기관	102
파. 안전관리자 교육 기관	104

하. 위반자에 대한 제재	105
1)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형)	105
2) 행정처분	106
3) 등록 취소 등	110
4) 폐쇄조치 등	112
5) 과징금 부과	113
6) 과태료 부과	115
4. 유원시설업 입지 관련 법령	117
가. 개요	117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122
다. 유원시설업 운영 가능한 건축물 및 용도지역	126
1) 유원시설업 입지지역	126
2) 유기시설의 공작물축조 신고	128
라. 유원지	131
1) 정의(제56조)	131
2) 유원지 결정기준(제57조)	131
3) 유원지 구조 및 설치기준(제58조 제1항)	132
4) 유원지 내 설치물 및 설치기준(제58조 제2~5항)	132
5) 유원지 개발 절차	135
6) 유원지 관련 해석	137
마. 관광지와 관광단지	139
1) 정의(법 제2조)	139
2) 시설기준(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및 관련[별표 18])	139
3) 설치 가능 시설(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141
바. 도시공원	142
1) 정의(법 제2조)	142
2) 도시공원 계획 및 설치	142
3) 도시공원에서의 유원시설업	143

사.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46
1) 정의	146
2) 사업계획 승인	147
3) 사업계획 승인 기준(시행령 제13조)	148
5. 기타 행정 참고사항	149
가. 유원시설 운영 관련 법령	149
나. 인형뽑기	151
다. VR/AR 적용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153
라. 코드 아담제도(어린이실종예방)	155

II. 안전점검

1. 합동실태점검	161
가. 개요	161
나. 목적	161
다. 점검시기	161
라. 점검대상	162
마. 점검반 구성 및 주요 점검사항	162
바. 점검방법	162
사. 점검결과제출	162
2. 유원시설업 의무 게시 사항 작성 예시	164
가. 영업소 명칭(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 명칭)	164
나. 이용요금표	165
다.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사항	166
라. 안전점검표시판	167

마. 피난안내도	169
바.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170
사. 물의 순환 횟수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171
아.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172
자. 수심표시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173
3. 안전관리계획서	174
가. A형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174
나. B형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204
다. A형 물놀이형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249
라. B형 물놀이형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280
마. A형 기타유원시설업	328
바. B형 기타유원시설업	355
4. 안전사고 사례 및 대응요령	396
가. 안전사고 사례	396
나. 안전사고 대응요령	400

III. 민원사례

1.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의 유형(FAQ)	405
2. 민원사례	415
가.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415
1) 타법규 규정시설에 대한 유원시설업 허가 여부	415

2) 기타유원시설업에서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추가	416
3) 유기시설 폐기에 대한 변경허가신청 관련 문의	417
4) 무료 이용시 유원시설업 허가 · 신고 여부	418
5) 유원시설 허가 전 사람 탑승 가능 여부	419
6) 모노레일 허가관련	420
7) 매년 한시적 영업 후 영업재개시 절차	421
8) 6개월미만 단기 허가 · 신고시 폐업절차	422
9)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423
10) 음식점·야영장 내 트램플린,에어바운스 설치시 신고여부	424
11) 40제곱미터이하 확인검사대상 설치시 신고 여부	425
1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26
나.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427
1) 실내 유원시설업 다른 업과의 구획	427
2)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428
3) 의무실 약품 사용	429
4) 대지면적(연면적) 산정기준	430
5) 풍속계 설치 기준	431
다. 유원시설업 입지지역	432
1) 「국토계획법」상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	432
2)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가능여부	433
3) 자연녹지지역 내 ‘배터리카’, ‘두더지’	434
4) 위락시설에 유기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435
5) 판매시설에서 입지 가능 여부	436
6) 물놀이형 검사대상기구 입지가능 지역	437
7) 대규모 박람회장 입지 가능 여부	438
라. 물놀이형 유원시설	439
1) 수영장 해당 여부	439

2) 야외 간이물놀이 시설 해당 여부	440
3) 수질검사기준 대상항목, 검사기관, 검사횟수	441
4) 바데풀 등 부대시설 안전요원배치	442
마.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	443
1) 키즈카페 운동시설지역에 설치 가능여부	443
2) 관광사업 관리여부	444
3)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어린이놀이시설과 중복	445
4) 키즈카페 본점과 지점별 신고	446
5) 키즈카페내 검사대상 유기기구 있는 경우	447
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448
1) 안전사고 보고 및 조치	448
2)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권한 유무	449
3) 안전요원 배치	450
사. 게임물해당 유원시설	451
1) 영업시간 적용 대상	451
2) 사행성조장 금지, 영업시간, 청소년출입 미준수시	452
아. 의무교육	453
1) 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명칭	453
2) 휴업신고 업체 의무교육 대상 포함여부	454
3)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주기기준	455
4) 기타유원시설업자 대리인 교육 인정여부	456
5) 기타유원시설업 의무교육 대상자	457
자. 기타	458
1) 행정처분 차수 적용	458
2) 공매로 인한 유원시설업 소유자 변경	459

3) 유원시설업의 타인 경영	460
4) 유기시설·유기기구 총 수	461
5) 수륙양용선박의 타 법령과의 중복 적용	462
6) 휴업 중 보험 가입	463
7) 놀이형 보트타기 안전·위생기준 적용 여부	464
8) 결격사유 조회 및 미신고 폐업	465
9) 양수(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승계여부	466
10) 관광사업자의 영업보증금 예치	467
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해당여부	468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해당 않 됨	468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해당 됨	474
3. 관광진흥법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설명 및 사진	477
가. 검사 대상 유기시설·기구	477
나. 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기구	491
4. 주요기관 연락처	497

I. 행정업무

1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현황

가. 유원시설업의 정의

1) 유원시설업의 정의

가)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어린이놀이기구」와 구분됨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관광진흥법에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제1호)

나)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

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확인검사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유기사설·유기기구 분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① 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 검사대상은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운동특성에 따라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으로 분류하며 주행형은 주행 종류에 따라 궤도, 주로, 수로, 자유주행형으로 세분류됨. 고정형은 승용물의 운동특성에 따라 종회전고정형, 횡회전고정형, 복합회전고정형, 승강고정형으로 세분류됨. 관람형은 체험장소와 형태에 따라 기계관람형, 입체관람형으로 세분류됨. 놀이형은 일반놀이형, 물놀이형으로 세분류됨

② 확인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 확인검사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으로 분류함

〈표1-1〉 유기사설·유기기구 분류

구분	분류	분류 기준	대표 유기기구
검사 대상	주행형	궤도/주로/수로/자유	모노레일, 무궤도열차, 후름라이드, 범퍼카 등
	고정형	종회전/횡회전/복합회전/승강고정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타가다디스크, 브레이크댄스, 우주전투기, 풍선타기 등
	관람형	기계관람/입체관람	영상모험관(가상체험), 다이내믹시트 등
	놀이형	일반/물놀이	편하우스, 에어바운스, 파도풀, 바다슬라이드 등
확인검사 대상	주행형	시속 5km 이하	미니기차, 배터리카, 배터리보트 등
	고정형	회전 직경 3m 이내	회전형라이더, 미니라이더, 로데오타기 등
	관람형	이용자 스스로 참여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영상입체관 등
	놀이형	보조기구이용 또는 물놀이체험	붕붕뽀플,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라) 해외 유원시설업의 정의

- 국제표준 ISO 17842-1와 유럽표준 EN 13814 등 해외 관련 표준에서는 유기사설·유기기구(amusement rides and amusement devices)는 이동식,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계 및 구조물, 예를 들어 회전목마, 그네, 보트, 회전관람차, 롤러코스터, 활강장치, 관람석, 막 또는 섬유 구조물, 부스, 무대, 사이드쇼 및 예술적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규정함.

[참고]

ISO 17842-1 : 2015(Safety of amusement rides and amusement devices —Part 1: Design and manufacture)

Mobile, temporary or permanently installed machinery and structures, e.g. roundabouts, swings, boats, Ferris wheels, roller coasters, chutes, grandstands, membrane or textile structures, booths, stages, side shows, and structures for artistic aerial displays.

EN 13814 : 2004(Fairground and amusement park machinery and structures - Safety)

Mobile, temporary or permanently installed machinery and structures e. g. roundabouts, swings, boats, ferris wheels, roller coasters, chutes, grandstands, membrane or textile structures, booths, stages, side shows, and structures for artistic aerial displays.

- 미국의 경우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유기기구를 영구적 놀이기구와 이동식 놀이기구로 구분함
 - 영구적 놀이기구(permanent amusement rides)는 180일 이상 한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스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 탑승자를 운송하는 기계 장비, 수상 도구 혹은 영구적 성격의 시설들의 조합을 의미함
 - 이동식 놀이기구(portable amusement rides)는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쉽게 이동·분리·조립이 가능한 유기기구임

2) 관련용어

가) 테마파크(Theme park)

- 테마파크란 통일된 테마를 바탕으로 오락, 여가, 놀이 등의 목적을 갖는 시설들로 구성되고 연출된 유원지(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사전). 계획된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환경, 놀이시설,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비일상적인 레저공간(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테마파크는 다채롭고 다양한 테마를 가짐. 테마파크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따라 통일성이 조성됨. 또한 테마파크는 하나의 독립된 공상체계로서 비일상적인 유희공간이자 현실과의 차단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가상·허구의 공간임¹⁾
- 테마파크는 다양한 오락, 음식과 음료, 샵, 특정 테마를 토대로 설계된 환경을 포괄하는 공간임²⁾
 - IAAP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는 테마파크를 “테마를 가진 어트랙션을 보유하고, 음식·의상·오락·소매점·놀이기구 등이 갖춰진 곳”으로 정의함
 - 어트랙션(attraction)은 방문객들의 즐거움, 유희, 오락, 교육을 위해 조성되고 관리되는 영구적인 자원을 의미함
- 테마파크 내 대부분의 어트랙션에는 특정 테마가 함축되어 있음.³⁾ 즉 테마란 ‘이용객 경험의 주요 부분’으로, 유원시설의 설계·개발·운영을 위하여 주요 고려사항임

나) 워터파크(Water park)

- 워터파크란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 2004)
- 워터파크는 설치 시설에 따라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영장업,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장업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1) 이종국·공성훈. (2007). '테마파크 활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5(4): 143-149

2) Ho & Ap. (2009). 'Manual on Elective II-Theme Parks and Attractions'

3) Pikkematt & Schuckert. (2007). 'Success Factors of Theme Parks: An Exploratory Study'. Tourism. 55: 197-208

- 펜션 등에서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일정공간에 물을 담수하여 미니 수영장 형태로 임시 운영. (수영장업에도 속하지 않고 유기기구가 없어 유원시설업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여름철에 넓은 공터나 운동장 등에 워터에어바운스와 조립식 수조(미니풀)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미니워터파크를 운영하는 곳이 많음

다) 키즈카페(Kids cafe)

- 대형건물, 식당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가 즐겁게 노는 동안에 부모는 편하게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국립국어원 순화어 2015)
- 순화 및 표준화 용어는 어린이 놀이방
- 대형 키즈카페는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붕붕뽀뽀, 미니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회전형라이드, 플레이스페이스 등 확인검사대상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키즈카페라고 유원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놀이시설만 있는 경우나 아무런 법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모래놀이, 어린이 장남감 등이 있는 경우도 있음.

나. 유원시설업 현황

1) 국내 유원시설업 현황

- 2018년 1월 현재, 2,165개의 유원시설업이 등록되어 있음. 이 중 종합유원시설업은 43개(1.98 %), 일반유원시설업은 314개(14.5 %), 기타유원시설업은 1,808개(83.51 %)가 등록되어 있음.
- 2015년 말, 종합유원시설업 40개, 일반유원시설업 284개, 기타유원시설업 571개를 비롯해 유원시설업 등록업체가 총 895개였던 것에 비하면 2년에 걸쳐 배가 넘는 1,270개 업체가 증가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기타유원시설업(913개 증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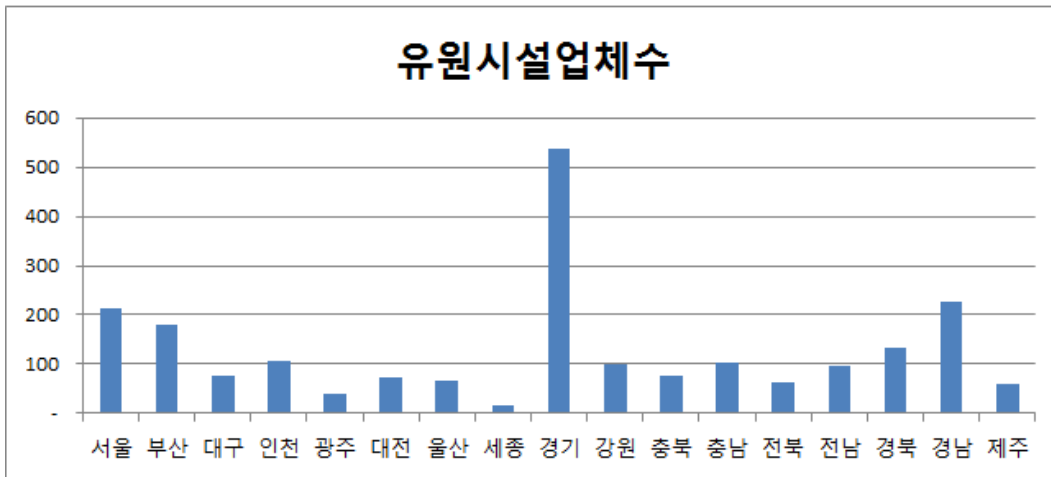
〈표 1-2〉 유원시설업 현황 (2018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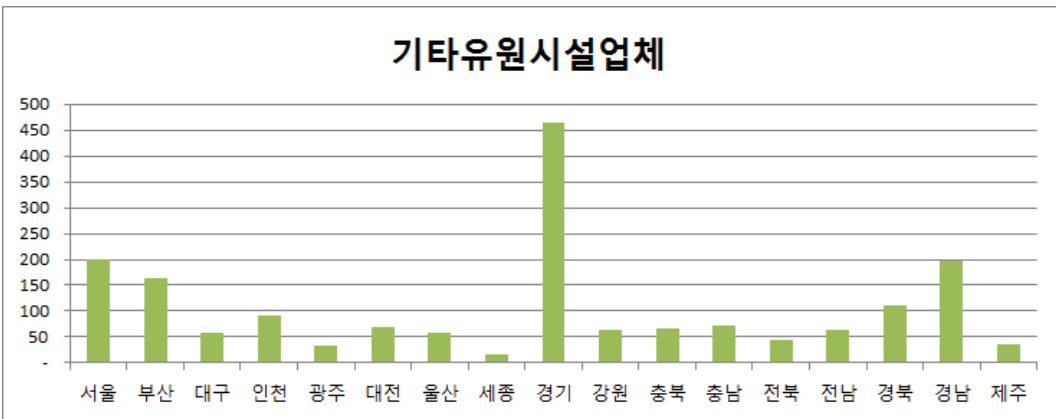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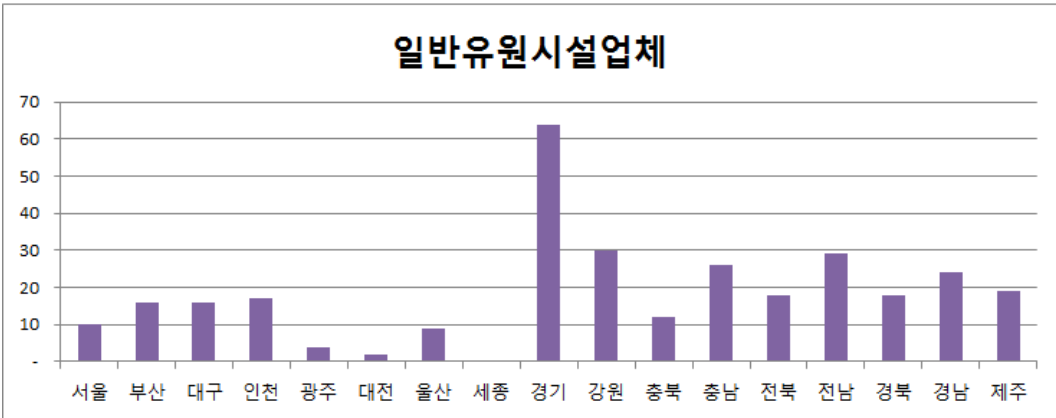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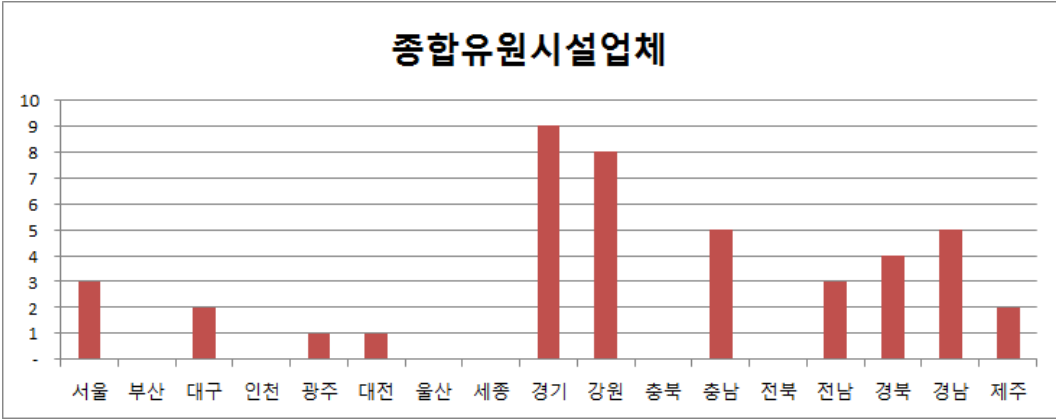
구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합계
서울	3	10	200	213
부산	-	16	165	181
대구	2	16	59	77
인천	-	17	91	108
광주	1	4	33	38
대전	1	2	70	73
울산	-	9	58	67
세종	-	-	15	15
경기	9	64	465	538
강원	8	30	63	101
충북	-	12	65	77
충남	5	26	73	104
전북	-	18	44	62
전남	3	29	64	96
경북	4	18	110	132
경남	5	24	196	225
제주	2	19	37	58
합계	43	314	1,808	2,16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1.1.기준)

- 2014년초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가능한 입지가 확대되어 키즈카페 형태로 운영하였던 업장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많이 하게 됨.
-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슬라이드, 수중모험놀이 등)를 작은 규모로 설치한 물놀이형 시설이 펜션이나 공원에 많이 생겨남.
- 유원시설업체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24%), 경상남도(10%), 서울(9%), 부산(8%), 경상북도(6%), 인천(5%), 충청남도(4%), 강원도(4%) 순으로 분포도가 높게 나타남.
- 전국의 유원시설업체 중 24%에 해당하는 538개의 유원시설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함. 경기도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각각의 사업장이 가장 많이 분포함.
 -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잠재적인 수요자층의 접근성이 뛰어나 유원시설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짐.



[그림 1-1] 지역별 유원시설업 분포 현황(2018)



[그림 1-2] 업종 구분별 지역 분포 현황(2018년)

2) 해외 유원시설업 현황

〈표 1-3〉 상위 25위 테마파크 입장객 수

(단위: 천 명, 전년도 대비 증가율%)

순위	상호	입장객(천명)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직 킹덤(플로리다)	17,536	18,588	19,332	20,492	20,395 (-0.5)
2	디즈니랜드(미국 애너하임)	15,963	16,202	16,769	18,278	17,943 (-1.8)
3	디즈니랜드(도쿄)	14,847	17,214	17,300	16,600	16,540 (-0.4)
4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오사카)	9,700	10,100	11,800	18,278	17,943 (-1.8)
5	디즈니 씨(도쿄)	12,656	14,084	14,100	13,600	13,460 (-1.0)
6	디즈니 엠티콧(Epcot) 센터(플로리다)	11,063	11,229	11,454	11,798	11,712 (-0.7)
7	디즈니 애니멀 킹덤(플로리다)	9,998	10,198	10,402	10,922	10,844 (-0.7)
8	디즈니 할리웃 스튜디오(플로리다)	9,912	10,110	10,312	10,828	10,776 (-0.5)
9	유니버설 스튜디오(플로리다)	6,195	7,062	8,263	9,585	9,998 (4.3)
10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플로리다)	7,981	8,141	8,141	8,792	9,362 (6.5)
11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미국 애너하임)	7,775	8,514	8,769	9,383	9,295 (-0.9)
12	침롱 오션 킹덤(중국 형친)	-	-	5,504	7,486	8,474 (13.2)
13	디즈니랜드 파크(파리)	11,200	10,430	9,940	9,790	8,400(-14.2)
14	롯데월드*	6,383	7,400	7,606	7,310	8,150 (11.5)
15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웃(캘리포니아)	5,912	6,148	6,824	7,097	8,086 (13.9)
16	에버랜드*	6,853	7,303	7,381	7,423	7,200 (-3.0)
17	홍콩 디즈니랜드	6,700	7,400	7,500	6,800	6,100(-10.3)
18	오션 파크(홍콩)	7,436	7,475	7,792	7,387	5,996(-18.8)
19	나가시마 스파랜드(일본 구와나)	5,850	5,840	5,630	5,870	5,850 (-0.3)
20	유로파 파크(독일 러스트)	4,600	4,900	5,000	5,500	5,600 (1.8)
21	상해 디즈니랜드	-	-	-	-	5,600 (new)
22	월트디즈니 스튜디오(파리)	4,800	4,470	4,260	5,050	4,970 (-1.6)
23	에프텔링(De Efteling)(네덜란드 카슈벨)	4,200	4,150	4,400	4,680	4,764 (1.8)
24	티볼리 가든(덴마크 코펜하겐)	4,033	4,200	4,478	4,733	4,640 (-2.0)
25	씨월드 플로리다	5,358	5,090	4,683	4,777	4,402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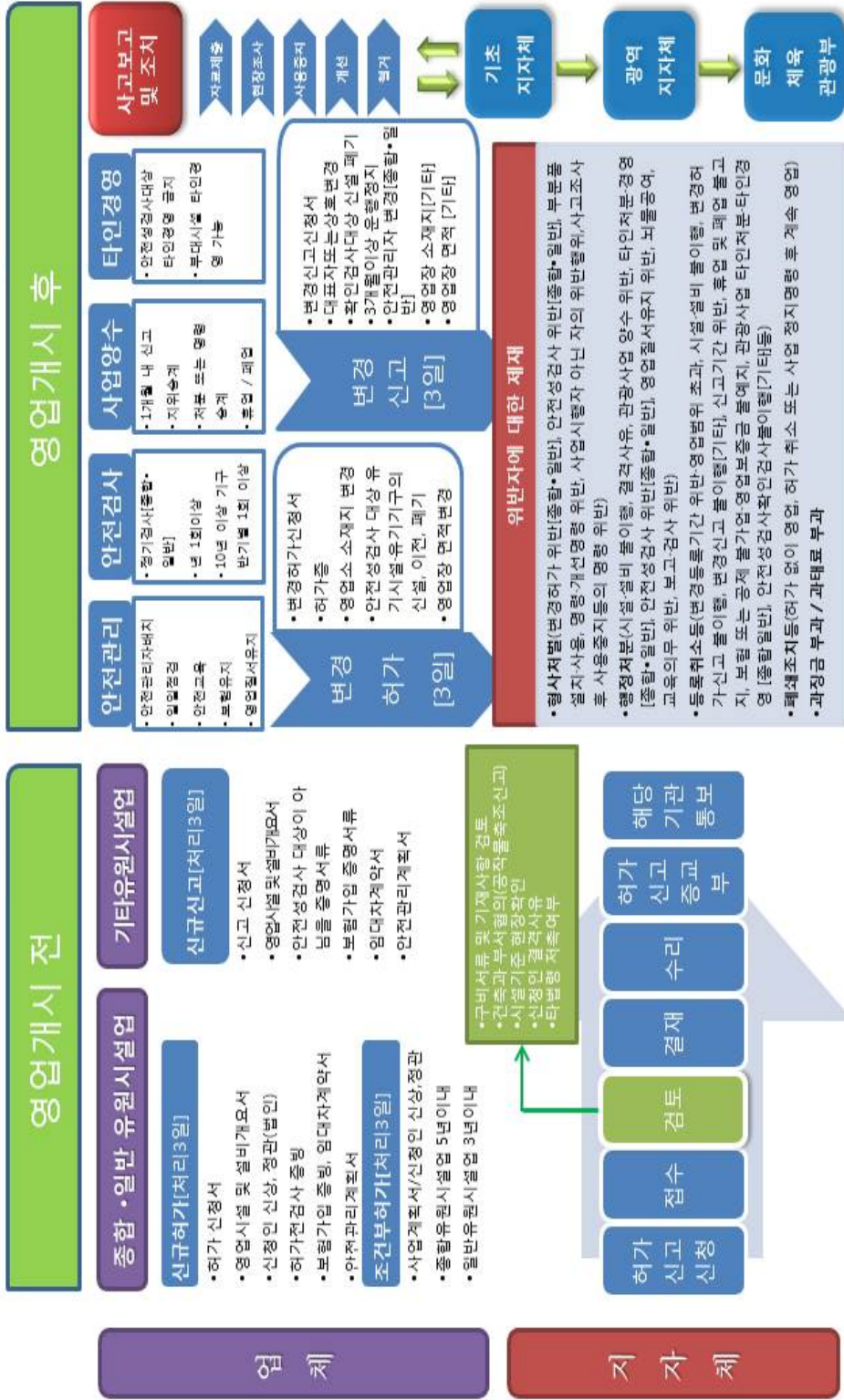
※ 자료: AECOM(2017), '2016 Theme Index, Global Attractions Attendance Report'를 토대로 재구성
(에버랜드는 캐러비안베이 입장객 수를 제외)

2 유원시설업 업무 체계

가. 개요

- 유원시설업 관련 주체는 유원시설업의 운영자인 유원시설업체,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및 안전 상태를 지도·점검하는 지자체, 유원시설업 관련 법 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음
- 「관광진흥법」 및 관련 법규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원시설업 운영 단계마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임무가 다름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는 ‘허가 및 신고 업무’,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처리 업무’, ‘승계·제재 등 각종 행정처리 업무’로 구분됨
 - ‘허가’에는 신규허가,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 ‘신고’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가 있으며 각 절차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구비 서류가 다름
 - 유원시설업체와 지자체는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유원시설업체는 안전사고 발생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등록관청에 사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통보 받은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유원시설업체는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종 행정관청의 조력 혹은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를 갖추고 있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과 확인검사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를 갖추고 있는 기타유원시설업에는 각기 상이한 행정절차가 적용되고, 그 책임과 역할의 범위도 다름

종합업무흐름도



[그림 1-3] 종합 업무 흐름도

신규 허가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변경 허가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① 허가신고 신청(서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신고시 신고신청서) 영영시설 - 기구별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확인서 - 신고시 기구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증명서류 (확인검사대상 결과통보서) - 부화기인증명서 - 안전관리자 지적사항(허가시만 해당) - 범인들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 / 사업자 경력사유 확인 - 대지면적(신내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이상 여부(신고시 정기확인검사대상기 구인 경우 해당 없음) - 안전관리계획서 • 담당부서 협의(지자체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적용 여부(건축물 용도) / 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여부 - 건축물 용도: 중화·일반유원시설임 : 우탄시설 - 기타유원시설임(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타유원시설임(500㎡ 이상) :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 (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이전·신설·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 변경신고 변경신고 신청서, 신고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 (확인검사대상 유기기구 신설폐기, 영업소 단적, 영업소 소재지, 상호 변경, 대 표자 변경 등) 	
②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점수(민원인 ⇒ 민원실 ○번 창구) •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접수처리 (수수료 발생) 		
③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 현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내인 경우 용도의 시설과 불리, 구획 또는 구분 여부 - 방송시설 및 통신시설 설치 여부(허가시만 해당) - 화상열 구비 여부(허가시만 해당) - 비상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안내소 설치 여부(허가시 해당) - 의무시설, 예비전원시설, 음극점 및 매점 시설 설치 여부(중합유원시설) - 유기사설·유기기구 적정 설치 여부 - 인위안전점검표사만 설치 여부 / 구급약품 비치 여부 - 불특정인행 설치 경우 : 수질검사장비, 수양인양 구조장비, 씻을 수 있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 현장확인(시설변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사설·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 유기사설·유기기구 폐기·이전 시 확인 - 영업소 면적(축소, 증설) 확인 	
④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변경 시 확인 결과 출장 복명(보안·반려·수리 결정) • 변경허가 수리 문서작성 결재 		
⑤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행정시스템 변경허가(신고) 처리 및 허가증(신고증) 제작 • 허가(신고)사항 통보(민원인) 		
⑥ 허가신고증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고)증 교부(민원실 ○번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증(신고) 교부(채권 ○○원, 대표자 변경 시 면허세 ○○○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⑦ 해당기관 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관공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검사 기관, 관광공사, 협회 		

[그림 1-4] 지자체 허가신고 업무 흐름도

※ 자료: 경기도 00시 자료 참조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영업개시 전

-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가)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지 여부를 확인함
 - 종합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를 6종 이상 갖추고 있으며,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하되 예비전원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며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함
 -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를 1종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함
-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 다른 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허가전검사: 안전성검사 기관

- 허가전검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접수 및 검사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심사 및 현장검사(설계검사 및 하중·전기설비 및 제어회로·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검토) 실시
- 적합(개선필요 포함), 부적합 판정
 - 적합 판정 또는 부적합 판정 결과는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지자체 및 업체에 통보
 - 부적합 판정 후 업체에서 보완완료 조치후 안전성검사기관에 재검사 신청에 따른 재검사 실시

다) 허가: 지자체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결재 처리함
 - ‘반려’ 처분 시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함
 - ‘보완’ 처분 시 보완 후 영업을 개시하고, ‘수리’ 처분 시 지자체는 허가증을 발급하며 업체는 영업을 개시함

2) 영업개시 후

- 영업개시 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관광사업 양수’, ‘변경허가’, ‘변경신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유원시설업체의 법규 위반 시 벌칙 등 처분을 내림

가)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함
 - 6개월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영업종료 후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시 이미 다른 업체에 선임되어 있거나 허가업체 직원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면 안됨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 이용자 안전, 자체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책 마련, 영업소 명칭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함
-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되며, 매 2년마다 1회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사고내용을 통보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침해여부를 판단 후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조치를 해야함

나) 안전성검사

-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 상태를 확인 받고 10년 이상이 된 유기사설·유기기구중 반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아야되는 유기기구경우에는 반기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 확인검사대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확인검사를 받아야 되며, 정기확인검사대상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2년마다 정기확인검사를 받아야됨

다) 관광사업 양수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승계됨

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영업소 소재지 변경,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영업장 면적 변경)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확인검사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폐기, 안전관리자의 변경, 안전성검사대상 및 정기확인검사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3개월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마) 벌칙 등 제재

- 유원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음



[그림 1-5]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업무절차

다. 기타유원시설업

1) 영업개시 전

-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가)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지 여부를 확인함
- 설치하고자 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단 정기확인검사 대상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됨

나) 확인 검사 대상 검사서 : 안전성검사 기관

-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검사 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검사를 통해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을 내림
- 안전성검사 기관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결과가 있는 검사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검사서를 통보함

다) 신고: 지자체

- 신고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서, 각종 구비서류(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보험 가입 등 증명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한 후 결재 처리함
 - ‘반려’ 처분 시 다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 ‘보완’ 처분 시 보완 후 영업을 개시하고, ‘수리’ 처분 시 지자체는 신고증을 발급하며 업체는 영업을 개시함

2) 영업개시 후

- 기타유원시설업체는 영업개시 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관광사업 양수’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유원시설업체의 법규 위반 시 벌칙 등 처분을 내림

가) 안전관리

- 본인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함
 - 6개월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영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 이용자 안전, 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책 마련, 영업소 명칭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함
- 사업자 의무교육(정기확인검사대상 시설 보유 사업자만 해당)
 -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4시간 받아야 함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사고내용을 통보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침해여부를 판단 후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조치를 해야함

나) 관광사업 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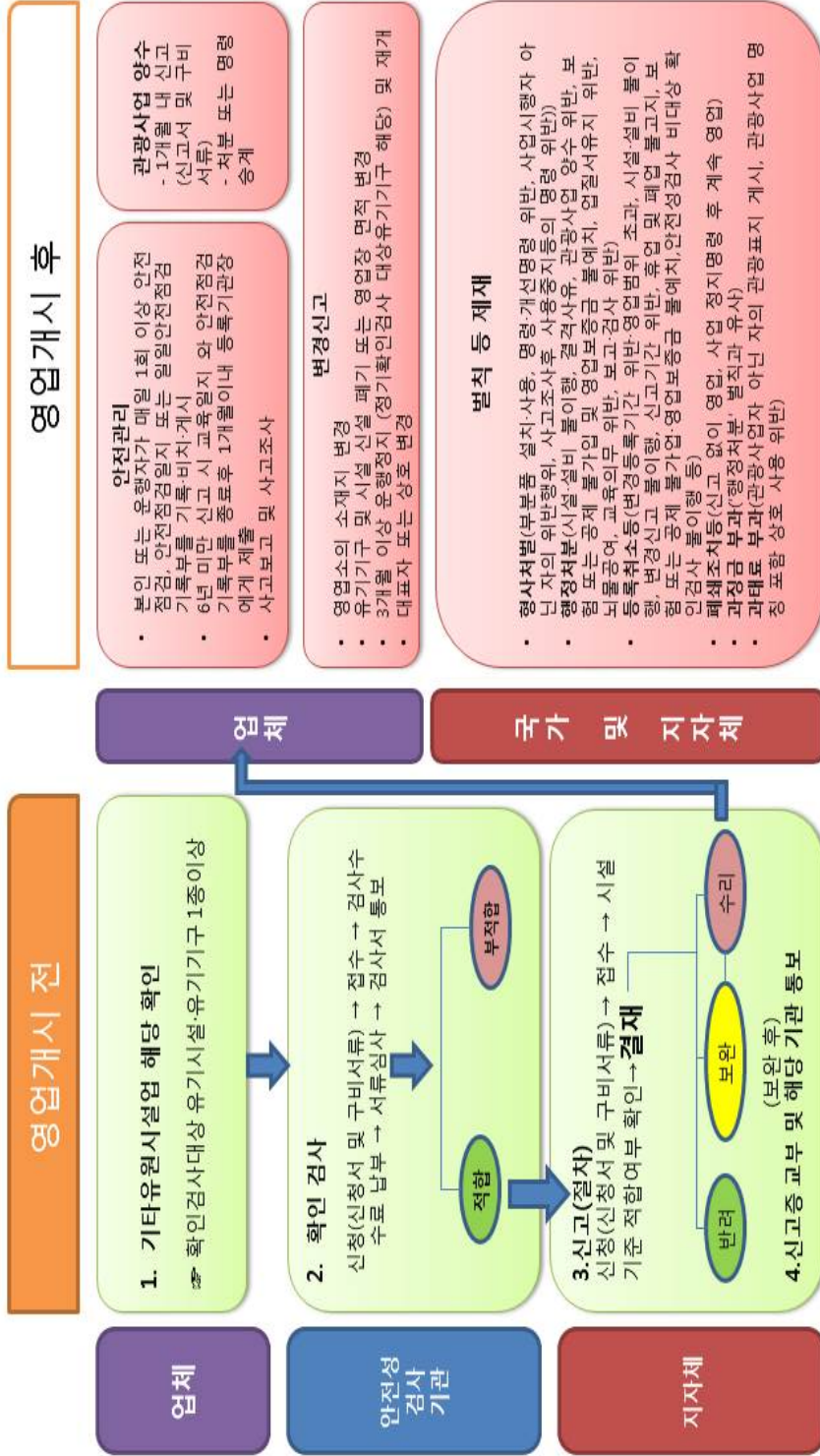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승계됨

다) 변경신고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유기시설·유기기구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정기확인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개월이상 운행지 또는 재개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라) 벌칙 등 제재

- 유원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음
 - 안전성검사 위반, 타인처분 및 경영 등의 사항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에만 적용되고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림 1-6] 기타유원시설업 업무절차

라. 기타유원시설업관련 키즈카페

1) 영업개시 전

- 키즈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진흥법의 유기사설·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가)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 ‘유기사설·유기기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지 여부를 확인함
- 설치하고자 하는 유기사설·유기기가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단 정기확인검사대상 시설에 경우 제외됨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경우

- 설치기구중 안전성검사 대상 1종 이상 있는 경우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업무 절차 시행

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만 있는 경우

- 설치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만 있는 경우 기타유원시설업 업무 절차 시행

라) 설치기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 또는 기구에 대하여는 유원시설업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함

- 단, 관광진흥법의 유기기구이면서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하는 미니모험놀이, 플레이스페이스(정글짐)에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의 정기확인검사를 대신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검사로 대체 관리가능함
-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

그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어린이놀이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품 목에 해당되어 설치이전에 안전인증을 필한 시설·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시 최초검사는 설치자가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후 정기검사는 키즈카페 운영 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야 됨

〈표1-4〉 키즈카페의 어린이놀이시설과 유기사설·기구 관련 사항 비교

구분	어린이 놀이기구	유기사설·기구
관련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광진흥법
업종	없음	대부분 ‘기타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도 가능)
검사	제조사 제조검사 설치시 설치검사 2년에 1회 정기검사	최초 설치시 비대상 확인검사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시에는 해당기 구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
설치기구명	폐쇄형놀이기구 조합놀이대	플레이스페이스 (폐쇄형놀이기구, 조합놀이대와 동일 한 기구)
	해당없음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코인라이더, 붕붕뽀플 등
보험	가입	가입

- 식품위생법 적용(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경우)
 -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게 되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①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업신고시 면적 구분

- 식품위생법에 대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면적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에 대한 면적을 별도 구분 관리함.
- 시설기준의 구획 기준은 출구가 같고 간단히 영업장 구획 인정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1.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키즈카페내 유기기구이면서 어린이놀이기구 해당 기구



○ 키즈카페내 유기기구

	
<p>미니기차(궤도길이 30 m이내)</p>	<p>미니기차(궤도길이 30 m초과) ※ 궤도길이 30 m초과되어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시설</p>
	
<p>붕붕뽀뽀</p>	<p>붕붕뽀뽀(유아용)</p>
	
<p>에어바운스(구름바다)</p>	<p>에어바운스</p>
	
<p>코인라이더</p>	<p>코인라이더(회전목마)</p>

2) 영업개시 후 (기타유원시설업 기준)

- 영업개시 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관광사업 양수’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유원시설업체의 법규 위반 시 각종 벌칙처분을 내림

가) 안전관리

- 본인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함
 - 6개월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영업종료 후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함
-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 상태를 확인 받고 10년 이상이 된 유기사설·유기기구중 반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아야되는 유기기구경우에는 반기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 이용자 안전, 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책 마련, 영업소 명칭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함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사고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침해여부를 판단 후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조치를 해야함

나) 관광사업 양수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경매·환가·압류 재산의 매각 등의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승계됨

다) 변경신고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유기시설·유기기구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정기확인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개월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영업소 소재지 변경,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영업장 면적 변경)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확인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폐기, 안전관리자의 변경, 안전성검사대상 및 정기확인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개월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라) 벌칙 등 제재

- 유원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음
 - 안전성검사 위반, 타인처분 및 경영 등의 사항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에만 적용되고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주요 행정업무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5조

1) 유원시설업 종류

-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보유 개수 및 면적 규정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됨(「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표 1-5> 유원시설업 유형

유형	정의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2) 시설 및 설비기준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표 1-6)에 부합하여야 함

- 종합유원시설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6종 이상으로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표 1-6>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 기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종합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량시설 등을 갖춘 것)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기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 시설, 원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3,025평이상) ■정전등 사업장전체의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시설 ■의무시설(구급약품,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 공간) 및 안내소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
일반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수소이온화농도,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면구조장비(구명구, 구명조끼,구명로프 등)/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 이내 갖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소 ■구급약품 비치
기타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 (12.1평이상) (정기확인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구급약품 비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나. 허가·변경허가·조건부허가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5조, 제31조

1) 허가

가) 허가 담당 주체 및 허가 관련 사항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원시설업 허가 시 검토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 및 검토 내용은 <표 2-4>와 같음

<표 1-7>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관련법규 및 담당부서

항목	내용	근거법규	담당부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시설의 안전성 ■안전관리자 배치 등 영업질서를 위한 사항 	「관광진흥법」	지자체 관광관련 부서
유원시설업 입지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내에서 입지가능 여부 검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종별 설치가능 여부 등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지자체 도시관련 부서
건축물 설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 ■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제한 및 건축용도별 사용 제한 등 검토 	「건축법」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오수처리 검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별, 면적별, 입지지역에 부합하는 오수처리계획 등 적합성 여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과
소방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검토 도면 작성 	「소방법」	소방서
상수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배수관 설치의 적정 여부 ■급수해당구역 여부 등 	「수도법」	상수도 사업소

나) 허가절차

(1) 허가 신청: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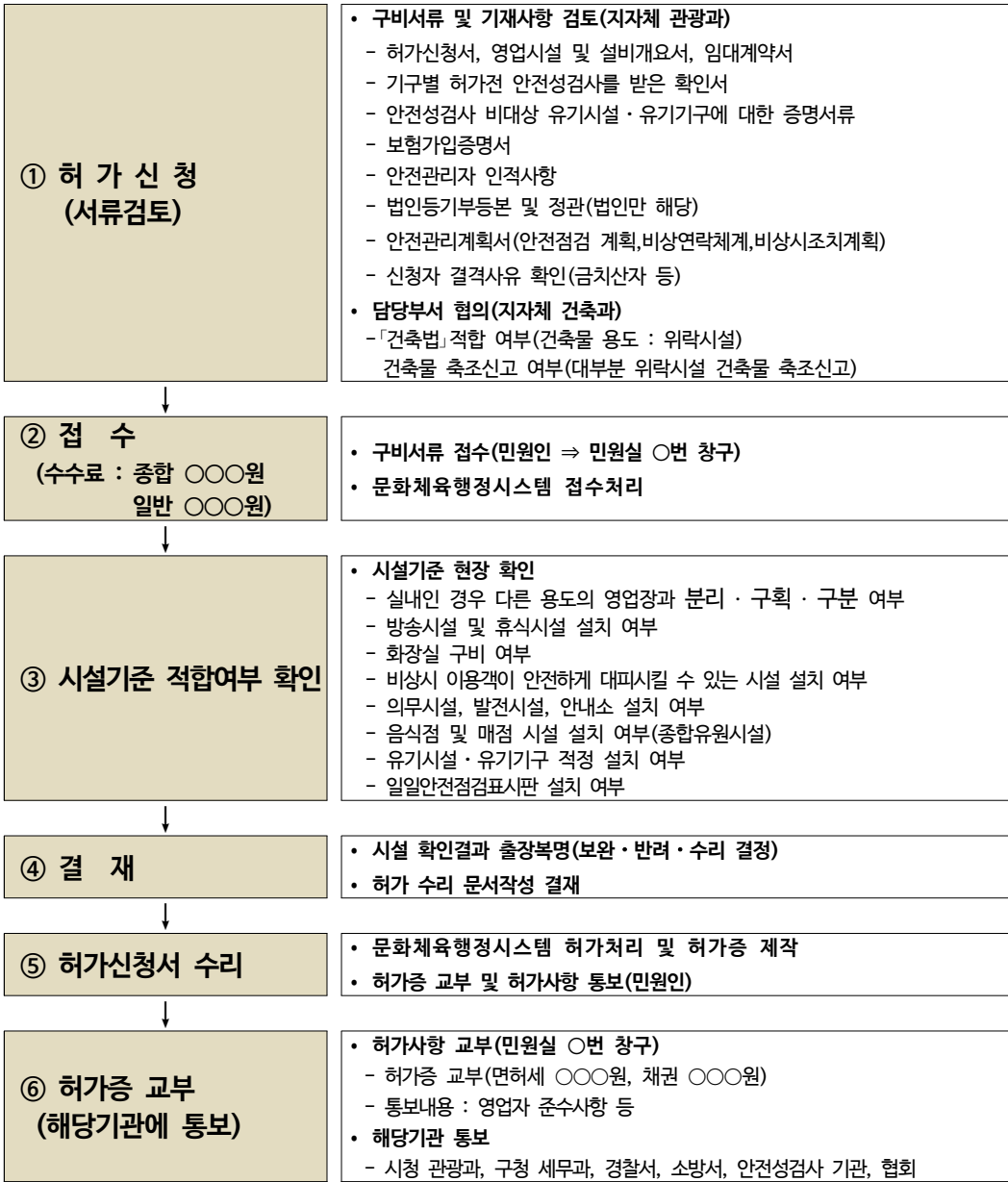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③ 정관(법인만 해당)
- ④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

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⑥ 「관광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⑧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 규정)를 준용함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그림 1-7] 신규 허가 절차

※ 자료: 경기도 〇〇시 자료 참조

2) 변경허가

가) 요건

- 유원시설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중요사항’
 - 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③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변경허가 절차

(1) 변경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허가증
 - ②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이전·신설·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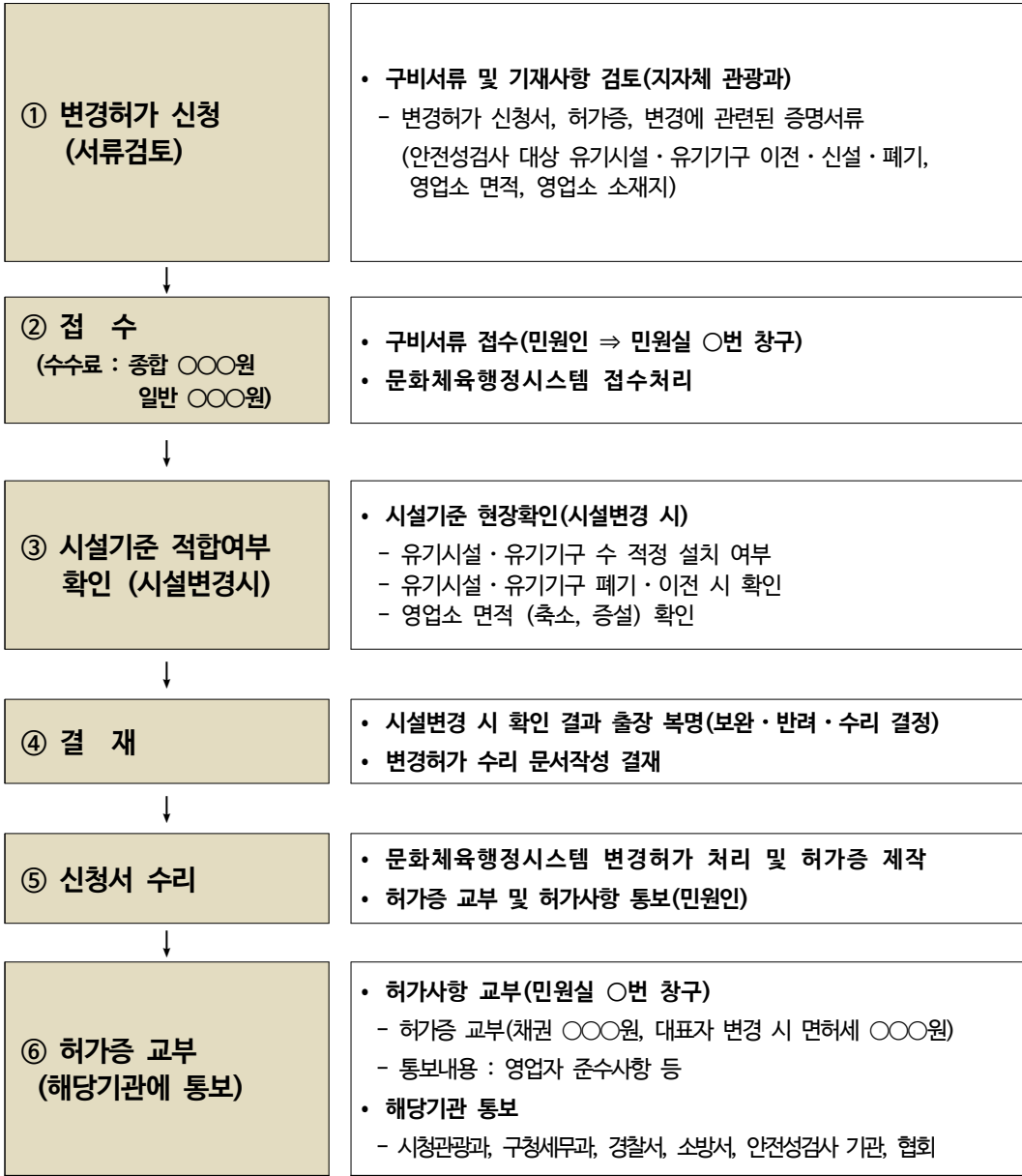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시설 변경시)

-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유기시설·유기기구 폐기·이전 시 확인, 영업소 면적(축소, 증설) 등을 확인함

(3) 결재

- 보완, 반려, 수리 결정하되 수리 결정시 허가증을 교부함

변경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그림 1-8] 변경허가 절차

※ 자료: 경기도 〇〇시 자료 참조

3) 조건부 영업허가

▣ 「관광진흥법」 제31조

가) 조건부 영업허가 및 취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설 및 설비(법 제5조 제2항)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3년 이내의 기간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①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③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함
- 조건부 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①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②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정관(법인만 해당)
- ②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 시설 및 설비 계획(법 제5조 제2항)
 -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 조건부 영업허가의 허가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
 - ③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법 제33조 제 2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법 제3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31조 제1항)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31조 제2항)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결격 사유 및 처리 방법〉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음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신고·변경신고

▣ 「관광진흥법」제5조

1) 신고

가) 주관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5조 제3항)

나) 신고절차

(1)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 유기시설·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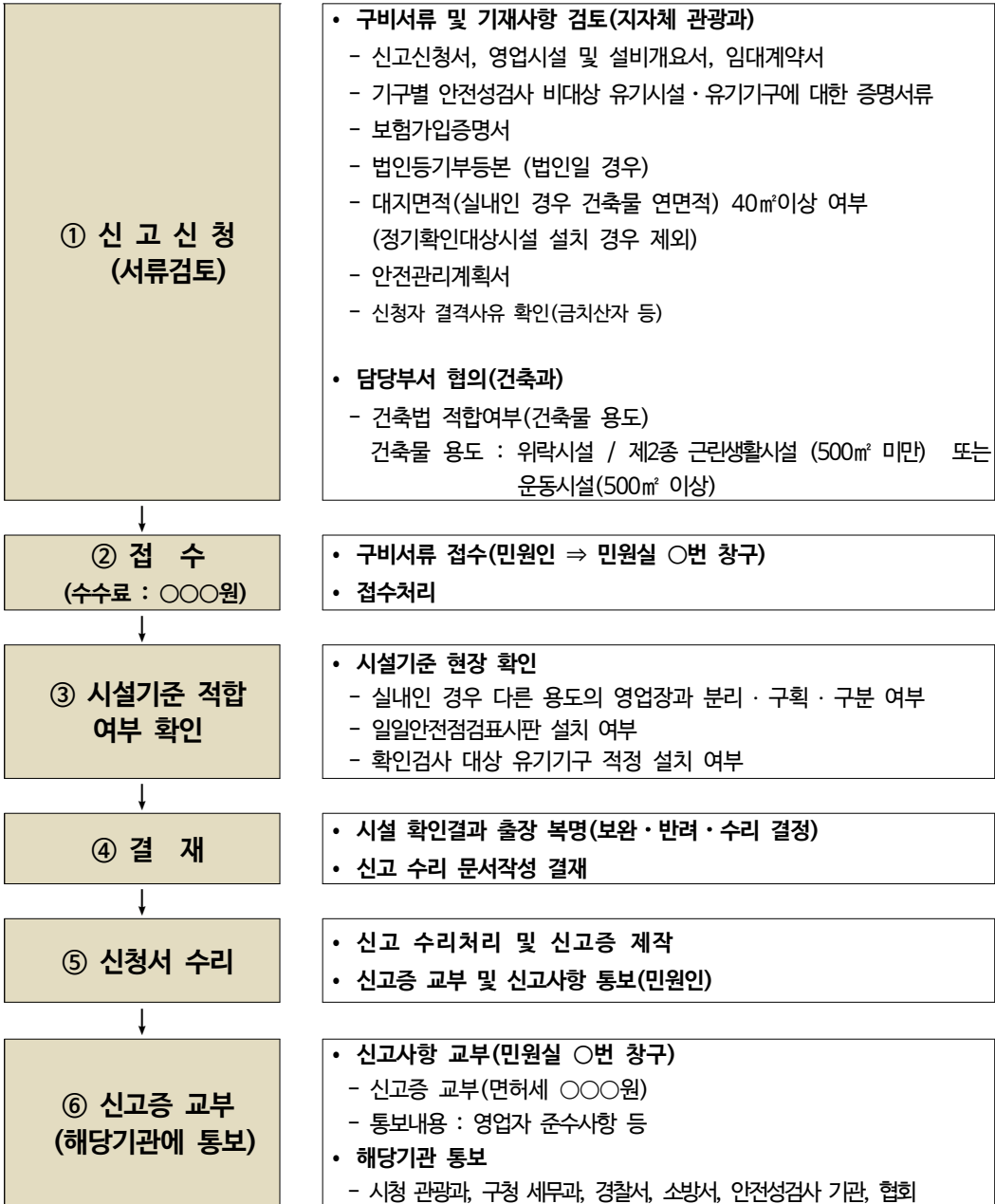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함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5조(허가 규정)를 준용함

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그림 1-9] 신고 절차

※ 자료: 경기도 ○○시 자료 참조

2)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표1-8〉 유원시설업별 변경신고내용

	변경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중합유원시설업 · 일반유원시설업 (법 제5조 제3항)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유기시설 · 유기기구 신설 · 폐기 ■ 안전관리자의 변경 ■ 안전성검사대상 3개월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재개 ■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
기타유원시설업 (법 제5조 제4항)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기구 이전 수반 소재지 변경 제외) ■ 유기시설 · 유기기구 신설 · 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

나) 변경신고 절차

(1) 변경신고 신청: 변경신고 신청서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별지19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사용)

① 신고증

- ②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신설 · 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검사대상 3개월이상 운행정지, 정기확인검사 3개월이상 운행정지)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시설 변경시)

-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유기기구 폐기 확인, 영업소 면적(축소, 증설) 등을 확인함

(3) 결재

- 보완, 반려, 수리 결정하되 수리 결정시 신고증을 교부함

변경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그림 1-10] 변경신고 절차

※ 자료: 경기도 ○○시 자료 참조

라. 관광사업의 양수

■ 「관광진흥법」제8조 , [처리기한 5일]

1) 지위 승계

가) 지위 승계 요건

(1)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合併)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함

〈양수도 및 합병 개념〉

- 합병(合併):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하는 것
- 영업의 양수도(讓受渡): 유기적·기능적 일체로서의营业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행위
-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 ‘작은 합병’으로, 기업의 재편성 또는 결합의 중요한 수단이 됨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

-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를 승계함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 ①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 ② 등록대상 관광사업으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시행령 제5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시설이 있을 것

- ③ 지정대상 관광사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시행규칙 제14조 관련[별표 2]에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 관광사업자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결격사유)를 준용함

나) 지위 승계 절차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

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 포함)

-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처분 또는 명령의 승계

- 관광사업자가 법 제 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3) 휴업 및 폐업 고지

-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6개월 미만의 한시적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기간이 끝나는 때 폐업한 것으로 봄

■ 허가, 신고 등이 효력이 있음에도 유기기구·유기시설이 폐기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휴업·폐업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1차 시정명령, 2차 취소(신고업종의 경우 시정명령), 3차(신고업종의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마. 보험가입 등

■ 「관광진흥법」제9조

-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법 제 9조)
 -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신청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법적 보험 상품이 없으므로 통상 영업자 과실에 따른 이용객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첨부함. (단순화재보험 불가)

바. 타인경영 금지

■ 「관광진흥법」11조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음. 단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음(법 제11조)
- 또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⁴⁾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0조)

법제처 법령해석례 [07-0051, 2007.3.23., 문화관광부]

【질의요지】「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답】「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4) ‘온천장’ 요건을 갖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된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2호)

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

▣ 「관광진흥법」제32조, 시행규칙 별표 10의2

1)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가) 안전 기준

-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
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
고 정상적인 상태 유지하여야 함
- 음주 등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사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
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정원,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
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
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됨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을 표시함(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게시 하
야 함
- 의무시설 설치 사업자는(종합유원시설업)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함
- 사업장내 수영장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생 기준

- 풀(pool)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함
- 풀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제3호 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①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2.0mg/l까지 유지하도록 함.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함
 - ②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함
 - ③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함
 - ④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함
 - ⑤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미 2개 이하이어야 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아황산환원형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1mg/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셀레늄은 0.01mg/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붕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하. 우라늄은 30 μ g/L를 넘지 않을 것(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더. 1,4-다이옥산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클로로포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가. 경도(硬度)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망간은 0.3mg/L(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하.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표 1-9〉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지정기관	연번	검사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28)	1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6-3	(02)2637-1234
	2	(주)산업공해연구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빌딩 10층	(02)2026-1274
	3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금석빌딩 411호	(02)2614-7875
	4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02)2150-0294
	5	코웨이(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내 코웨이알앤디센터 1층)	(02)870-5005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031)481-2741
	7	부천시 맑은물청소사업소 정수과(까치울정수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산60-8	(032)320-3568
	8	(주)랩프린티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0(호계동, 영린빌딩 3층)	(031)460-9125
	9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광고정수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고산로 119(하광교동 416-1)	(031)228-4871
	10	(주)수안수물환경연구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3 하늘타워빌딩 8층	031-772-4538
	1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92
	12	(주)위트랩생활환경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7	1588-7377
	13	중앙생명연구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50	031-844-1720
	14	(주)한국물환경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6-2 NKBIO빌딩 5층	1566-1120
	15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3-1 (안성시 중앙로 327)	(031)670-5637
	16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고양시티타운 1층)	(031)8075-4542
	1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공학기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9동 산56-1)	(02)880-4967
	18	성남시 맑은물사업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번길 22	(031)729-4145
	19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152 (고촌읍 풍곡리 221)	(031)980-5134
	20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107번지	(031)324-4257
	21	사단법인 KOTMI 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7	(02)3451-7452~3
	22	(주)청명기연환경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청명빌딩	(02)424-2007
	23	(주)청룡환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209	(02)851-3811~

I. 행정업무

지정 기관	연번	검사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호	5
	24	(주)피엘이이환경기술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33 휴먼스카이밸리 310호	(031)8013-4570
	25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02)6210-1400
	26	해성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031)473-3413
	27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21	(031)659-1386
	28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1204호	(031)689-3231
기타중앙환경지정 (11)	29	(주)동진생명연구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B	(055)293-5440
	30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훈로 224번길 18	(055)268-7115
	31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경남 함안군 칠사면 삼칠로 1010(칠사정수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3번길 30(석동정수장)	(055)225-6351 (055)225-6561
	32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055)330-6691
	33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055)392-5431
	34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원분석센터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산학협력관 5층	(051)860-3448
	3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055)751-3545
	36	(주)그린환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055)264-8494
	37	(주)상록엔바이로	경남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696	(055)744-2550
	38	울산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울산시 남구 대학로 57 산학협력관 204호	(052)279-3200
	39	(주)엔텍분석연구원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정촌산업단지내)	(055)754-0648
기타지방환경지정 (11)	40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연구센터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629-2041
	41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지북동)	(043)201-4582
	42	(주)신성생명환경연구원	(사)충남 당진시 서해로 6163-36 (실)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대학교 벤처창조융합관 101-103호	(041)541-5745
	43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용곡동)	(041)521-3180
	44	(주)한국환경시험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다락리 369-6	(043)237-7824
	45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	대전광역시 동구 흥도로 63	(042)934-9410
	46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71 (성화동)	(043)230-4285
	47	한울생명과학(주)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	(042)826-4033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지정 기관	연번	검사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노월드 2차 B동 511호	
	48	(주)우솔환경연구원	충남 공주시 송선동 637-4	(041)855-0061
	49	(주)한국산업공해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702	(043)267-0250
	50	(재)F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49
영사자유지역환경영성(8)	51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대흘리 2778-30)	(064)710-6758
	52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전남 순천시 양률길 192	(061)749-3528
	53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064)754-2139
	54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중앙로 78번로 4	(062)370-1281
	55	동산대학교 친환경농수산물산업화 센터 환경분석과학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대로 584-10 동신대학교 생물자원산업화센터	(061)330-2824
	56	(주)이산친환경연구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서원길 8	(061)381-7981
	57	(주)바른환경연구소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352-11	(061)383-8817
	58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	(061)750-5453
원주시 지방환경영성(4)	5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수원길 41	(033)737-4281
	60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충북 충주시 단월동 34-1번지	(043)850-3761
	61	제천시 수도사업소	충북 제천시 고암동 124-4	(043)641-3685
	62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184-1번지	(033)760-2537
대구지 지방환경영성(6)	63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송평구길 138-5	(054)450-4292
	64	우석생명과학원(주)	경북 경산시 경산로 219	(053)817-2399
	65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054)270-5454
	66	(주)제일랩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5	(053)325-7377
	67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그린센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 60 (영진전문대학 글로벌캠퍼스)	(054)970-9461
	68	(주)그린환경연구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74 2층	(054)976-5300
새만금지 지방환경영성(4)	69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063)260-4388
	70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063)281-6981
	71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063)270-2442
	72	전주대학교 농·식품안전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063)220-2923

※ 자료: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8. 기준)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 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함(게시항목: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탁도,과망간산칼륨,대장균)
-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관리일지 작성 비치·보관하여야 함

2) 안전요원

가) 안전요원 배치 시 준수 사항

-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함
-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함. 다만 수심 100cm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음.

<표 1-10>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배치 기준

풀 면적	안전요원 배치 기준	안전요원 자격
수심 100cm 초과인 풀	면적 660㎡당 최소 1인이 배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수심 100cm 이하의 풀	면적 1000㎡당 최소 1인이 배치	상기 자격요건 가능하며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가능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9조의2 관련 [별표 10의2]제10호

나) 유원시설업자의 책무

-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아.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

■ 「관광진흥법」 제34조

1) 영업질서 유지

-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2) 안전관리

가) 유원시설업자 유형별 안전관리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한 경우 안전관리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함
-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시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유원시설업자

-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정기확인검사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함

-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 사전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

- 6개월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 영업종료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표 1-11> 안전관리자 및 점검서식 기준

구분	안전관리자	점검서식	보관연한
종합일반유원시설업자	상시 배치	안전점검일지	1년 이상
기타유원시설업자	본인 또는 운전자	안전점검기록부	1년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안전관리자 혹은 본인 또는 운전자	교육일지와 일일안전점검기록부	영업종료 1개월 이내 지자체 장에게 제출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함
-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

다) 이용자 안전

- 상태유지
 -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안전수칙 게시
 -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 운행 전
 -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운행 중
 -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

3) 보고 및 사후 조치

-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 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7항(검사결과 조치 권고)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상호 표시

-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함

5) 게임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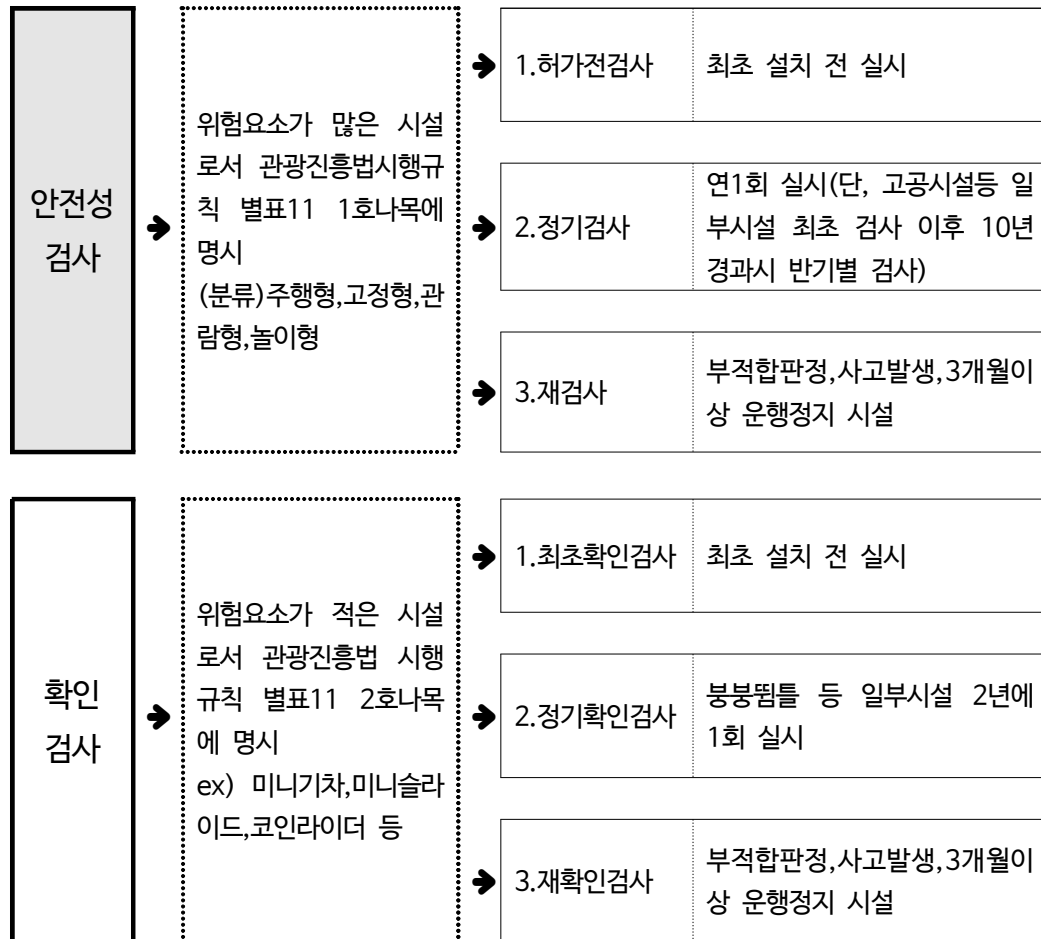
-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자. 유기사설 ·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 「관광진흥법」 제33조

□ 안전관련 검사체계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검사(년1회이상) 및 확인검사를 수검



[그림 1-11] 안전검사 체계

1) 유원시설업자 등의 의무

-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종합유원시설업자·일반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함

2)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서식의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3) 안전성검사 시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4) 안전성검사 방법

가) 검사 빈도

- 난이도 및 노후화를 고려하여 별도지정(시행규칙 별표11) 시설에 대하여 10년 이상시 반기별 검사 실시하여야함

<표 1-12>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 빈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빈도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연 1회 이상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 (물놀이형 시설 및 저난이도 기구 제외)	반기별로 1회 이상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정기확인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2년 1회 이상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나) 재검사

- 재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 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②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
 - ③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5) 안전성검사 의미 및 결과

- 안전성검사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함
- 안전성검사 결과는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으로 구분됨(제3조)

<표 1-13> 안전성검사 결과

구분	내용
적합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선 필요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 기준 및 기타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검사 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료: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제3조 제16호, 제17호, 제18호

- ‘개선필요’ 판정 후 개선완료 상태에 대해 안전성검사 기관의 확인절차가 추가되기도 함

<표 1-14> ‘개선필요’ 판정 사후 절차

구분	내용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유원시설업체에서 개선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됨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체에서 개선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한 서류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확인 요청 → 안전성검사 기관에서 확인 후 지자체로 통보함

6)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 및 검사결과 통보

1)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제5조)

- 안전성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검사신청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완료 요청일자가 1주일 이내일 경우
 -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검사신청자가 반려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2) 검사결과 통보(제9조)

-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턴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함

7) 검사종류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가) 허가전검사

(1) 의미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제3조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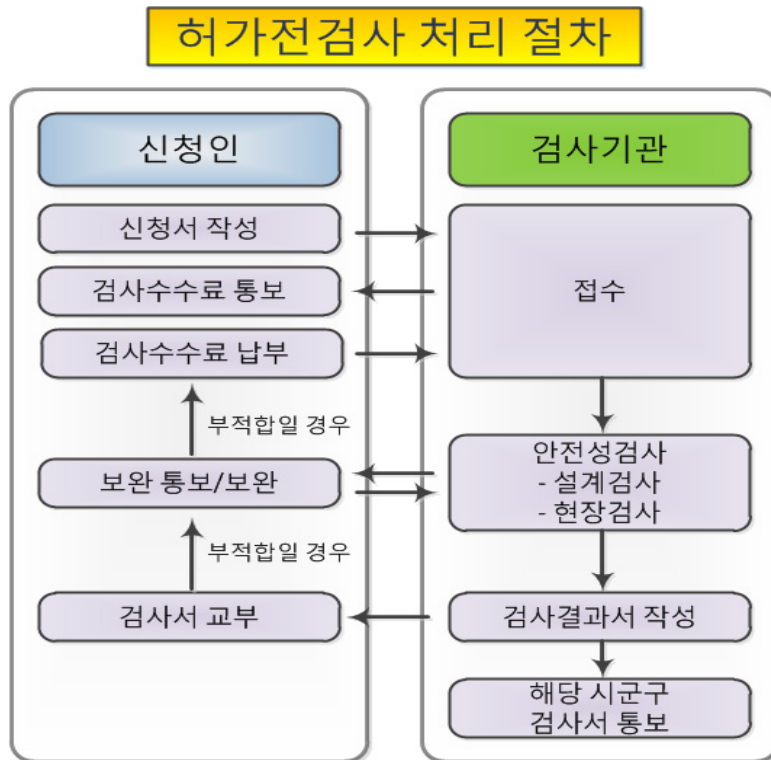
(2) 허가전검사 기준

- 설계검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제8조 제1항)
 - ① 하중에 대한 안전성
 - ②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
 - ③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 유기시설·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제8조 제2항)
 - ①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② 풍압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③ 적설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④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⑤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3) 허가전검사 방법 및 절차

- [별지 제1호] 서식의 유기기구안전성검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기기구 설치완료 30일전(단,반기별대상60일전)까지 안전성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제4조)
 - ①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
 - ②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전체 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 ③ 구조계산서(중요부분)

- ④ 전기회로도
- ⑤ 유·공압 회로도
- ⑥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접수: 신청서와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접수가 완료됨
- 검사수수료 납부: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검사수수료를 신청업체에 통보하며 신청업체에서는 현장검사 이전에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구비서류 심사: 구비서류의 검토
- 현장검사: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최종 시운행까지 출장검사를 실시함
- 검사서 송부: 현장검사가 종결되면 검사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그림 1-12] 허가전검사 처리 절차

나) 정기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1) 의미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제3조 제7호)
 - 10년 이상 된 유기기구중 시행규칙 별표11 1.나2)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 2009년 9월 22일 질의 답변

Q: (안전성검사 기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반기별 1회 안전성검사 적용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 통상 반기별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를 의미하며 해당 조문 시행일이 2009년 3월 31일이라 하더라도 입법취지, 업계의 혼란방지 및 법률 시행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1~6월) 1회, 하반기(7~12월) 1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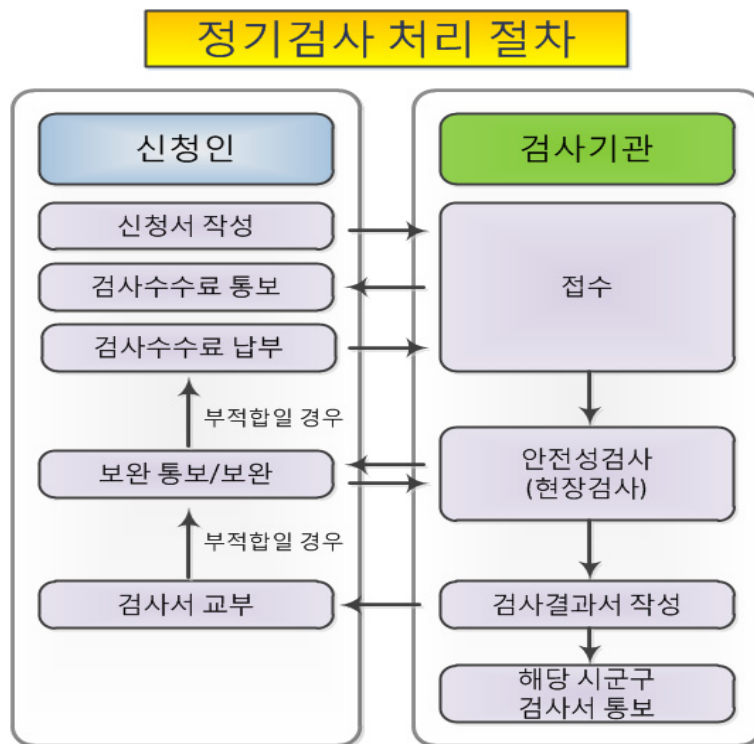
2) 정기검사 기준(제9조)

- 정기검사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별표 2]에 있는 검사항목(유기시설·유기기구 위치별 안전계수)을 따름.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음

3) 정기검사 절차

- 신청자격: 기존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대표자(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 서식의 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제4조)
 - ① 유기기구조사서

- ② 정기검사를 처음 받을 경우 또는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함
- 신청업체의 접수 완료 및 검사수수료 납부 후 검사반의 현장검사가 실시됨
- 현장검사가 종결되면 검사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 처리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됨



[그림 1-13] 정기검사 절차

다) 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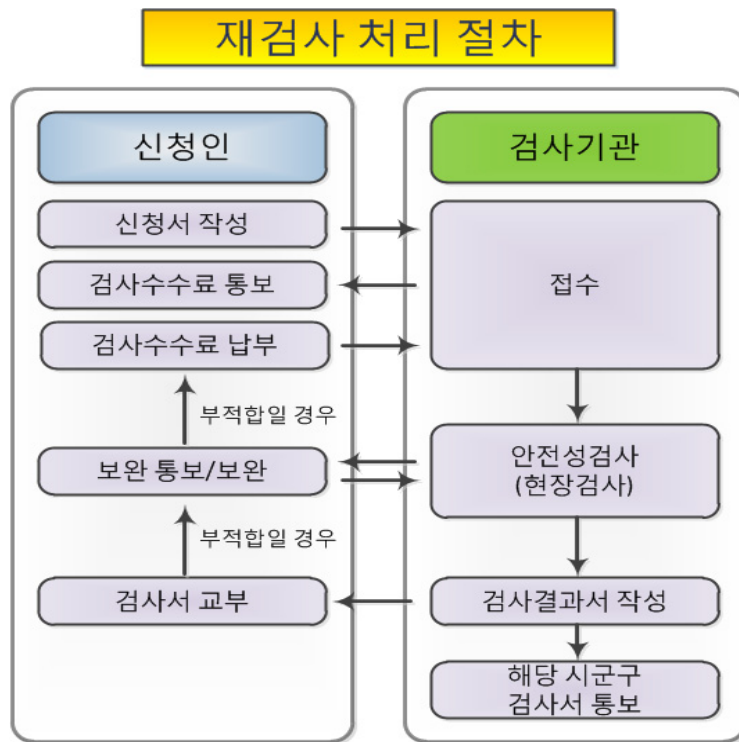
1) 의미(제3조 제8호)

- 다음의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재 검사 받는 것

-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유기기구(유기기구 결함이 아닌 사고는 제외함)
-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한 유기시설·유기기구

2) 재검사 절차

- 신청자격: 기존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대표자(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존업체의 경우, 유기기구조사서를 첨부해 재검사를 신청하되 재검사신청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업체의 접수 완료 및 검사수수료 납부 후 검사반의 현장검사가 실시됨
- 현장검사가 종결되면 검사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 처리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됨



[그림 1-14] 재검사 절차

라) 확인검사

1) 의미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의미함(제3조 제9호)

2) 확인 검사 종류

1. 최초확인검사	최초 설치 전 실시	현장검사
2. 정기확인검사	붕붕뿔틀 등 일부시설 2년에 1회 실시	현장검사
3. 재확인검사	부적합판정, 사고발생, 3개월이상 운행정지 시설	현장검사
4. 서류확인검사	위험요소가 매우 작아 서류로만 확인	서류검사

[그림 1-15] 확인검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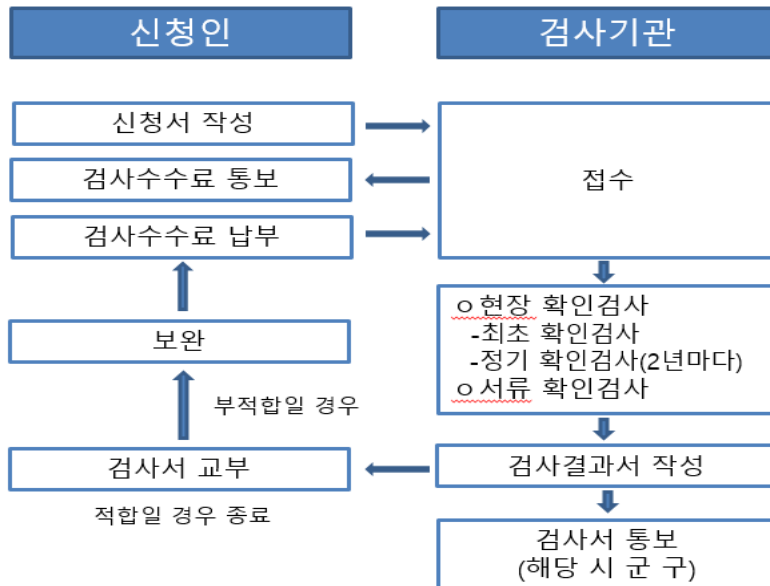
3) 확인 검사 절차

- 신청자격: 기존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대표자(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규로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려고 하는 자
- 설치완료 10일(단 서류확인인 경우 5일) 이전까지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 ②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③ 유기사설·유기기구의 현장설치사진
 - ④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 확인검사 종류에 따라 현장확인검사 또는 서류확인검사를 진행하며, 확인검사 구분 유형 <표 1-15> 참고
- 최종 확인 검사가 종결되면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표 1-15〉 확인검사 구분

유형	완성기능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서류 확인검사
	-	정기 확인검사	
1.주행형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 등	미니가차, 이티로보트(레일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등	
2.고정형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 회전목마, 야자수 등)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단, 승용물 하단에 틈새가 없도록 조치된 기구에 한한다) 등
3.관람형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 고정영상시설) 등	영상모험관 및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내믹시트 등	
4.놀이형		붕붕뽀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등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말타기 등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확인검사 처리절차



[그림 1-16]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 검사 절차

8) 검사기준

가) 허가전 안전성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1]

(1)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기준, 구조안전성 및 설치 시 준수해야할 사항, 검사항목 등을 규정함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은 해당 기구에 장치 및 보조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제작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적용에서 제외함

(2) 공통기준 및 구조계산·설계 기준

- 허가전 안전성검사 공통기준으로 승용물,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운전실, 점검로 및 점검사다리, 출입문, 옥내통로, 계단, 안전유도표시, 안전점검판, 풍속계, 부하시험 등을 규정함
- 구조계산 및 설계 기준으로 하중, 안전계수 및 허용응력, 피로한도, 안전성평가항목을 규정함

(3) 완성검사기준

-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와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허가전 안전성검사 완성검사기준을 적용함

〈표 1-16〉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완성검사기준

검사 대항목	검사 소항목
기초, 구조부	기초, 기초연결부, 기둥, 기둥연결부, 구조물
궤도, 수로, 주로장치	궤도·수로·주로, 지지부재 및 침목
구동장치	전동장치, 감속장치, 클러치, 축 및 베어링, 축이음, 기어, 체인 및 스프로킷, 벨트 및 풀리, 로프, 컨베이어 장치, 차륜장치
유압·공압·수압 장치	유압장치, 공압장치, 수압장치, 기기 및 계기,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제동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승용물 장치	승용물 구조, 승용물 체결부, 승용물 안전장치, 승용물 기타장치
전기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전압계·전류계 표시, 배전선·배관, 피뢰설비, 조명장치, 공급전선·집전장치, 리미트 스위치·센서
운전조작장치	운전조작장치, 비상조작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드, 수중 모험놀이, 급수 및 배수 장치, 부력기구, 착지부,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 장치·공기막 연결장치, 공기주입장치, 지지보조부재, 승강 및 하강장치
기타장치	-

※ 자료: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1]요약

나) 정기검사(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2]

-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와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구분해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을 적용함

〈표 1-17〉 고정식 및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

검사 대항목	검사 소항목
기초, 구조부	기초, 기초연결부, 기둥, 기둥연결부, 구조물
궤도, 수로, 주로장치	궤도·수로·주로, 지지부재 및 침목
구동장치	전동장치, 감속장치, 클러치, 축 및 베어링, 축이음, 기어, 체인 및 스프로킷, 벨트 및 풀리, 로프, 컨베이어 장치, 차륜장치
유압·공압·수압 장치	유압장치, 공압장치, 수압장치, 기기 및 계기,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제동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승용물 장치	승용물 구조, 승용물 체결부, 승용물 안전장치, 승용물 기타장치
전기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전압계·전류계 표시, 배전선·배관, 피뢰설비, 조명장치, 공급전선·집전장치, 리미트 스위치·센서
운전조작장치	운전조작장치, 비상조작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드, 수중 모험놀이, 급수 및 배수 장치, 부력기구, 착지부,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 장치·공기막 연결장치, 공기주입장치, 지지보조부재, 승강 및 하강장치
기타장치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안전유도표시, 풍속계, 안전점검판, 기타 시설

※ 자료: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2]요약

9) 검사대상

<표 1-18> 유기시설·유기기구 분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내용	대표시설명칭	
안전성 검사 대상	주 행 형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스이클 등 11종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등 3종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름라이드 등 3종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범퍼카 등 4종
	고 정 형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 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등 7종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등 9종
		복합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등 15종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등 3종
	관 람 형	기계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등 1종
		입체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등 2종
	놀 이 형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편하우스 등 3종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등 13종
확인검 사대상	주행형	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 등 6종	
	고정형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로데오타기 등 3종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등 4종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시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뽀플 등 27종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m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슬라이드 등 3종	

※ 본 매뉴얼 제3장 3.『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사진)』 참조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일정높이의 레일위를 이용객이 승용물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기구(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일정높이의 레일 위 또는 아래를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연결된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기구(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일정높이의 레일 위를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개별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기구(하늘차 등)
		꼬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되어 일정 레일을 주행하는 시설·기구(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궤도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형 연결 승용물이 일정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시설·기구(빅트릭, 서킷트2000, 클래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개별 승용물이 일정 레일을 따라 급회전 및 방향전환을 하는 시설·기구(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전기 동력 장치로 구동되는 연결 승용물이 상하 굴곡이 있는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구(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해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수직, 스크류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I. 행정업무

		공중케도라이드	천장 또는 상부에 설치된 일정 레일 아래를 따라 주행하는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관람하며 주행하는 시설·기구(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지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자전거형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기구(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키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기구(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배 모양의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리프팅하여 낙하시키면서 유속에 의해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시설·기구(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배 모양의 승용물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수로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설·기구(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이용객이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가 흐르는 일정한 수로를 따라 주행하는 기구(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범퍼카	일정한 공간의 지면에서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여 좌우충돌을 하며 주행하는 기구(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일정한 공간의 수면에서 배터리방식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며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 조작을 통해 좌우충돌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기구(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 관람차	일정한 공간의 수면 또는 지면을 운행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변을 관람하는 기구(로스트밸리 등)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중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수평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암 또는 스포크 구조물 등의 끝단에 승용물을 매달아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수평축을 중심으로 2개 또는 4개의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360°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는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는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고정된 한 축을 중심으로 매달린 배모양의 승용물을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가 마찰하는 방식으로 예약의 범위에서 진자 운동하는 기구(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2개의 수평 중심축에 각각의 균형추가 있는 암과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교차 연결하여 암을 수직원운동 시키는 기구(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애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2개의 지지부재 상부에 수평축을 연결하고 그 수평축에 그네형태로 와이어 로프로 승용물을 연결하여 인양 후 자유 낙하시켜 진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수직축 상부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산형태 구조물 끝단에 승용물을 매달아 수평원운동을 하는 기구(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 위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목마 등을 고정하거나 각각의 크랭크축으로 목마가 상하로 움직이며 운행하는 기구(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I. 행정업무

		티컵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대회전)위에 커피잔 모양의 승용물이 개별 회전(소회전)하며 운행하는 기구(회전컵, 스파닝벨 어린이왕국, 꼬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 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암 끝에 연결된 오토바이 모양의 승용물이 굴곡이 있는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약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경사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암 끝의 승용물이 경사진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원판형 승용물의 한쪽 끝을 실린더로 올리고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크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하고 그 끝에 승용물을 매달아 회전운동을 하는 기구(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변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가시설 또는 유기구	회전비행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높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연결된 암이 상하작동하며 암 끝단에 승용물이 고정되어 이용자가 가상전투게임으로 앞쪽 승용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수직중심축 상부에 다수의 암을 연결하고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연결하며 그 암을 상하로 움직여 수직중심축이 회전하는 기구(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수직회전운동을 하며 암전체가 횡회전을 하는 기구(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실린더에 의해서 기울어진 원판의 승용물이 타원 회전 운동하는 기구(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중심축에 연결된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중심축이 들려서 전체 회전운동을 하고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방사형 아암 끝에 승용물이 연결되어 대형 암이 중심축을 회전하고 편심축의 회전에 의해서 승용물이 상하 운동 및 자전을 하는 기구(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회전체에 내려뜨린 암 끝에 승용물이 매달려 탑 회전 원심력과 실린더에 의해 외측방향으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기구(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회전판을 기울어지도록 한쪽을 상승시키고 그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개별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회전판이 돌면서 소형회전아암에 연결된 개별 승용물이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풍선기구 모양의 승용물이 회전체에 매달려 회전, 상승하면서 이용객이 높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구(동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허리케인	수직중심축에 매달린 회전하는 원형고리 모양의 승용물을 상부 또는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에 의해 좌우로 예각, 둔각, 360도의 범위에서 수직 회전 운동하는 기구(프리스윙, 자이로스윙, 토네이도, 블리자드 등)	
	매직스윙	반원형 궤도내에서 회전 원형 승용물이 하부 동력장치에 의해서 좌우로 예각 범위 내에서 수직 회전 운동하는 기구(자이로 스피, UFO 등)	
	슈퍼라이드	다양한 형태의 복합 회전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칸칸, 에블루션, 삼각바퀴, 챌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원형의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수평, 수직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	패러슈터타워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 상승·하강하는 기구(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타워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상승시켜 하강시키는 기구(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다워 등)
		프레쉬팡팡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피스톤의 상단에 좌석 승용물을 고정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좌석 승용물이 상하로 운동하는 기구(프레쉬팡팡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기계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단일구동장치에 의해 승용물이 좌우·전후 요동하고 탑승자는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는 시설·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일정한 시설 내에 복수구동장치에 의해 좌석 승용물이 영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기구(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편하우스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미끄럼, 줄타기, 다람쥐 놀이 등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기구(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모험놀이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기구(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등)
		에어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 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계 ·기구 등을 이용하 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담수된 풀 내에서 담수된 풀 내에서 다량의 물을 한번에 흘리거나 송풍시켜 파도를 일으키는 시설·기구(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려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기구(리버웨이 등)
		토랜트리버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기구(익스트림 리버 등)
		바디슬라이더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바디슬라이더, 워터봄슬레이, <삭제>, 스피드슬라이드, 아쿠아루프 등)
		보울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튜브를 타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스페이스 보울, 와이퍼 아웃 등)
		직선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매트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수직평면상 직선형태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한개 또는 여러개의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레이싱 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1인 또는 다인승)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튜브라이더, 와일드블라스트, 패밀리슬라이드 등)
		토네이도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실린더형통 또는 깔대기형통(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 월드엘리슬라이드, 슈퍼엑스슬라이드, 토네이도 엑스, 메일스트롬, 쓰나미슬라이드 등)
		부메랑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부메랑고슬라이드, 웨이브슬라이드, 사이드와인더 등)

	마스터블라스트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에 물분사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해 이용자가 튜브를 가속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로켓슬라이드, 몬스터블라스트 등)
	서핑라이더	유속이 빠른 경사 구간을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서핑을 즐기는 시설·기구(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물총, 슬라이드, 물바가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종합 시설·기구(모험놀이, 어린이풀, 자이언트 워터플렉스, 스피레쉬어드벤처 등)
	워터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워터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등)

5) 반기별 검사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유형	중분류	대표유기기구	반기별 안전성검사대상
주행형	궤도 주행형	스카이싸이클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모노레일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제트	전체 등급(종류)
		궤도자동차	궤도가 지면과 수평하지 않은 경우
		정글마우스	전체 등급(종류)
		미니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제트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루프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공중궤도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수로 주행형	후룸라이드	수로길이 70미터 이상 또는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신밧드의 모험	전체 등급(종류)
		래피드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자유 주행형	수륙양용관람차	전체 등급(종류)

고정형	종회전 고정형	회전관람차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플라잉카펫	전체 등급(종류)
		아플로	전체 등급(종류)
		레인보우	전체 등급(종류)
		바이킹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고공파도타기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횡회전 고정형	회전그네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뮤직익스프레스	전체 등급(종류)
		스윙댄스	전체 등급(종류)
		타가다디스코	전체 등급(종류)
	복합회전 고정형	회전비행기	전체 등급(종류)
		우주전투기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점프보트	전체 등급(종류)
		다람쥐통	전체 등급(종류)
		스페이스자이로	전체 등급(종류)
		엔터프라이즈	전체 등급(종류)
		문어다리	전체 등급(종류)
		슈퍼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베이스볼	전체 등급(종류)
		브레이크댄스	전체 등급(종류)
풍선타기		전체 등급(종류)	
허리케인		전체 등급(종류)	
매직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슈퍼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승강 고정형	패러슈터타워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타워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프레쉬팡팡	전체 등급(종류)
놀이형	일반놀이형	편하우스	전체 등급(종류)

6) 확인검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주로·수로·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 km/h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터로봇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나. 고정형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물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내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가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뽀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설팅 등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p>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p>	<p>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킷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p>
--	---	---

7) 정기확인검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예시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내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차.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 「관광진흥법」제33조, 시행규칙 제41조

1)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자격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 유원시설업</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유원시설업</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p> <p>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p>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p>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별표 1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에서 해당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3개 직무분야 159개 자격증이 해당됨

〈표 1-19〉 기계·전기전자·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명칭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7/81)	기계제작 (16)	기계	기계가공	일반기계 기계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장 비설비 · 설치 (31)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 (5)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6)	조선		조선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8)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8)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금형· 공작 기계 (7)	금형	금형제작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금형

I. 행정업무

전기·전자 (2/37)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철도전기신호
	전자 (21)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3D프린터개발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3D프린터운용
안전관리 (2/41)	안전 관리 (26)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가스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화재감식평가	가스
	비파괴 검사 (15)	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2)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에서는 설치 유기기구의 개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이 다르게 규정됨 (※ 다른 업체와 중복하여 배치 불가)

<표 1-20>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개수	
	1종 이상 10종 이하	1명 이상
	11종 이상 20종 이하	2명 이상
	21종 이상	3명 이상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별표 12]

3) 안전관리자의 임무

- 안전운영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함

<안전관리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8.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

-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에의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원 시설업자도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이수 시점

- 최초 선임후 6개월 이내에 1회 교육 후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
- 신규 교육은 선임된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후 교육 이력을 기준하여 적용됨
 - 예) 해당 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새로 선임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이 안되어 다른 업체에 가서 선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력과 상관 없이 선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8.4.>

5) 안전관리자 선임

- 최초 허가 서류 신청시 안전관리자 선임 서류 제출하게 됨
-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업체에서는 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허가 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 허가 업체와 관리업체가 다른 경우 안전사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짐으로 허가 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함
 - 허가 업체와 관리업체가 다른 경우 타인경영금지에 따른 처벌 가능
-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체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선임하여야함

카. 사고통지 및 조치

■ 「관광진흥법」제33조의2 (시행일 2015.11.19.)

1)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유원시설업체에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허가 관청에 사고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됨
- 사고보고를 받은 허가 관청에서는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 함
-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2) 중대한 사고 등

-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 사망자 발생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
- 현장조사 실시하는 경우
 -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
 - 현장조사 실시하려면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통보(다만, 긴급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3) 조치내용

-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명할 수 있음
 - ① 사용중지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개선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 ③ 철거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운행 적합 검사

- 개선완료한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운행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함

5) 사고통보 기한 및 보고내용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내에 사고 통보
- 사고 통보 내용
 - ①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② 사고 발생 경위
 - ③ 조치 내용
 - ④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⑤ 사고 발생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서

[관광진흥법]

-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5항~7항]

-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중지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⑥ 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의2(유기사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타.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 기관

■ 「관광진흥법」 제80조

1) 안전성검사 위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을 확인하는 검사’ (법 제33조 제1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등록기관등의 장은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을 확인하는 검사’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함(시행령 제6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함(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2) 안전성검사 위탁업체에 대한 형법 적용상 지위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

3) 안전성검사 기관

가) 안전성검사 기관 요건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70조 관련[별표 24]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함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 박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
[FFT분석기·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달(modal)프로그램 포함]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준

- 가. 비영리법인이어야 함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두어야 함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

[위탁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65조(권한의 위탁)

①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파. 안전관리자 교육 기관

가) 교육위탁

- 관광진흥법 개정(2015.8.4.시행)으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유기사설·유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

나) 교육내용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유원시설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65조(권한의 위탁)

①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 위반자에 대한 제재5)

■ 「관광진흥법」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

1)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형)

■ 「관광진흥법」제82조, 제84조, 제8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법 제5조 제2항)
- 사고조사후 사용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자(법 제33조의2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4조)

- ①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5조 제3항)
- ②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5조 제4항)
- ③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⁶⁾(법 제33조)
- ④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
-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 ⑥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 ⑦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해 조성사업을 한 자(법 제55조 제3항)

○ 양벌규정(법 제85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5) 형사처벌은 유원시설업 운영자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운영자 등 위법행위를 한 자 혹은 유원시설업 관련 유기시설·유기기구, 유원지에 귀속됨. 따라서 처분대상은「관광진흥법」상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업종에 한정함

6) ‘설치한 자’는 유원시설업 운영자를 의미함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벌칙), 제84조(허가와 신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행정처분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기관등의 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표 1-21> 및 <표 1-22>과 같음
- 등록기관등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표 1-21> 행정처분 일반기준

기준	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에 따름 -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 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함
처분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관련[별표 2]

〈표 1-2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5일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라.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은 영업소 폐쇄명령)			
마.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은 시정명령)	신고업종은 영업소 폐쇄명령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6개월)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저.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커.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퍼.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허.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1개월)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관련[별표 2]

■ 「행정절차법」

○ 제2조(정의)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3.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함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 제출 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함

○ 제22조(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함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함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제24조(처분의 방식)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3) 등록 취소 등

▣ 「관광진흥법」 제35조

- 가) 관광사업의 등록등 받은 자, 신고한 자,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에 대한 정지 혹은 개선 명령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①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법 제4조)
 -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법 제5조 제2항, 제4항)
 - ③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조 제3항, 제4항)
 - ④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8조 제4항, 제5항)
 - ⑤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8조 제7항)
 - ⑥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
 - ⑦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법 제11조)
 - ⑧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4조)
 - ⑨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15조)
 - ⑩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제4항)
 - ⑪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

- ⑫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⑭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 단서)
 - ⑮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78조)
 - ⑯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 위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나)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의 의무 등
-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록 시 통보규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4) 폐쇄조치 등

▣ 「관광진흥법」 제36조

가) 폐쇄조치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제5조 제1항·제2항, 제4항),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제24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5조)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③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 폐쇄조치 절차 및 방법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 폐쇄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5) 과징금 부과

▣ 「관광진흥법」 제37조

가) 부과기준 및 한계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2항)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시행령 제34조 제2항)

<표 1-2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단위: 만 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종합	일반	기타
2.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4항	1600	1200	800
나.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나.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나. 4)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관광사업의 양수 등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400	320	120
13.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2000	1600	1200

14. 안전성검사 등 위반				
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2000	1600	1200
나.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5. 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8. 보고·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8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관련[별표 3]

나) 부과방법

- 등록기관등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 시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함
-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과태료 부과

■ 「관광진흥법」 제86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별표5

가) 일반기준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능(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표 1-24>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기준	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처분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①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기준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규정을 위반한자(법 제33조 제3항)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 4항)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하지 않은 경우(법제33조의2제1항)에 대해 10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함 (2015.11.19.시행)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 유원시설업 입지 관련 법령

가. 개요

- 개별 법령에서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을 규율하고 있음
-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유원시설업 설치 가능한 곳으로 정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 및 지구로 정하는 곳에 유원시설업이 입지할 수 있음

<표 1-25> 개별 법령 상 유원시설업 입지 지역

법령	유기시설·유기기구 입지 가능 지역
「건축법」시행령	<p>[별표 1](건축물의 종류)</p> <p>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놀이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p>제13호(운동시설) 가목(놀이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제16호 위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은 건축할 수 없지만 위락시설중 제외규정으로 설치 가능함 ○ 동법 시행령 [별표 8, 9, 10, 11]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6호 “위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p>○ 폐설로 이용한 레일바이크에 경우 입지제한을 받지 않음</p> <p>○ 동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④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p> <p>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일 것</p> <p>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p> <p>2. 제1호의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p>
<p>「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p>	<p>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제4호</p> <p>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음</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p>	<p>○ 제2조(정의)</p> <p>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함</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p> <p>○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p> <p>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할 것</p> <p>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p>

	<p>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p> <p>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u>근린생활권 근린공원</u> 및 <u>도보권 근린공원</u>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p>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u>도시지역권 근린공원</u> 및 <u>광역권 근린공원</u>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p>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으로 한정)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 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함</p>
<p>「수도권 경비계획법」 시행령</p>	<p>○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p> <p>3. <u>관광지조성사업</u>으로서 <u>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u> 다만, <u>공유수면매립지</u>에서 시행하는 <u>관광지조성사업</u>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p> <p>가. 「<u>관광진흥법</u>」에 따른 <u>관광지</u> 및 <u>관광단지 조성사업</u>과 <u>관광시설 조성사업</u></p> <p>나.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유원지 설치사업</u></p>
<p>「전시산업발전 법」</p>	<p>○ <u>대규모 박람회 시설인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입지지역에 설치 가능</u></p> <p>○ 제2조(정의)제4호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에 필요시설을 말함</p> <p>○ 동시행령 제3조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p> <p>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p> <p>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p> <p>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익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p>

〈표 1-26〉 유원시설업 가능 입지 지역

입지지역	내용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경우,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입지함 - 기타유원시설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입지 범위가 더 넓은, 기존 물놀이형 입지는 위락시설로 축소됨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생산관리지역 혹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됨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시설업은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됨으로써 관광단지를 구성함. 관광단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함 ■ 유원시설업은 공공편익시설이 갖추어진 곳 또는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관련 [별표 18]의 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됨으로써 관광지를 구성함
도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중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체육공원에 유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음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휴양업으로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제1종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제2종 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p>관광휴양 진흥개발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유원시설업이 입지함 ■ 관광휴양진흥개발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함
<p>문화 및 집회시설 입지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박람회장에 설치되는 유원시설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전시장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입지 지역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음
<p>지역 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선로를 이용한 궤도주행형 레일바이크 및 부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외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지 않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등을 정의함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 용적률(「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법 제2조 제15호)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법 제2조 제16호)
 -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군·자치구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법 제2조 제17호)
-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함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함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함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함
 -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구분	정의	구분	정의	구분	정의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거주의 인편과 간단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공업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허락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구분	정의	구분	정의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재도 또는 최고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기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고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취락지구	농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시기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면, 하천면,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소년 유흥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인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취락지구	농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추가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18.4.19기준)

다. 유원시설업 운영 가능한 건축물 및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1) 유원시설업 입지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놀이형 시설)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놀이형 시설)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유원시설은 위락시설 제외 내용 해당되어 입지 가능함.
- ‘문화및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
 -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폐설로 이용한 궤도형 레일바이크’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
 - 입지 제한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위락시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 1-29>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축물 용도구분	호	목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계획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보전	생산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놀이형 시설 (기타유원 시설)	x	x	▲	▲	▲	●	●	●	▲	●	●	●	x	▲	●	▲	▲	●	▲	x	
운동 시설	놀이형 시설 (기타유원 시설)	x	x	▲	▲	▲	●	●	●	▲	x	x	▲	x	▲	●	x	x	▲	x	x	
위락 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x	x	x	x	x	●	●	▲	▲	x	x	x	x	x	x	x	x	x	x	x	
문화및집 회시설	전사시설 (유원시설)	▲	▲	▲	▲	▲	●	●	▲	▲	▲	▲	▲	▲	▲	▲	x	x	▲	▲	x	
없음	페셜리용 리얼타이프	●	●	●	●	●	●	●	●	●	●	●	●	●	●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입지 가능한 「건축법」상 건축물 재구성함
※ ▲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할 수 없는 지역임

2) 유원시설(유기시설·기구, 유희시설)의 공작물축조 신고

■ 「건축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원시설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건축조례에 유희시설을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건축조례로 유희시설을 지정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시행령 제118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시행령 제118조 제5항)
 - 공작물 축조신고서에는 ‘공작물등의 배치도’와 ‘공작물등의 구조도’를 첨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등의 준용)
 -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건축법」시행령

○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 13. 유원지, 종합휴양업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건축법」시행규칙

○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 1. 공작물등의 배치도
 - 2. 공작물등의 구조도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공작물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44조(공작물등에의 준용)

- ①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라. 유원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40조) 제3장 제4절

1) 정의(제56조)

-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함(제56조)

2) 유원지 결정기준(제57조)

- 시·군내 공지(空地)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유원지의 소유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함.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 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하도록 함
-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함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여야 함

3) 유원지 구조 및 설치기준(제58조 제1항)

-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할 것
-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 특색 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함
-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4) 유원지 내 설치물 및 설치기준(제58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표 1-30)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법 제58조 제2항)
- 유원지 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 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법 제58조 제3항)
-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전문휴양업, 종합휴

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음(법 제58조 제4항)

- 유원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58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58조 제5항)
 - 제1항 제4호: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제1항 제5호: 특색 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표 1-30〉 유원지 시설별 설치물

호	시설	설치물
1	유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유희기구 ▪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 포함)·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 포함)·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뉘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 포함)·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광장
5	위락시설 ⁷⁾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부터 자목까지·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시설 노유자시설 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위락시설 가목의 시설(단란주점) 관광휴게시설 다목의 시설 전망대·의무실·자전거대여소·서바이벌게임장·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7	관리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포함)·주차장·궤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 자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7) 「건축법」상의 위락시설과 다름.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은 ①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유희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을 의미함

5) 유원지 개발 절차

가) 입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유원지를 결정함
- 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생산관리지역 혹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조성될 수 있음

<표 1-31> 유원지 개발 가능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계획	
제1종전용	제2종전용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보전	생산	자연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개발 가능한 유원지 재구성

나) 예비적 검토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움
 -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함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진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라 각종 계획 수립 혹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효과를 도모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수 있도록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함

6) 유원지 관련 해석

가) 유원지의 용적률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내에서의 용적률은 50 % ~ 100 % 이하로 제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3.1.1)으로 녹지지역의 용적률이 100%로 강화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발하는 유원지의 용적률은 현행「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적률을 따라야 함

나) 유원지 내 건축물의 층 수

- 유원지 내 건축물 건축 시 층 수, 높이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유원지의 규모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원지 내 건축물의 높이(층 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도록 함

■ 용적률(容積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은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임.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적용됨

■ 건폐율(建蔽率):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인 건축면적 비율, 즉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임
-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도시지역은 20~90%(상업 90% 이하, 공업 70% 이하, 주거 70% 이하 등), 관리지역은 20~40%, 농림지역은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임

다) 도시공원 유원지로의 변경절차

○ 시·군의 지침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게 되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이나 유원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마. 관광지과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관련 [별표 18]

1) 정의(법 제2조)

-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함
-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함

2) 시설기준(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및 관련[별표 18])

가) 관광단지

- ‘공공편의시설’(가목)을 갖추고, ‘숙박시설’(나목)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오락시설’(다목) 또는 ‘휴양·문화시설’(라목)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접객시설’(마목) 및 ‘지원시설’(바목)은 임의로 갖출 수 있음)
-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관광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될 수 있음

공공편의시설(가목) + 숙박시설(나목) + 휴양·문화시설로서의 종합유원시설업(라목)

나) 관광지

- ‘공공편의시설’(가목)을 갖춘 지역
 - 다만 ‘숙박시설’(나목)부터 ‘지원시설’(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음
- 관광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될 수 있음

공공편의시설(가목) + 휴양·문화시설로서의 종합유원시설업(라목) + (기타)

<표 1-32>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종류 및 구비기준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희음식점, 관광극장 유희업점,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중사자 전용숙소, 관광중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관련 [별표 18]

3) 설치 가능 시설(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관광지,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 시설지구 안에 유원시설업을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유원시설업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동·오락시설지구’에서 ‘휴양·문화시설’로서 설치됨

<표 1-33>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지구 별 설치가능 시설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 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 기에 적합한 시설
운동·오락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문화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어촌 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 19]

바.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1) 정의(법 제2조)

-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기반시설 중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따른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2) 도시공원 계획 및 설치

-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화됨(법 제15조)
- 1인당 공원면적 기준(시행규칙 제4조)
 - 도시지역 내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에서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도시공원의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시 입안은 시장·군수가, 결정은 시·도지사가 함
-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함)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3) 도시공원에서의 유원시설업

-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 **유희시설** :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 1])
- 유원시설을 설치하여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임
- 도시공원 내 설치면적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 등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함
 - 근린공원의 경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에만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규제함

〈표 1-34〉 도시공원 종류

공원		정의	규모	유희시설 설치 가능 여부	
생활권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천5백㎡ 이상	○	
	근린 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인근 거주자 이용)	1만㎡ 이상	○
			도보권 근린공원 (도보권 내 거주자 이용)	3만㎡ 이상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내 거주자 이용)	10만㎡ 이상	○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			100만㎡ 이상	○	
주제 공원	역사 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x	
	문화 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x	
	수변 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x	
	묘지 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10만㎡ 이상	x	
	체육 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만㎡ 이상	○	
	기타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1만㎡ 이상	x	

※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6조 관련 [별표 3]

〈표 1-35〉 도시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공원		공원면적	건폐율	공원시설 부지면적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20 이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60 이하
	근린공원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40 이하
		3만제곱미터~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 이하
주제 공원	체육공원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50 이하
		3만제곱미터~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50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10	100분의 50 이하

※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관련 [별표 4]

사.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령

1) 정의

-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함(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유원시설업을 설치 가능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이 있음

〈표 1-36〉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전문휴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고,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어야 함 ■ 온천장으로 전문휴양업 등록 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홀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p>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⁸⁾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 종합유원시설업 ☞ 음식점시설 +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 종합유원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 종합유원시설업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

8) 전문휴양시설에는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이 있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

2)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임(법 제15조 제2항)
-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23조)
 - ①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마. 조감도
 -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2만 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함),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
 -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 ⑤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⑥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 승인 기준(시행령 제13조)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①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②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③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5 기타 행정 참고사항

가. 유원시설업 운영관련 법령

- 유원시설업에는 영업 준비, 영업 개시, 영업 종료 전(손) 과정에서 여러 법령이 적용됨
- 유원시설업은 관광산업 육성 수단이라는 점에서 진흥 대상이지만, 안전관리 및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규제 대상이기도 함. 따라서 유원시설업에는 진흥,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 동시에 적용됨

<표 1-37> 유원시설업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개정안 미 반영됨 '18.3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시행령 제5조 관련[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p>2. 근린생활시설</p> <p>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11. 운동시설</p> <p>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p> <p>14. 위락시설</p> <p>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p>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p>공연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주차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조 제1항(주차장설비기준 등) ○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1. 위락시설</td> <td style="padding: 2px;">시설면적 100 m²당 1대(시설면적/100 m²)</td> </tr> </table>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m ² 당 1대(시설면적/100 m ²)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m ² 당 1대(시설면적/100 m ²)		
「전기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법제73조,규칙제40조 제42조)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 전기설비종류 및 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배치(제15조) -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 : 2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 : 1인 		
「수도권정비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m²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30만m²) 제한 (시행령 제4조) -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6만 m²이상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 감면비율 : 100분의 10 *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상시근로자수100인미만 또는 매출액100억 원이하 * 그밖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이하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법제121조의2, 영11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 감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소득세 : 최초7년간 100 %, 이후 3년간 50 %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증토세 : 최초 5년간 100 %, 이후 3년간 50 % 		

나. 인형뽑기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부칙 제276호 3조3항

1) 배경 및 추진경과

- 2016년 하반기부터 인형뽑기 기기를 대량으로 설치한 속칭 인형뽑기방이 유행하면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사례가 급증함
- 인형뽑기는 게임물로 제작·유통되나 사업장에 따라 규제가 다르고 사행성을 조장·청소년 탈선등 사회적 우려를 야기함에 따라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삭제함(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6.12.30)
- 개정 이후 인형 뽑기방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기신고된 인형 뽑기방은 2017년12월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게임 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함.
- 문체부는 관련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2) 조치 필요사항

- 「관광진흥법」 관련조치 필요사항
 -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 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또는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조치 필요사항
 - 게임물(인형뽑기 포함)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게임제공업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단, 유원시설 사업자는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2대 이하(종합 유원시설업은 5대 이하)의 게임물(인형뽑기 포함)을 설치 할 수 있음(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게임제공업 등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대수 이하의 설치가 가능한 게임물을 운영 할 수 없으며, 이외의 기타 법령 준수하여야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내지 제20호)

- 관련사항 위반시 적용 법률

〈표1-38〉위반사항별 적용 법률

위반사항	적용법률
유원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유원시설업 폐업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또는 동법 제46조제1호 해당함

다. VR/AR 적용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 VR/AR 적용 기기의 경우 기계적인 움직임이 없이 단순히 게임물의 성격만 있을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으로, 이용객이 탑승하고 움직임이 있는 VR시뮬레이터(유기기구 중심)의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으로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함
- VR시뮬레이터를 유원시설업으로 인허가 받을 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다목1)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함.
- **게임제공업** 인허가 대상

		
PC기반형 VR게임	모탈블리츠	몬스터VR

○ **유원시설업** 인허가 대상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 VR적용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확인검사 대상 구분** 사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관람형 유기기구 중 **확인검사 대상**은 다음에 해당

☞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내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 단, 영상모험관 또는 미니시뮬레이션의 경우 탑승인원 5인승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도 3개 축 이상이 각각 360° 회전하거나 회전 시 신체가 전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안전성검사 대상(복합회전고정형-사이버인스페이스)에 해당함.

* 신체의 '등' 부분이 수평으로 위쪽을 향하거나, 신체의 '다리 또는 발' 부분이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위치하는 경우

안전성검사 대상(사이버인스페이스)	안전성검사 대상(자이로VR)
	
3개 축 각각 360° 회전	3개 축 각각 360° 회전

확인검사 대상(스페이스델타VR)	확인검사 대상(자이로VR리미티드)
	
<p>탑승인원 5인승이하, 높이 2미터 이하이며, 승용물이 바닥 또는 상부의 고정된 1개의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최대 360° 회전 또는 운동을 하고, 다른 1개 이상의 수평축은 스윙 회전가능하나 탑승자 신체가 전복*되지 않는 구조</p> <p>* 신체의 '등' 부분이 수평으로 위쪽을 향하거나, 신체의 '다리 또는 발' 부분이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위치하는 경우</p>	

라. 코드 아담제도(어린이 실종예방)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참고] 코드 아담제도
미국의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 아담이 1981년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코드 아담’입니다.

가. 실종아동 예방제도

코드아담은 놀이공원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시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아동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임

나. 대상 다중이용시설 규모 및 종류

*유원시설에 경우 1만㎡이상인 경우 해당됨
대규모점포(1만㎡이상), 도시철도역사(1만㎡이상 또는 환승역), 여객·항만·공항터미널(5천㎡이상), 전문체육시설(5천석이상), 공연장(1천석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지역축제장(1만㎡이상),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다. 실종아동 발생 신고 접수

- 아동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실시
- 아동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

라. 관리지침

시설 관리주체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침에 따라 연 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과태료

실종예방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이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보건복지부 제2014-118호, 2014.7.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종신고 담당부서 업무분장)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 등의 미발견)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어 보호자 에게 인계되었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경보발령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주체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발생사실과 경보전파, 수색실시 등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지침을 중심으로 신고접수 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등에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일시·장소, 주관자,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118호, 2014.7.29>
이 고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II. 안전점검

1 합동실태점검

가. 합동 실태점검

1)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정부차원의 점검
- 시도 주관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관광부서와 재난관리부서 담당공무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검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 점검 실시

2) 목적

- 해빙기 및 봄 여름 가을 행락철 대비 유원시설업체의 유기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지진,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추진과 연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 실시
- 업체에 점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여러 점검을 모아 합동으로 시행하여 점검 횟수를 줄여주고자 함

3) 점검시기

가) 상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 2월~4월

나) 물놀이형 업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 5월~7월

다) 하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 9월~10월

라)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 11월~12월

※ 점검의 시기 및 점검세부명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4) 점검대상

- 전국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대상으로 중점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함
- 중점대상은 안전사고 발생 업체 또는 기구 대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사료되는 업체나 기구를 중점점검

5) 점검반 구성 및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반 구성

〈표 2-1〉 점검반 구성

구 분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	지자체 관광·재난관리부서 담당공무원, KTC 검사 전문가, 소방안전전문기관 관계자(필요시 참여)

○ 주간부서 및 주요점검사항

〈표2-2〉 주간부서별 점검사항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지자체 관광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 여부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내 제반 시설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관련 시설
K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기구 및 설비의 결함
소방안전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설비 등

6) 점검방법

- 유원시설 안전점검표(양식 별도 배포) 활용·점검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 및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후,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의거 개선명령 등 적정 행정처분 조치

7) 점검결과제출

- 별도양식의 점검결과를 제출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2 유원시설업 의무 게시 사항 작성 예시

가. 영업소 명칭(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 명칭)

◎ 정문 또는 입구에 영업소 명칭을 게시함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공통사항
(5)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이용요금표

◎ 이용요금표는 정문 매표소 또는 유기기구 옆에 게시하고 있음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공통사항

(4)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사항

◎ 유기기구 탑승전 입구쪽에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 사항 게시함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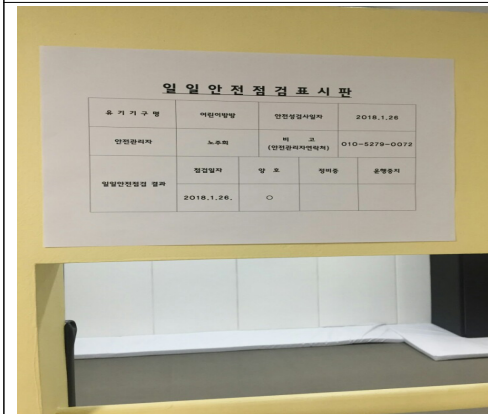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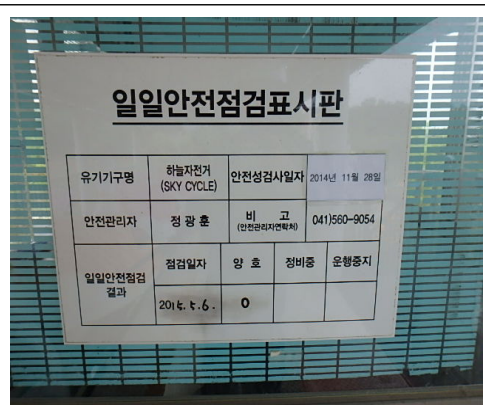
(4)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표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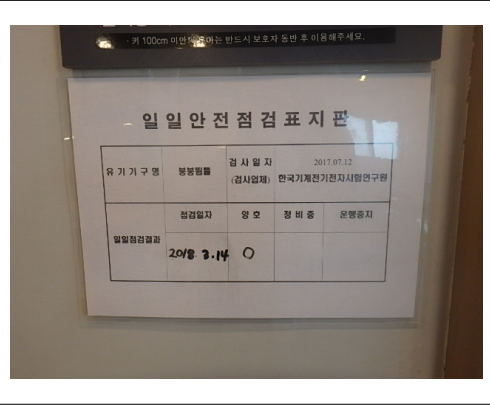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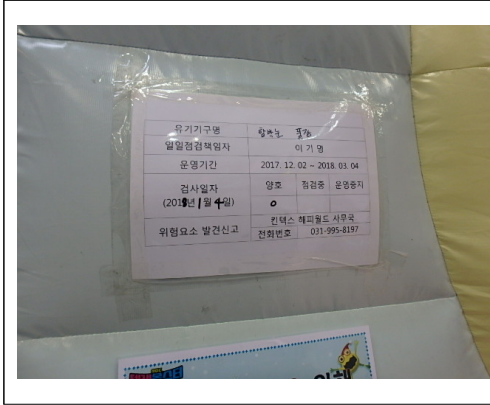
* 안전점검표시판 권장 양식

일 일 안전 점검 표 시 판

유 기 기 구 명		안전성검사일자		
안전관리자		위험요인 발생신고		
일일안전점검 결과	점검일자	양 호	정비중	운행중지
	200	○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3. 안전관리자의 임무

나. (생략),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2.개별사항

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2) 사업자는 (생략),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유원시설업자

(2) 사업자는 (생략),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피난안내도 부착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공통사항

(7)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바.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놀이형 유기기구에 한함]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 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사. 물의 순환 횟수 [물놀이형의 경우]

◎물의 순화 횟수 1일 3회이상 실시하는 사항 게시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 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아.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물놀이형의 경우]

◎ 「수질검사 일자」 및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함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 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자. 수심표시 [물놀이형의 경우]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가. A형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

<< 적용 안내 >>

- ▶ 본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A형)은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예시임
- ▶ 본 표준안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체 상황에 맞추어 표준안(B형)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음

《A형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

[작성일자 : 20--년 0 월 0 일]

0 0 랜 드

CONTENTS

목 차

장	절	목 차 명	
제1장		일반사항	179
	1	목적	179
	2	적용근거	179
	3	적용범위	179
	4	책임과 권한	179
제2장		시설현황	180
	1	유원시설 일반현황	180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180
제3장		안전관리계획	181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181
	2	안전교육	185
	3	안전검사·점검	186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187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187
	2	사고보고	189
	3	사고(또는 이상)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190
	4	비상조치 장비현황	193
	5	의무실(구급약품)현황	194

서 식 목 록

별지 제1호서식	유원시설현황	-----	196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계획서	-----	197
별지 제3호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	198
별지 제4호서식	기구별점검계획서	-----	199
별지 제5호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	200
별지 제6호서식	정비이력서	-----	201
별지 제7호서식	사고보고서	-----	202
별지 제8호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	203

◆ 안전경영방침 ◆

00랜드는 유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경영이념을 선포하여 인간 존중정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안전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유원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설정한다.

1.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에 관한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모든 조직원은 안전활동에 참가한다.
4. 지속될 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위와 같은 안전경영방침을 전 근무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20 . .

주식회사 00랜드

대표이사 최 유 원 서명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동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5조2항(허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3. 적용범위

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업무

나. [00랜드]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근무인원 및 이용객

4.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내용
[대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최종 승인 - 안전관리계획의 최종 책임 -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관리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 및 반영 -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효성 및 타당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실행 문서 작성 및 보관(보존기간 : 2년) ■ 유기사설 관련 법률 모니터링 및 개정내용 공지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실행 및 실천

제2장 시설현황

1. 일반현황

가. 유원시설 일반현황

상 호	00랜드
대 표 자	최 유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면 적	9km ²
허 가 일	2018년 1월 1일
관리책임자	홍 길동
안전관리자	김 안전
기타근무자	30명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세부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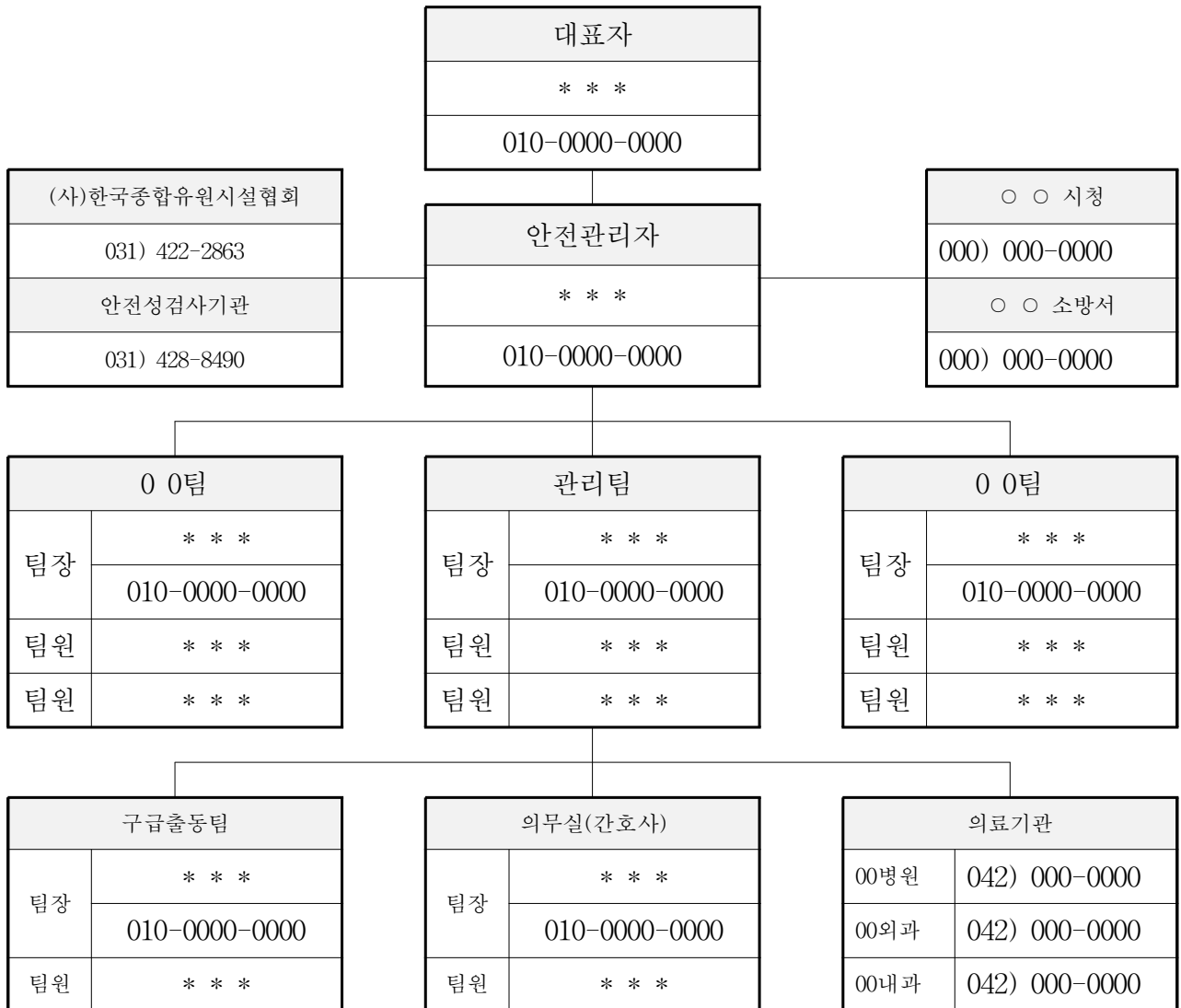
구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계
안전성검사대상	2	1	0	1	4
정기확인검사대상				1	1
확인검사대상					
계	2	1	0	2	5

제3장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가.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도



나. 안전관리자 현황 :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1명 이상을 두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요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현황(의무) : 총 _____명

성명	자격명칭	선임일자	기타
0 0 0	산업안전기사	2018.1.1.	

※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41조, 별표 12 의거

2) 정비요원 현황(선택) : 총 _____명

성명	자격명칭	입사일자	기타
0 0 0	철기기사	2018.1.1	

3) 안전요원 현황(선택) : 총 _____명

시 설 명	배치인원		자격조건	기타(기준면적)
	공휴일	평일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은 안전요원 의무배치

다.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

1) 사업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 공통사항

가.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에서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바.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사설은 제외한다.
- 사.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아.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 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제40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1.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유기사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목 적 :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제반 법규준수

나. 대 상 : 전직원

다. 교육종류 및 주기

구 분	대 상	교육주기 및 시간	비 고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최초교육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신규근무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근무자	주 1회 1시간 이상	
비상훈련	근무자	연 1회 이상	권고사항
	(별지 제8호 서식)		

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마. 교육계획 수립 : 안전관리자는 과정 및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
(훈련)계획서를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바 강 사 : 안전관리자 및 외부강사(안전전문가)

사. 주요내용

-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요령
-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4) 사고발생 시의 대책에 관한 사항
- 5) 안전경영방침의 내용
- 6)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교육결과보고 : 안전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 후 대표이사의 승인

*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3. 안전검사·점검

가. 목 적 : 유기기구의 검사·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법률준수

나. 기구별 점검계획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다. 검사·점검종류

구 분	주 기	검사·점검자	내 용
자체점검	매 일	안전관리자	기구별 점검사항 및 기록부 * 별지 제 5호 서식
안전성검사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검사기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적용
제조사검사	연 1회	안전관리자	제조사의 부품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점검 및 조치(권고사항)

라. 검사·점검실시

- 1) 각 검사·점검자는 매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및 일일점검 표지판 기록
- 2) 각 기구별로 정비이력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구의 잔여 수명을 반영하여 점검 및 보수 실시

구 분	점검자	점검시기	점검내용
일일점검	안전관리자, 운행자	개장 1시간 쉰	기구별 점검기준표
상시점검	운행자	운영중 상시	기구별 점검기준표
주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월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월 첫째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특별점검	안전관리자	연 1회	제조사의 요구항목
정기검사	검사전문기관	법규준수	외부기관 검사기준을 적용

- 3) 점검결과 보존기한 : 검사 종료일로부터 2년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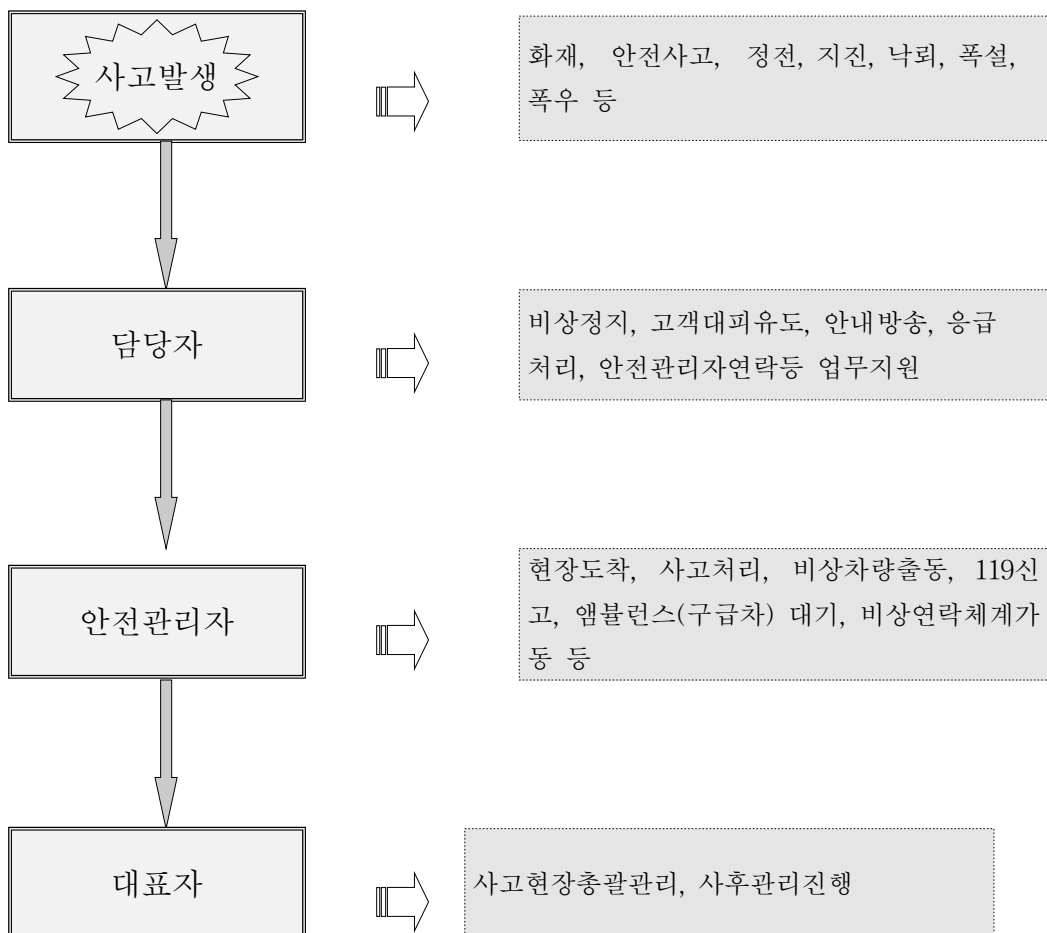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가. 운행담당자는 사전에 시설(기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업무를 개시
 나. 비상상황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 운행 전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1) 운행담당자 :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안전조치
- 2) 안전관리자 : 현장점검 및 조치, 비상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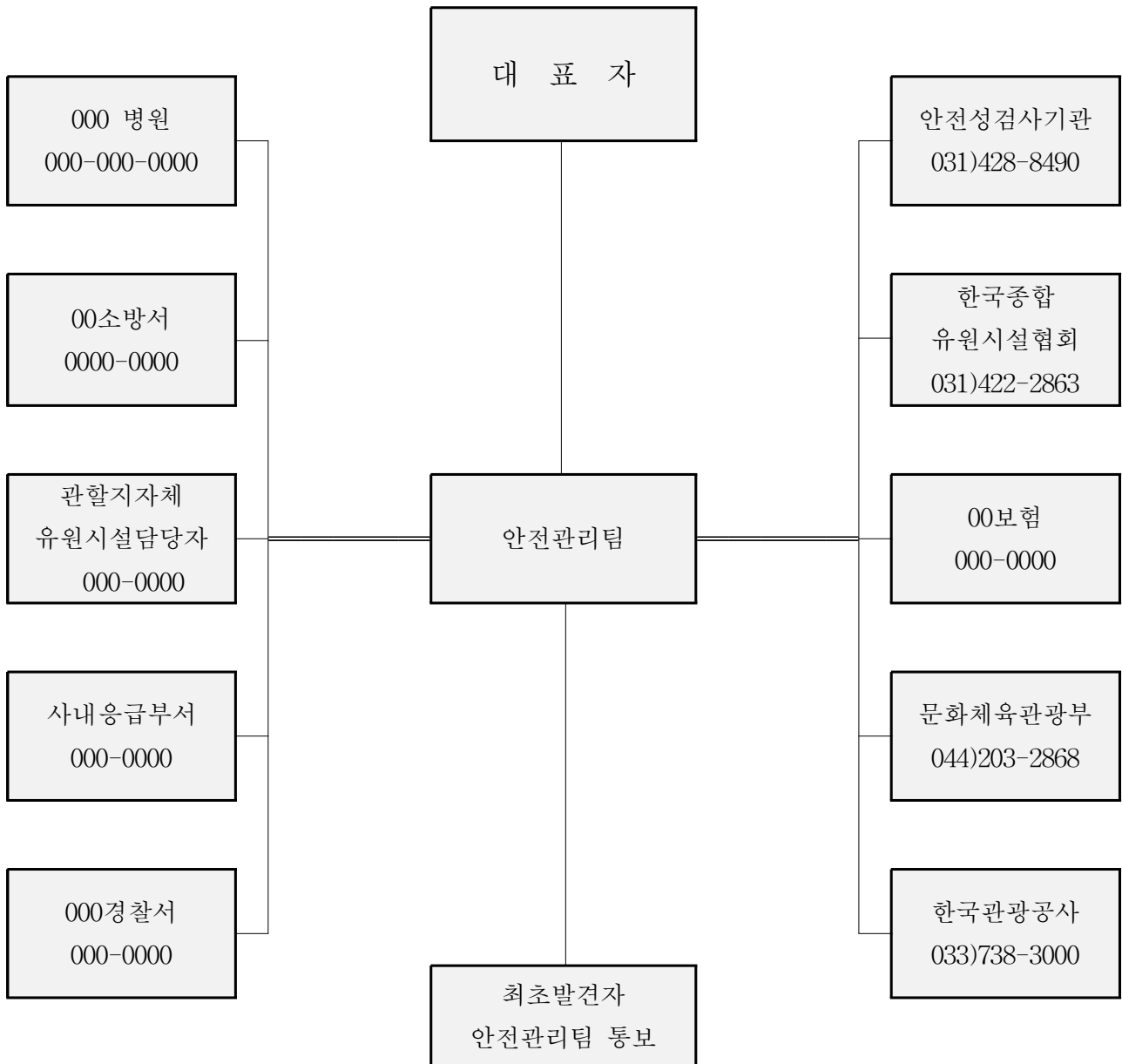
라. 운행 중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마. 비상연락체계

- 1) 최초 발견자는 안전관리팀에 즉시 통보하고, 안전관리팀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비상연락체계



2. 사고보고

가.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 사고보고(시행규칙 제41조의2)를 한다.

나. 사고보고 대상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3) 사고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4)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다. 보고내용

-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2) 사고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한다)
- 3) 조치 내용
-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5)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라. 보고방법 :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사고보고 접수여부 확인 필)

마. 보고서 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3. 사고(또는 이상) 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가. 사고(또는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운영 담당자는 즉시 시설을 정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한다.

- ◆ 기구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진자운동 및 회전운동이 감쇄하여 자연적으로 정지하도록 유도
- ◆ 시설(기구)의 이상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 유기사설의 탑승객은 출구로 퇴장을 유도하고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
- ◆ 고객이 완전히 퇴장하였는지 확인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체 의료팀과 소방서에 신고한 후 병원 후송을 지원
- ◆ 출입구를 차단하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입구에 점검안내간판을 부착
- ◆ 유기사설의 동력을 차단
- ◆ 유기사설의 정비부서에 연락
- ◆ 모든 시설(기구)의 수리가 완료되고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가동 여부를 사업자,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에서 결정

나. 이상발생으로 기구의 정지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서에 통보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고상황이 종료된 경우 사고원인조사는 안전관리부서 또는 필요 시 안전관리부서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예시 : 바이킹)

구 분	대응요령
비상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시(위급한 경우)는 비상정지(EMERGENCY STOP)버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 회전 중단 작용(급브레이크 효과): 일반적 일시 정지 • 탑승시설물의 타이어와 차량이 분리된 상태(제동력 없음)에서 안전바를 수동조작하여 열어야 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차시킨다. 이 때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된다. • 환자발생 시 머리, 목, 척추 등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동해서는 안 되며 즉시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기계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 • 자동으로 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력이나 진자의 힘이 약화될 때 까지 기다림 • 부상자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 • 기구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진자운동 및 회전운동이 감쇄하여 자연적으로 정지하도록 유도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 전원이 복구되는 경우 시설(기구)의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재가동 여부를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 하에 결정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시는 신속하게 설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비상사태 체계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소방서에 신고 • 소규모의 화재의 경우 주변 소화기로 진압 • 소방대 또는 자체 소방대의 화재 진압 팀을 유도하여 원활한 화재진압이 되도록 안내 • 상황이 종료되면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진의 발생을 통보받는 즉시 또는 지진을 감지하는 경우에 시설(기구)의 작동을 정지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p>낙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사고는 일반적으로 높고 뽀족한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평소에 피뢰침 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 •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전사고 시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 시 행동요령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즉시 신고
<p>폭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설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설이 내리기 전은 안전 팀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여부를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 폭설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설(기구)를 정지한 후 이상발생 시 행동절차에 따름 • 폭설이 종료되고 시설(기구)의 재가동 여부는 안전관리 및 정비부서팀에서 결정
<p>폭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장마철)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우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우가 내리기 전에는 안전 팀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 여부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 폭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설(기구)을 정지
<p>안내방송</p>	<p>“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000(기구명)의 작동이 000(기계고장, 화재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p>

4. 비상조치 장비 현황

품 목	수 량	보관위치	비 고
사다리	6	각 건물 비상구 옆 3개, 각 시설 보관함 3개	
로 프	12	시설보관함 6개, 각 건물 비상구 6개	
원 치	3	시설 보관함	※ 필요시 구비



* 필요시 건축평면 배치도를 첨부
* 각 장비 위치를 표시

5. 의무실(또는 구급약품 비치) 현황

가. 의무시설 현황

관리항목	현황	비고
위치	본관 1층	
연락처	043-000-0000	
면적	30 (m ²)	* 별도의 의무실 면적을 좌악
제세동기(AED) 수량	1 개	구비여부
휴게실	1 실	
의사 상주 여부	상주	* 상주(상주, 비상주)여부를 기재
간호인력	2 명	
진료실 유무	있음	* 전용진료실 존재여부
휴식용 침상	1개	
구급약품구비 여부	약품 구비함	* 구비여부를 기재
앰블런스(구급차) 보유 여부	1 대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별도의 의무실 및 구급약품이 필수임 * 일반유원시설의 경우 구급약품이 필수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시설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		

※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의무시설은 의무가 아님

나. 구급약품 현황

관리항목	세부항목	보유여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용 재료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등	보유
외용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보유
주의사항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응급처치 기본 원칙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알릴 것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 것

※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08),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
 : 보건복지부(재 : 한국보육진흥원) 2015 어린이집평가인증 안내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부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유원시설 세부현황

1. 대표자	최 옥 원				
2. 영업의 종류	일반유원시설				
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번지				
4. 영업기간	2018년1월1일 부터 ~ 현재				
5. 면적	9km ²				
6. 유기사설(기구) 보유 현황 : 총 5 대					
번호	분류 (내용)	대표유기 시설(기구)	유기사설 (기구)의 명칭	제원사항	안전성검 사대상여 부
1	주행형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주행길이 : 200m 탑승정원 : 20명	대상
2	주행형	킹통열차	드래곤 열차	주행길이 : 500m 탑승정원 : 30	대상
3	고정형	마이킹	마이킹	탑승정원 : 40명 높이 : 10m 상승각도 : 60°	대상
4	놀이형	포척맞추기	포척맞추기	이용정원 : 2명	비대상
5	놀이형	바디슬라이드	바디슬라이드	최소이용간격:30초 길이 : 50m	대상
<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호</p> <p>*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p> <p>* 모든 설비별로 현황 작성</p>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계획 실적	교육계획(실시)/월												비고	장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최초교육	계획															선임신고 후 3개월	협회	
			실적		0															
	신규근무자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 상)	계획																2년 만기일 1개월 전	협회
			실적				0													
비상훈련	근무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계획																신임사원의 배치일 당일 오전	자체
			실적																	
	근무자	주 1회 1시간 이상	계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매주 월요일 오전	자체
			실적																	
비상훈련	근무자	년 1회 이상	계획										0						시나리오 훈련(연고)	자체
			실적																	

*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서 선임된 안전 관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하여 외부(유원시설협회)교육기관에 교육을 위
탁 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계획을 참고하여 표시

* 신규근무자의 경우는 입사일 당일에 교육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안전교육(훈련)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과정	교육시간
	시작시간	시 분	근무자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신규종사자	4시간 이상
	종료시간	시 분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주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장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인원	명	교육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사	
교육내용						
교육명단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3호(준수사항) * 명단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첨부가능 * 허가신청 시 내용작성 불필요						

《별지 제4호 서식 기구별 점검계획서》

기구별 점검계획서(예시)

순번	시설(기구)명	설치 년도	점검 (자체) 일	안전성검사 (외부검사기관)		제작사의 요구에 의한 부품의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점검				
				반 기	1년	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모노레일	2015	○		○			○		

* 허가신청 시 각 기구별로 사업장에서 해당월을 확인하여 표기
 *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작성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6. 12. 30.>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시설(기구) 명 : 모노레일

20 년 월 담당자: 안전관리자

번호	점검사항	일 일 점검 실시 시 결 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레일구조물 상태																																
2	전동장치 상태																																
3	우암 및 채동상태																																
4	승용구조물 상태																																
5	전기케이블 상태																																
6	비상조작장치 상태																																
7	안전물리 및 안전 철마 상태																																
8	비상제단 상태																																
9	제작사의 요구에 의한 점검위치																																
※ 점검사항 작성기준: 관광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 참고																																	
※ 각 기구별로 점검사항을 작성관리																																	
※ 점검결과표시(정상 : O, 요정비 : Δ, 고장 : ×)																																	
※ 정비사항은 정비가력서 참고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정비이력서

기구명						
제작회사				제작년도		
정비일자 (시간)	정비사유			정비내용	정비결과	비고
	예방 정비	정기 정비	고장 정비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 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 형태			
훈련일시	20 년 월 일. 시간: ~		
훈련장소	훈련실시 부서	안전팀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훈련참가자	대상인원 : 명 참가인원 : 명
훈련내용 (간략하게 요약)			
훈련성과 및 강평	※ 훈련성과		
	※ 강평		
문 제 점 및 개선 대책	문제점		개선대책
첨 부	1. 교육훈련 참가자 명단(교육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 2. 훈련실시 사진(필요시)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가. B형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

<< 적용 안내 >>

- ▶ 본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A형)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예시임.
- ▶ 본 표준안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체 상황에 맞추어 표준안(B형)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음.

《B형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

[작성일자 : 20--년 0 월 0 일]

0 0 랜 드

CONTENTS

- 목 차 -

장	절	목 차 명	
제1장		일반사항 -----	210
	1	목적 -----	210
	2	적용근거 -----	210
	3	적용범위 -----	210
	4	책임과 권한 -----	210
제2장		시설현황 및 예방계획 -----	211
	1	유원시설 일반현황 -----	211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211
	3	사고예방 및 홍보계획 -----	212
	4	위험요소확인 및 대응 -----	212
	5	법규검토 -----	213
제3장		안전관리계획 -----	215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	214
	2	안전교육 -----	218
	3	안전검사 · 점검 -----	219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	220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220
	2	사고보고 -----	222
	3	사고(또는 이상)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	223
	4	비상조치 장비현황 -----	226
	5	의무실(또는 구급약품 비치)현황 -----	227
	6	비상훈련 -----	229
제5장		성과측정 및 경영자 검토 -----	230
	1	성과측정 -----	230
	2	경영자 검토 -----	230
	별표 1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	231

- 서 식 목 록 -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	235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	236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	237
별지 제4호 서식	기구별점검계획서 -----	238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	239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	240
별지 제7호 서식	사고보고서 -----	241
별지 제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	242
별지 제9호 서식	안전점검표지판 -----	243
별지 제10호 서식	위험요소목록 -----	244
별지 제11호 서식	법규검토서 -----	245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평가서 -----	246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측정 -----	247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자검토 -----	248

◆ 안전경영방침 ◆

00랜드는 유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경영이념을 선포하여 인간 존중정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안전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유원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설정한다.

1.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에 관한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모든 조직원은 안전활동에 참가한다.
4. 지속된 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위와 같은 안전경영방침을 전 근무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20 . .

주식회사 00랜드

대표이사 최 유 원 서명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동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5조2항(허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3. 적용범위

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업무

나. [00랜드]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근무인원 및 이용객

4.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내용
[대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의 최종 책임 -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관리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 및 반영 -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효성 및 타당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실행 문서 작성 및 보관(보존기간 : 2년) ■ 유기사설 관련 법률 모니터링 및 개정내용 공지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실행 및 실천

제2장 시설현황 및 예방계획

1. 일반현황

가. 유원시설 일반현황

상 호	00랜드
대 표 자	최 유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면 적	9km ²
허 가 일	2018년 1월 1일
관리책임자	홍 길동
안전관리자	김 안전
기타근무자	30명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세부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구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계
안전성검사대상	2	1	0	1	4
정기확인검사대상				1	1
확인검사대상					
계	2	1	0	2	5

3. 사고예방 및 홍보계획

가. 사고예방 활동(선택사항)

- 1) 매 분기 대표이사 주체 조회 실시 및 홍보영상 시청
- 2) 전 직원 대상 사고예방을 위한 선서 실시
- 3) 성수기 사고예방 주간 운영(여름철)

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구 분	수 량	활용 방법
포스터	20부	사무실 및 게시판 부착
현수막	3개	정문 1개소, 영업장 2개소 부착
교육자료	1식	직원 안전교육 시 활용

- 1) 포스터 제작 (20부), 현수막 제작, 사고예방 사례 및 교육자료 제작
- 2)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선택적 시행

다. TBM 활동(위험예지활동)

- 1) 목 적 : 무재해
- 2) 시 기 : 연 중
- 3) 세부내용 : 근무시작 전 각 시설별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상 상태여부를 확인하는 안전활동

4.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

가. 위험요소 파악

- 1) 일상점검(안전관리자 및 운행자) : 매일 개장 전 유기사설 점검
- 2) 상시점검(운행자) : 운행 중 수시로 위험요인 모니터링
- 3) 정기점검(안전관리자) :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나. 시설(기구)별 위험요소

- 1) 각 시설별로 2가지 이상의 위험요소를 파악

2) 각 시설별 위험요소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다. 위험요소 발견시 대응방법

- 1)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장조치
- 2) 인원 통제관련 사항 : 즉시 현장조치
- 3) 전기 · 기계적 결함 : 운행중단 및 즉시조치

5. 법규검토

가. 법규검토가 필요한 안전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2)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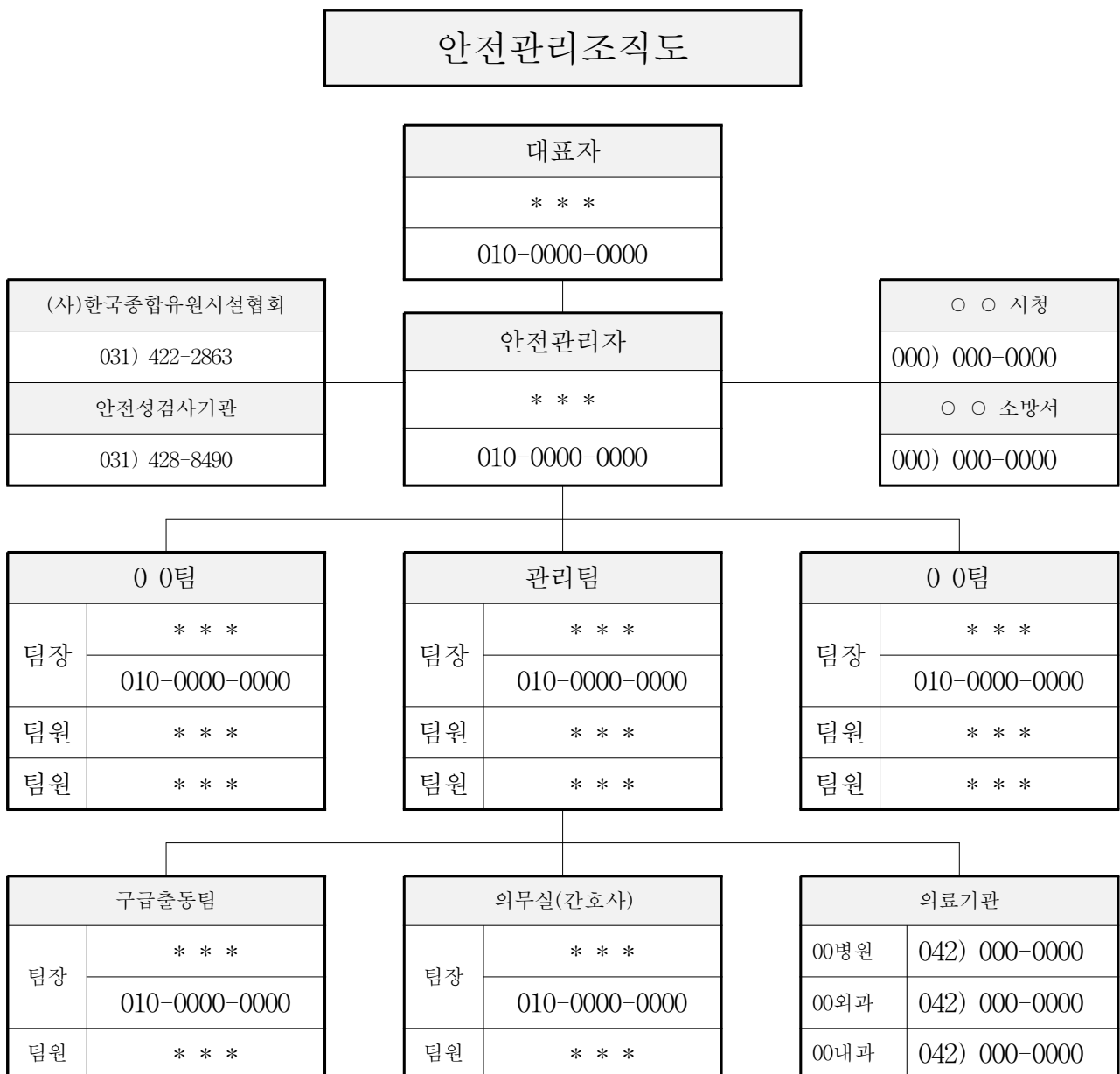
나. 법규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관련내용을 모든 근무자에게 교육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매 반기 마다 법령의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유지한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가.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자 현황 :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1명 이상을 두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요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현황(의무상시배치) : 총 ___명

성명	자격명칭	선임일자	기타
0 0 0	산업안전기사	2018.1.1.	

※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41조, 별표 12 의거

2) 정비요원 현황(선택) : 총 ___명

성명	자격명칭	입사일자	기타
0 0 0	철기기사	2018.1.1	

3) 안전요원 현황(선택) : 총 ___명

시 설 명	배치인원		자격조건	기타(기준면적)
	공휴일	평일		

* 안전요원 배치 현황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의무사항임

다.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

1) 사업자의 임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 공통사항

가.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에서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바.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사설은 제외한다.
- 사.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아.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 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제40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1.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유기사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목 적 :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제반 법규준수

나. 대 상 : 전직원

다. 교육종류 및 주기

구 분	대 상	교육주기 및 시간	비 고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최초교육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신규근무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근무자	주 1회 1시간 이상	
비상훈련	근무자	연 1회 이상	권고사항
	(비상훈련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마. 교육계획 수립 : 안전관리자는 과정 및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
(훈련)계획서를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바 강 사 : 안전관리자 및 외부강사(안전전문가)

사. 주요내용

-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요령
-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4) 사고발생 시의 대책에 관한 사항
- 5) 안전경영방침의 내용
- 6)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교육결과보고 : 안전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 후 대표이사의 승인
*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자. 교육평가 : 교육 훈련 후에는 교육의 성과를 평가 함

*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3. 안전검사·점검

가. 목 적 : 유기기구의 검사·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법률준수

나. 기구별 점검계획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다. 검사·점검종류

구 분	주 기	검사·점검 자	내 용
자체점검	매 일	안전관리자	기구별 점검사항 및 기록부 * 별지 제 5호 서식
안전성검사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검사기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적용
제조사검사	연 1회	안전관리자	제조사의 부품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점검 및 조치(권고사항)

라. 검사·점검실시

- 1) 각 검사·점검자는 매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및 일일점검 표지판 기록
- 2) 각 기구별로 정비이력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구의 잔여수명을 반영하여 점검 및 보수 실시

구 분	점검자	점검시기	점검내용
일일점검	안전관리자, 운행자	개장 1시간 쯤	기구별 점검기준표
상시점검	운행자	운행중 상시	기구별 점검기준표
주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월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월 첫째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특별점검	안전관리자	연 1회	제조사의 요구항목
정기검사	검사전문기관	법규준수	외부기관 검사기준을 적용

3) 점검결과 보존기한 : 검사 종료일로부터 2년

4) 안전점검표지판 부착 *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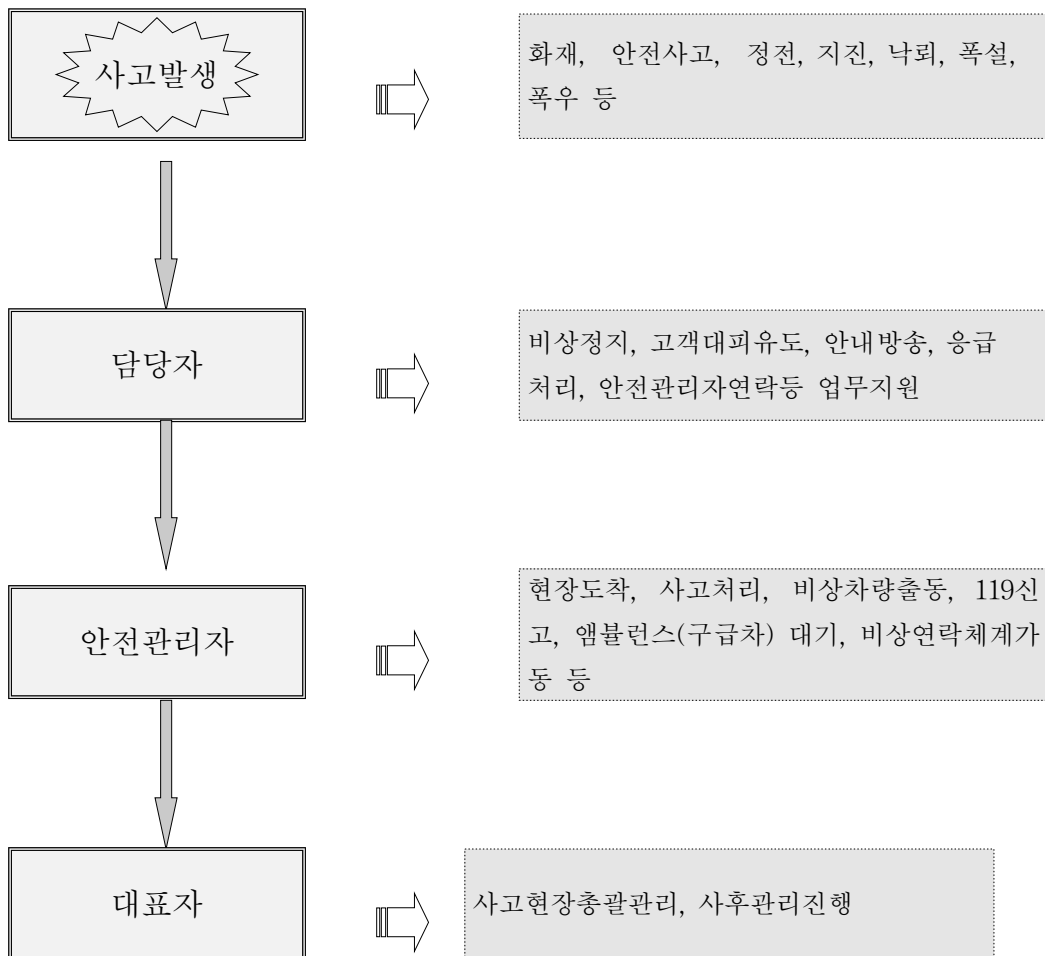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가. 운행담당자는 사전에 시설(기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업무를 개시
 나. 비상상황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 운행 전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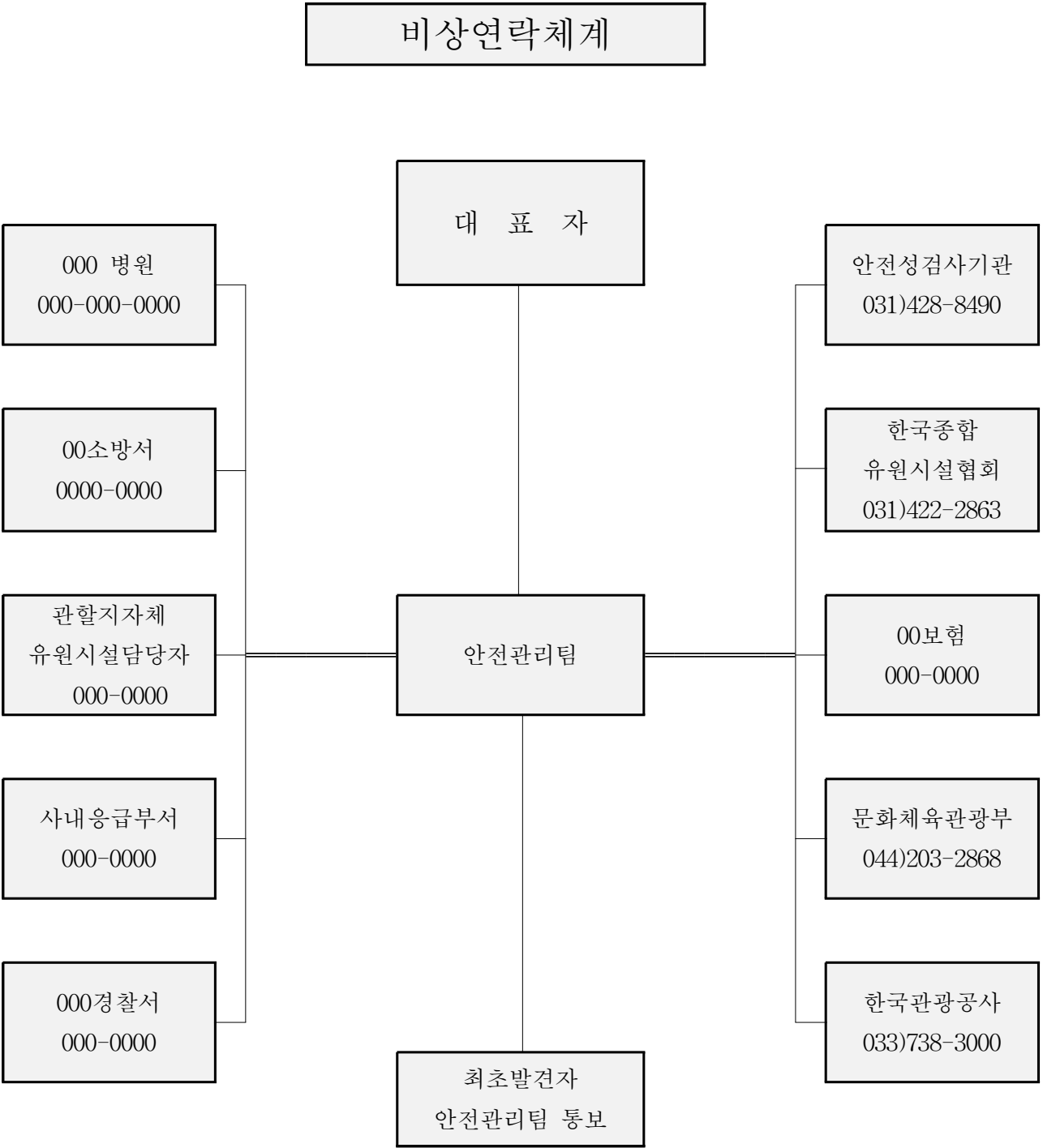
- 1) 운행담당자 :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안전조치
- 2) 안전관리자 : 현장점검 및 조치, 비상연락

라. 운행 중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마. 비상연락체계

1) 최초 발견자는 안전관리팀에 즉시 통보하고, 안전관리팀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2. 사고보고

가.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 사고보고(시행규칙 제41조의2)를 한다.

나. 사고보고 대상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3) 사고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4)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다. 보고내용

-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2) 사고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한다)
- 3) 조치 내용
-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5)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라. 보고방법 :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사고보고 접수여부 확인 필)

마. 보고서 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3. 사고(또는 이상) 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가. 사고(또는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운영 담당자는 즉시 시설을 정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한다.

- ◆ 기구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진자운동 및 회전운동이 감쇄하여 자연적으로 정지하도록 유도
- ◆ 시설(기구)의 이상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 유기사설의 탑승객은 출구로 퇴장을 유도하고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
- ◆ 고객이 완전히 퇴장하였는지 확인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체 의료팀과 소방서에 신고한 후 병원 후송을 지원
- ◆ 출입구를 차단하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입구에 점검안내간판을 부착
- ◆ 유기사설의 동력을 차단
- ◆ 유기사설의 정비부서에 연락
- ◆ 모든 시설(기구)의 수리가 완료되고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가동 여부를 사업자,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에서 결정

나. 이상발생으로 기구의 정지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서에 통보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고상황이 종료된 경우 사고원인조사는 안전관리부서 또는 필요 시 안전관리부서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예시 : 바이킹)

구 분	대응요령
비상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시(위급한 경우)는 비상정지(EMERGENCY STOP)버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 회전 중단 작용(급브레이크 효과): 일반적 일시 정지 • 탑승시설물의 타이어와 차량이 분리된 상태(제동력 없음)에서 안전바를 수동조작하여 열어야 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차시킨다. 이 때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된다. • 환자발생 시 머리, 목, 척추 등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동해서는 안 되며 즉시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기계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 • 자동으로 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력이나 진자의 힘이 약화될 때 까지 기다림 • 부상자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 • 기구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진자운동 및 회전운동이 감쇄하여 자연적으로 정지하도록 유도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 전원이 복구되는 경우 시설(기구)의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재가동 여부를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 하에 결정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시는 신속하게 설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비상사태 체계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소방서에 신고 • 소규모의 화재의 경우 주변 소화기로 진압 • 소방대 또는 자체 소방대의 화재 진압 팀을 유도하여 원활한 화재진압이 되도록 안내 • 상황이 종료되면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진의 발생을 통보받는 즉시 또는 지진을 감지하는 경우에 시설(기구)의 작동을 정지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p>낙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사고는 일반적으로 높고 뽀족한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평소에 피뢰침 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 •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전사고 시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 시 행동요령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즉시 신고
<p>폭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설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설이 내리기 전은 안전 팀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여부를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 폭설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설(기구)를 정지한 후 이상발생 시 행동절차에 따름 • 폭설이 종료되고 시설(기구)의 재가동 여부는 안전관리 및 정비부서팀에서 결정
<p>폭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장마철)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우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우가 내리기 전에는 안전 팀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 여부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 폭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설(기구)을 정지
<p>안내방송</p>	<p>“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000(기구명)의 작동이 000(기계고장, 화재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p>

4. 비상조치 장비 현황

품 목	수 량	보관위치	비 고
사다리	6	각 건물 비상구 옆 3개, 각 시설 보관함 3개	
로 프	12	시설보관함 6개, 각 건물 비상구 6개	
원 치	3	시설 보관함	※ 필요시 구비



5. 의무실(또는 구급약품 비치) 현황

가. 의무시설 현황

관리항목	현황	비고
위치	본관 1층	
연락처	043-000-0000	
면적	30 (m ²)	* 별도의 의무실 면적을 파악
제세동기(AED) 수량	1 개	구비여부
휴게실	1 실	
의사 상주 여부	상주	* 상주(상주, 비상주)여부를 기재
간호인력	2 명	
진료실 유무	있음	* 전용진료실 존재여부
휴식용 침상	1개	
구급약품구비 여부	약품 구비함	* 구비여부를 기재
앰블런스(구급차) 보유 여부	1 대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별도의 의무실 및 구급약품이 필수임 * 일반유원시설의 경우 구급약품이 필수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시설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		

※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의무시설은 선택임

나. 구급약품 현황

관리항목	세부항목	보유여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용 재료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등	보유
외용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보유
주의사항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p>■ 응급처치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알릴 것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 것 <p>※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08),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 : 보건복지부(재 : 한국보육진흥원) 2015 어린이집평가인증 안내</p>		
<p>*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부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p> <p>*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p>		

6. 비상훈련

- 가. 목 적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나. 시 기 : 매년 3월중
- 다. 대 상 : 근무자
- 라. 비상훈련 내용
 - 1) 각종 안전사고(끼임, 추락, 넘어짐, 화재 등)를 가정하여 상황별 대응요령 훈련
 - 2) 필요에 따라 소방서 등과 합동훈련 실시
- 마.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 훈련 종료 1주일 이내에 형식(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함.
- 바. 훈련 결과보고서 보존기한 : 2년

제5장 성과측정 및 경영자 검토

1. 성과측정

- 가. 목 적 : 성과측정의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년도 안전관리활동에 반영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 나. 시 기 : 매년 11월중
- 다. 내 용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상태 등 15개 항목
- 라. 방 법 : 안전관리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별지 제13호 서식)
- 마. 결과활용 : 경영자 검토에 반영

2. 경영자 검토

- 가. 목 적 : 안전관리 계획서의 실행상태를 경영자가 검토함으로써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차기년도에 반영
- 나. 시 기 : 매년 12월중
- 다. 내 용 : 안전관리 경영방침 준수여부
- 라. 검토방법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내용에 대하여 서식(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검토

《별표 1.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

(KOSHA GUIDE H - 57 - 2015: 산업안전보건공단)

1. 응급처치 초기

- 가. (전체적인 관찰) 재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안 안색, 출혈, 구토물등 전체적인 상태를 관찰한다.
- 나. (의식확인) 재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 다. (구조요청) 조사 도중 재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 구급대나 의료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주위에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 라. (심폐소생술 실시) 일반인의 경우 재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무호흡 또는 이상호흡이 감지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전문가는 맥박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재해자가 성인인 경우 흉부압박 30회 대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2분간 5주기 시행 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계속한다. 이 때 흉부 압박은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중앙의 흉골 위치에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시행한다.
- 마. 출혈이 심하면 직접 압박, 지혈점 지압, 지혈대법 등으로 지혈처치를 한다.
- 바. 다음과 같은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면 쇼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과 다리를 지면으로부터 15~30 cm 정도 높이고 보온조치를 한다.
 - 1) 갈증과 불안감
 - 2) 약하고 빠른 맥박
 - 3) 불규칙하고 약한 호흡
 - 4) 창백한 안색
 - 5) 차갑고 축축한 피부
 - 6) 동공의 확대와 빛에 대한 반사지연
 - 7) 구역질과 구토

8) 점진적인 혈압저하

2. 구조요청 및 연락

가. 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에 구조요청 시 유의사항

- 1) 재해자의 수를 알려준다.
- 2) 재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알려준다.
- 4) 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나. 구급차와 통화 시 유의사항

- 1) 재해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 2)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3)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다.
- 4) 눈에 띄는 건물이나 목표물을 지정하여 준다.
- 5) 구조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한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흔들어서 안내한다.

다. 가족에게 연락 시 유의사항

- 1) 상대가 재해자의 가족인지 확인한다.
- 2)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 3) 재해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 4) 재해자의 가족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재해자를 이송할 병원의 위치, 전화번호 및 재해자가 전하는 말을 알려준다.

3. 주위의 협력

가. 주위에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있으면 구조자가 각각의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어 협조를 받는다.

- 1) 구급차 및 가족에게 전화연락
- 2) 주변의 위험물 제거
- 3) 응급처치재료 구비

- 4) 보온을 위하여 모포 등 확보
- 5) 응급처치 보조
- 6) 주위사람 정리
- 7) 사업장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하고 필요시 예비차량 호출 등

4. 재해자의 안정과 적합한 자세의 유지

가.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자세를 유지하여 준다.

- 1)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 준다.
- 2) 의식이 없이 옆드려 있다면 경추와 척추를 잘 지지한 후 통나무 굴리듯이 돌려 눕혀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여준다.
- 3) 안색이 창백하면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려 주고, 안색이 붉으면 상체를 비스듬히 높여준다.
- 4) 의식이 없는 재해자가 구토를 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5) 일반적으로 출혈부위와 골절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준다.

나.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응급처치 시행 중 자주 조용히 말을 건다.

다. 재해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라. 재해자의 처치와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균중을 통제한다.

5. 보온유지

가.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포나 옷을 덮어 준다.

나. 재해자의 옷이 젖어 있으면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보온 조치를 취한다.

다. 보온을 위한 모포나 마른 옷, 수건 등이 없을 때에는 신문지 등 주변에 있는 것을 덮어 준다.

6. 수분 공급

- 가. 의식이 없는 재해자에게 아무 것도 먹이지 않아야 한다.
- 나. 재해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출혈이 심하거나, 내출혈이 의심되거나, 병원 이송 후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음료수를 먹이지 않는다.
- 다. 의식이 있으면 상온의 음료수를 수저로 떠먹이는 정도로 소량씩 먹인다.
- 라. 의식이 있고 보온이 필요하다면 따뜻한 음료수를 먹인다.
- 마. 땀을 많이 흘렸거나 설사 등에 의하여 탈수가 우려되는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이온음료수를 먹이거나 물에 소금과 설탕을 약간씩 타서 먹인다.

7. 재해자의 이송

- 가. 응급처치가 끝나면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송장비에 고정한다.
- 나. 이송장비나 재해자가 주변의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이송한다.
- 다. 의식이 없는 재해자를 차량으로 이송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반드시 1인 이상의 구조자가 동승한다.
- 라. 재해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재해자가 더 이상의 손상을 입거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응급처치 시행자는 재해자의 자세를 적절히 유지하고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다.
- 마.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잘 아는 최초의 응급처치 시행자가 동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유원시설 세부현황

1. 대표자	최 옥 원				
2. 영업의 종류	일반유원시설				
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번지				
4. 영업기간	2018년1월1일 부터 ~ 현재				
5. 면적	9km ²				
6. 유기사설(기구) 보유 현황 : 총 5 대					
번호	분류 (내용)	대표유기 시설(기구)	유기사설 (기구)의 명칭	제원사항	안전성검 사대상여 부
1	주행형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주행길이 : 200m 탑승정원 : 20명	대상
2	주행형	킹롱열차	드래곤 열차	주행길이 : 500m 탑승정원 : 30	대상
3	고정형	마이킹	마이킹	탑승정원 : 40명 높이 : 10m 상승각도 : 60°	대상
4	놀이형	포켓맞추기	포켓맞추기	이용정원 : 2명	비대상
5	놀이형	바디슬라이드	바디슬라이드	최소이용간격:30초 길이 : 50m	대상
<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호</p> <p>*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p> <p>* 모든 설비별로 현황 작성</p>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계획 실적	교육계획(실시)/월												비고	장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최초교육	계획				0										선임신고 후 3개월	협회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실적					0										2년 만기일 1개월 전	협회
	신규근무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계획															신임사원의 배치일 당일 오전	자체
			실적																
비상훈련	근무자	년 1회 이상	계획	0	0	0	0	0	0	0	0	0	0	0	0	0	매주 월요일 오전	자체	
			실적																시나리오 훈련(권고)

*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서 선임된 안전 관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하여 외부(유원시설협회)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계획을 참고하여 표시
 * 신규근무자의 경우는 입사일 당일에 교육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안전교육(훈련)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과정	교육시간
	시작시간	시 분	근무자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신규종사자	4시간 이상
	종료시간	시 분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주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장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인원	명	교육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사	

교육내용						
------	--	--	--	--	--	--

교육명단					
------	--	--	--	--	--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3호(준수사항)

* 명단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첨부가능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4호 서식 기구별 점검계획서》

기구별 점검계획서(예시)

순번	시설(기구)명	설치 년도	점검 (자체) 일	안전성검사 (외부검사기관)		제작사의 요구에 의한 부품의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점검				
				반 기	1년	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모노레일	2015	○		○			○		

* 허가신청시 각 기구별로 사업장에서 해당월을 확인하여 표기
 *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작성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6. 12. 30.>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정 비 이 력 서

기구명						
제작회사				제작년도		
정비일자 (시간)	정비사유			정비내용	정비결과	비고
	예방 정비	정기 정비	고장 정비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 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 형태						
훈련일시	20 년 월 일.		시간:		~	
훈련장소			훈련실시 부서	안전팀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훈련참가자	대상인원 :	명	
				참가인원 :	명	
훈련내용 (간략하게 요약)						
훈련성과 및 강평	※ 훈련성과					
	※ 강평					
문 제 점 및 개선 대책	문 제 점			개선대책		
첨 부	1. 교육훈련 참가자 명단(교육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 2. 훈련실시 사진(필요시)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9호 서식 일일안전점검표지판》

일 일 안 전 점 검 표 지 판

유기기구명	슬라이드	안전성검사일	00 년 0 월 0 일	
점검기준	관광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안전관리자	김 안 철	위험요인 발생신고	010-000-0000	
일일안전 점검결과	점검일자	정상	정비중	운행중지
	20 년 0 월 0 일			

- * 표 최소규격(예시) : 가로 50cm × 세로 40cm
- * 허가시에는 일일안전 점검결과란 작성 불필요
- * ‘별표5’ 유기시설·유기기구 허가 전 안전성검사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위험요소목록》

위험요소목록

2018년 월 일

시설(기구)	위험요소의 종류 및 형태	현재안전대책	위험요소 개선 대책(필요시)
월드 모노레일	추락	안전문 설치	
	바퀴마모	주기적인 점검	
드래곤 열차	추락	안전바 설치	
바이킹	추락	안전바 체결	
	제동장치 고장	주기적인 점검	
표적맞추기	관람자 진입	안전휀스 설치	
	미끄러짐	바닥재 마찰력 향상	
바디 슬라이드	통행자 상해	시설 뒤부분 통행 차단	
	충돌	유도요원 배치 측벽에 완충재 부착	
<p>* 각 기구별로 다양한 위험요소를 추정하여 작성하여야 함</p> <p>* 모든 시설별로 2가지 이상의 위험요소목록 작성</p>			

《별지 제11호 서식 법규검토서》

법 규 검 토 서

(20 년도)

검토자: 안전관리자

법규명	검토항목	검토결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관광 진흥법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기타 관광 진흥법의 변경사항				
관광 진흥법시행령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기타 관광 진흥법 시행령의 변경사항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기타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				
	제6조(허가 전 검사 기준)				
	기타 기준의 변경사항				
* 검토결과와 판에는 사업장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기재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 표시 함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평가서》

교육평가서

교육강사(피평가자) :

인

번호	평가항목(이해정도)	평가결과		
		양호	보통	미흡
1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2	비상 시나리오에서 본인의 임무			
3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4	교육내용의 이해정도			
5	운용설비의 점검항목의 내용			
6	운용설비의 위험요소의 종류			
7	운용설비의 가동 및 비상정지의 절차			
8	----- 필요시 추가 작성			
* 교육내용을 기재하고 평가 실시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측정》

성 과 측 정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담 당	승 인

번호	측정항목	측정결과 (○ 표시)		비고
		양호	불량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상태			
2	안전경영방침의 게시상태			
3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의 실시상태			
4	위험요소의 확인과 개선조치상태			
5	정기적으로 법규검토의 실행상태			
6	안전관리자의 적정 배치상태			
7	교육의 정상적인 실시상태			
8	교육실시 후 평가			
9	해당시설의 정기안전성검사의 실시상태			
10	일일점검 및 점검기록부의 작성상태			
11	안전점검표지판의 정상부착상태			
12	비상연락체계(연락번호)의 정확성상태			
13	중대사고발생시의 적절한 보고상태			
14	이상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상태			
15	전년도 경영자평가에서 계획한 사항의 실천여부			
*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작성 * 허가신청시 측정결과 표기 불필요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자검토》

경 영 자 검 토

20 년 월 일

결	작 성	담 당	승 인
재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준수여부		준수여부를 표기 함
법규검토결과 변경사항발생한 경우 반영 여부		적정여부를 표기 함
목표의 적정 달성여부		적정여부를 표기 함
전년도 경영자 검토결과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표기 함
사업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 표기 함
경영자 검토결과 경영자의 의견		1년 동안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 기재
* 안전관리계획수립의 실행결과를 총평가하는 개념이므로 서술식으로 표현이 가능 함 * 허가신청 시 검토결과 작성 불필요		

다. A형 물놀이형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

<< 적용 안내 >>

- ▶ 본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A형)은 물놀이형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예시임
- ▶ 본 표준안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체 상황에 맞추어 표준안(B형)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음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물놀이형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

[작성일자 : 20--년 0 월 0 일]

0 0 랜 드

CONTENTS

- 목 차 -

장 절	목 차 명	
제1장	일반사항	254
1	목적	254
2	적용근거	254
3	적용범위	254
4	책임과 권한	254
제2장	시설현황	255
1	유원시설 일반현황	255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255
제3장	안전관리계획	256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256
2	안전교육	261
3	안전검사 · 점검	262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263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263
2	사고보고	265
3	사고(또는 이상)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266
4	비상조치 장비(요원)현황	268
5	의무실(구급약품)현황	270

- 서 식 목 록 -

별지 제1호서식	유원시설현황 -----	272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계획서 -----	273
별지 제3호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	275
별지 제4호서식	기구별점검계획서 -----	275
별지 제5호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	276
별지 제6호서식	정비이력서 -----	277
별지 제7호서식	사고보고서 -----	278
별지 제8호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	279

◆ 안전경영방침 ◆

00랜드는 유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경영이념을 선포하여 인간 존중정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안전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유원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설정한다.

1.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에 관한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모든 조직원은 안전활동에 참가한다.
4. 지속될 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위와 같은 안전경영방침을 전 근무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20 . .

주식회사 00랜드

대표이사 최 유 원 서명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동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5조2항(허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3. 적용범위

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업무

나. [00랜드]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근무인원 및 이용객

4.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내용
[대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최종 승인 - 안전관리계획의 최종 책임 -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관리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 및 반영 -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효성 및 타당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실행 문서 작성 및 보관(보존기간 : 2년) ■ 유기시설 관련 법률 모니터링 및 개정내용 공지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실행 및 실천

제2장 시설현황

1. 일반현황

가. 유원시설 일반현황

상 호	00랜드
대 표 자	최 우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면 적	1,000m ²
허 가 일	2018년 1월 1일
관리책임자	홍길동
안전관리자	김안철
기타근무자	10명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세부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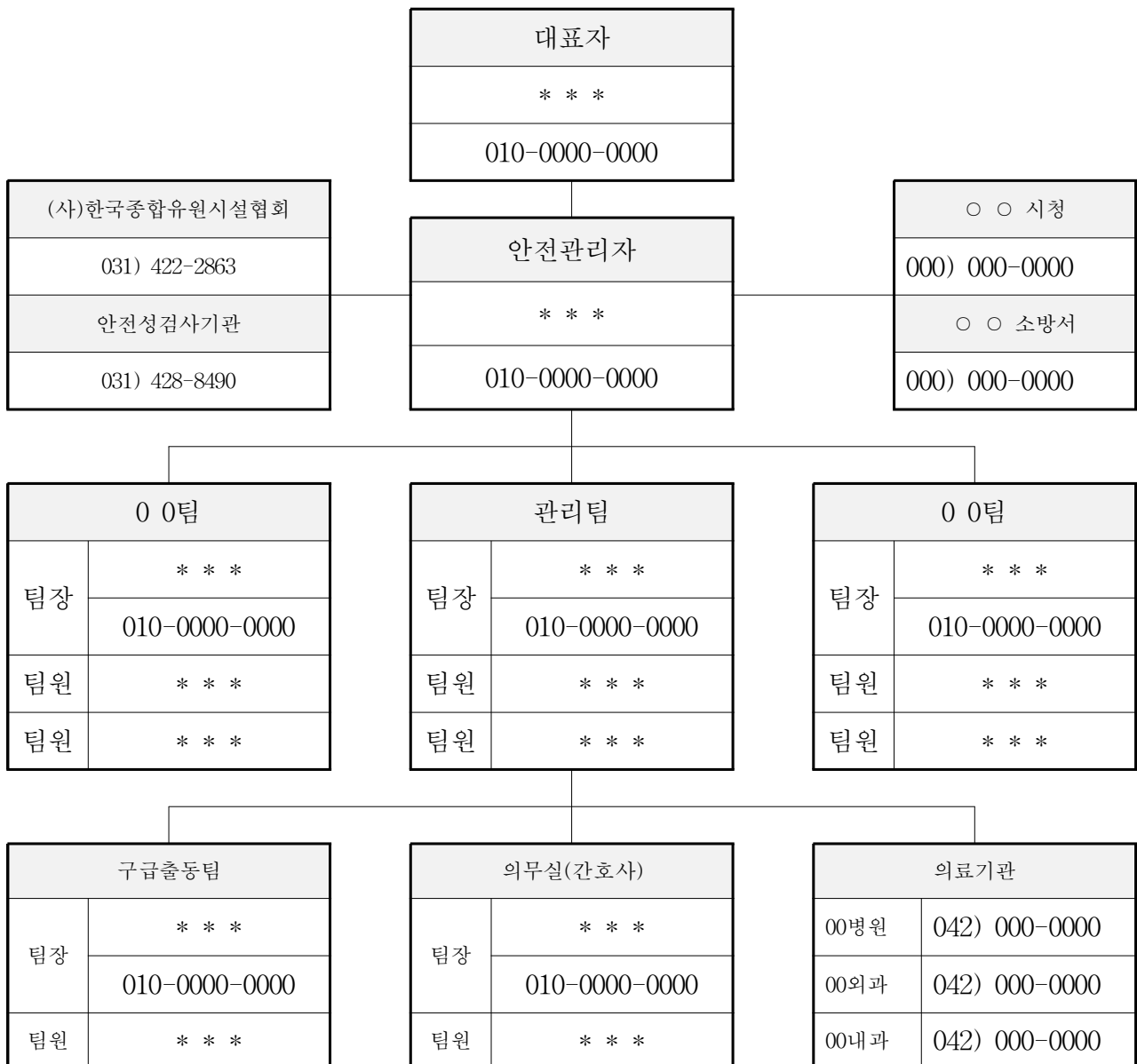
구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계
안전성검사대상				1	1
정기확인검사대상					
확인검사대상					
계				1	1

제3장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가.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도



나. 안전관리자 현황 :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1명 이상을 두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용원을 상주시킬수 있다.

1) 안전관리자 현황(의무) : 총 ____명

성명	자격명칭	선임일자	기타
0 0 0	산업안전기사	2018.1.1	

※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41조, 별표 12 의거

2) 정비용원 현황(선택) : 총 ____명

성명	자격명칭	입사일자	기타
0 0 0	철기기사	2018.1.1	

3) 안전요원 현황(의무) : 총 ____명

시 설 명	배치인원		자격조건	기타(기준면적)
	공휴일	평일		
바디슬라이드	2	2	해양경찰청 강습자격자	1,000m ²

* 안전요원 자격조건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제39조의2)을 참조

다.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

1) 사업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참조**

1. 공통사항

- 가.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 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라.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 마.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사.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아.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풀의 수질 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1)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2.0mg/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각 풀의 대장균균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인 것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차.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 카.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3)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 파.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
- 타. 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참조

1.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유기사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목 적 :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제반 법규준수

나. 대 상 : 전직원

다. 교육종류 및 주기

구 분	대 상	교육주기 및 시간	비고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최초교육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신규근무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근무자	주 1회 1시간 이상	
비상훈련	근무자	연 1회 이상	권고사항
	(별지 제 8호 서식)		

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마. 교육계획수립 : 안전관리자는 과정 및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 (훈련)계획서를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바. 강 사 : 안전관리자 및 외부강사(안전전문가)

1) 주요교육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나)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요령

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라) 사고발생 시의 대책에 관한 사항

마) 안전경영방침의 내용

바)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결과보고 : 안전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 후 대표이사의 승인

*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3. 안전검사·점검

가. 목 적 : 유기기구의 검사·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법률준수

나. 기구별 점검계획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다. 검사·점검종류

구 분	주 기	검사·점검자	내 용
자체점검	매일	안전관리자	기구별 점검사항 및 기록부 (별지 제 5호 서식)
안전성검사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검사기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적용
제조사검사	연 1회	안전관리자	제조사의 부품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점검 및 조치 (권고사항)

라. 검사·점검실시

- 1) 각 검사·점검자는 매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및 일일점검 표지판 기록
- 2) 각 기구별로 정비이력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구의 잔여 수명을 반영하여 점검 및 보수 실시

구분	점검자	점검시기	점검내용
일일점검	안전관리자, 운영자	개장 1시간 전	기구별 점검기준표
상시점검	운영자	운영중 상시	기구별 점검기준표
주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월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월 첫째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특별점검	안전관리자	연 1회	제조사의 요구항목
정기검사	검사전문기관	법규준수	외부기관 검사기준을 적용

마. 점검결과 보존기한 : 검사종료일로부터 2년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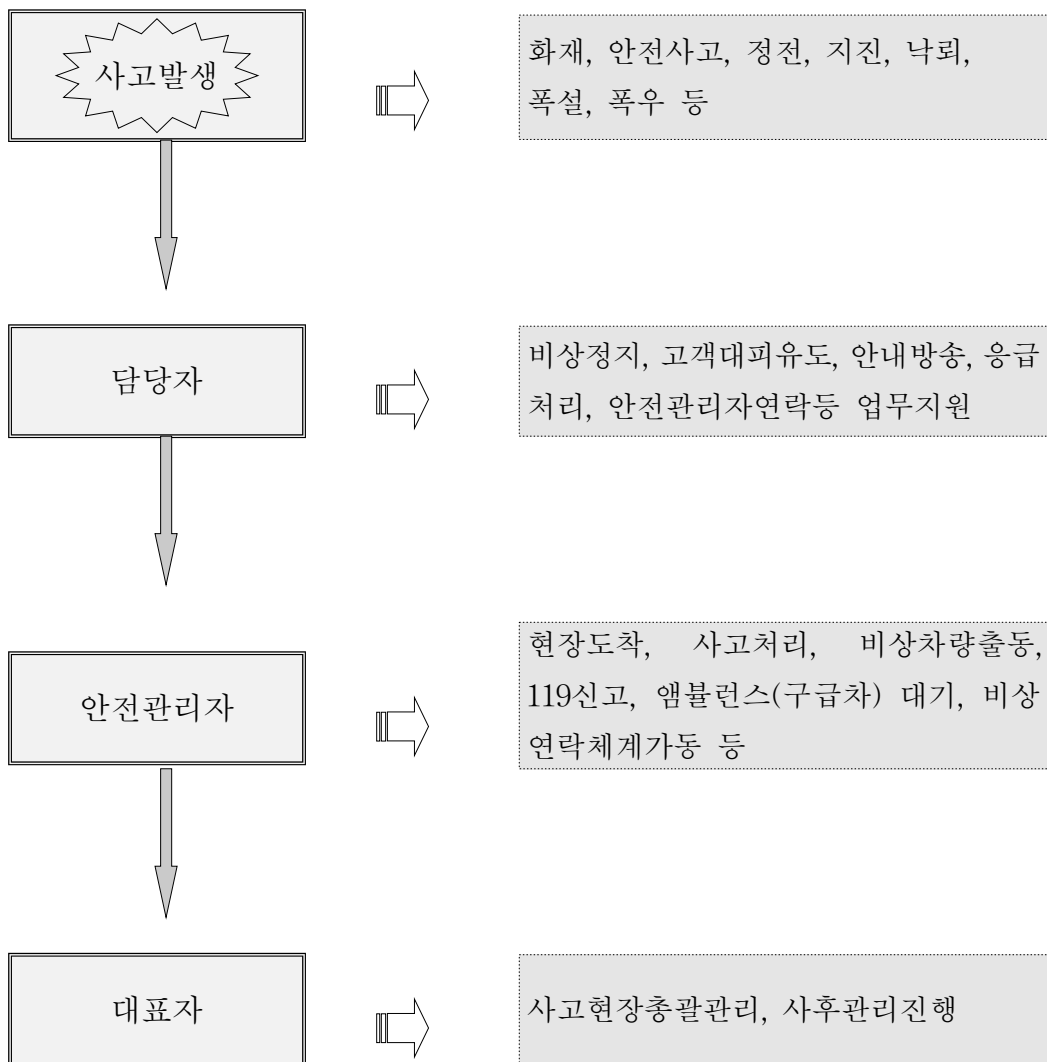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가. 운행담당자는 사전에 시설(기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업무를 개시
 나. 비상상황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 운행 전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1) 운행담당자 :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안전조치
- 2) 안전관리자 : 현장점검 및 조치, 비상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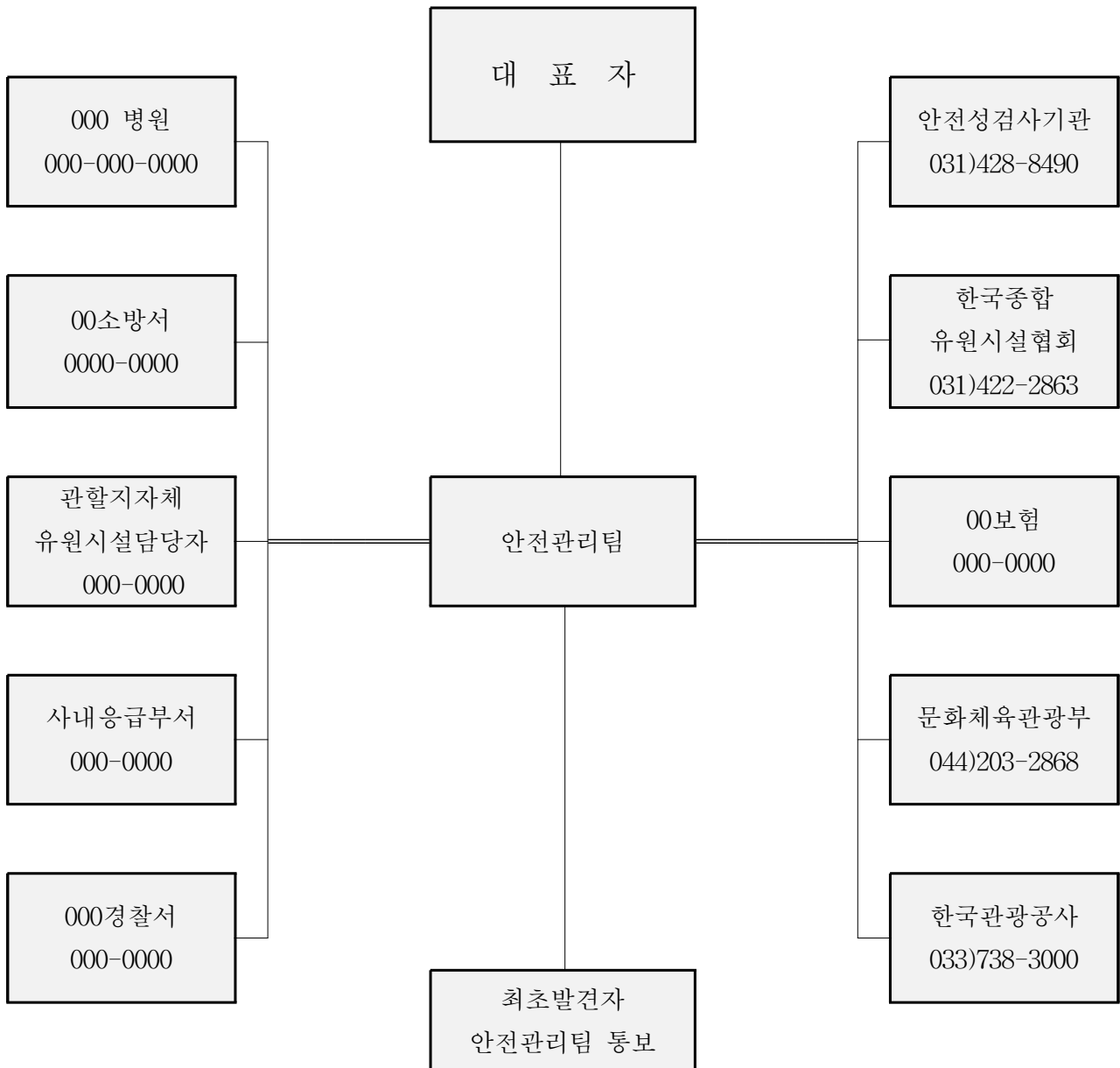
라. 운행 중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마. 비상연락체계

- 1) 최초 발견자는 안전관리팀에 즉시 통보하고, 안전관리팀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비상연락체계



2. 사고보고

가.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 사고보고(시행규칙 제41조의2)를 한다.

나. 사고보고 대상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3)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4)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다. 보고내용

-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한다)
- 3) 조치 내용
-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라. 보고방법 :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사고보고 접수여부 확인 필)

마. 보고서 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3. 사고(또는 이상) 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가. 사고(또는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운영 담당자는 즉시 시설을 정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한다.

- ◆ 전원을 차단하여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을 정지 시키거나 회전기기의 정지를 유도
- ◆ 시설(기구)의 이상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 유기사설의 탑승객은 출구로 퇴장을 유도하고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
- ◆ 고객이 완전히 퇴장하였는지 확인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체 의료팀과 소방서에 신고한 후 병원 후송을 지원.
- ◆ 출입구를 차단하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입구에 점검안내간판을 부착
- ◆ 유기사설의 동력을 차단
- ◆ 유기사설의 정비부서에 연락
- ◆ 모든 시설(기구)의 수리가 완료되고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 가동 여부를 사업자,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에서 결정

나. 이상발생으로 기구의 정지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서에 통보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고 상황이 종료 된 경우 사고원인조사는 사업자와 담당자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예시 : 슬라이드)

구분	대응요령
비상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위급한 경우)는 비상정지(EMERGENCY STOP)버튼 사용하여 동력(펌프등)을 차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한다. • 유도요원은 이용객을 모두 안전하게 하강을 유도하고 부상자의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상 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
기계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하고 안전관리자(정비부서포함)에게 연락한다. • 부상자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하고 안전관리자(정비부서포함)에게 연락한다.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 전원이 복구되는 경우 시설(기구)의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재 가동 여부를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 하에 결정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시는 신속하게 설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 •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비상사태체계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소방서에 신고 • 소규모의 화재의 경우 주변 소화기로 진압 • 소방대 또는 자체 소방대의 화재 진압 팀을 유도하여 원할 한 화재진압이 되도록 안내 • 상황이 종료되면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진의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시설(기구)의 작동을 정지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 •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낙 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사고는 일반적으로 높고 뾰족한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평소에 피뢰침 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 •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전사고 시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 시 행동요령의 절차에 따라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즉시 신고
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운영자는 안전요원의 배치유무를 수시로 확인 • 기구운영자는 수시로 안전요원과 상호연락을 유지 • 익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안전요원에게 연락 • 익수자의 안전한 처치를 위하여 시설(기구)을 정지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 •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안내방송	<p>“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000(기구명)의 작동이 000(기계고장, 화재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p>

4. 비상조치 장비(요원)현황

품목	수량	보관위치	비고
구명구	3	장비보관함 3개	각 보관함에 1개씩 보관
구명조끼	9	장비보관함 9개	각 장비보관함에 3개씩 보관
구명로트	3	장비보관함 3개	각 보관함에 1개씩 보관



안전 요원	배치인원	총 _____명
	배치기준	규칙 (제39조의2 관련)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 * 필요시 건축평면 배치도를 첨부
- * 각 장비(요원) 위치를 표시

5. 의무실(또는 구급약품 비치) 현황

가. 의무시설 현황

관리항목	현황	비고
위치	본관 1층	
연락처	043-000-0000	
면적	30 (m ²)	* 별도의 의무실 편직을 좌악
제세동기(AED) 수량	1 개	구비여부
휴게실	1 실	
의사 상주 여부	상주	* 상주(상주, 비상주)여부를 기재
간호인력	2 명	
진료실 유무	있음	* 전용진료실 존재여부
휴식용 침상	1개	
구급약품구비 여부	약품 구비함	* 구비여부를 기재
앰블런스(구급차) 보유 여부	1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별도의 의무실 및 구급약품이 필수임 ▶ 일반유원시설의 경우 구급약품이 필수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시설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 		

나. 구급약품 현황

관리항목	세부항목	보유여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용 재료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등	보유
외용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보유
주의사항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응급처치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통보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 것 <p>※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08),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 : 보건복지부(재 : 한국보육진흥원) 2015 어린이집평가인증 안내</p>		
<p>▶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부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p> <p>▶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p>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유원시설 세부현황

1. 대표자	최 우 원				
2. 영업의 종류	물놀이형목욕시설				
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씨재로 10번지				
4. 영업기간	2018년1월1일 부터 ~ 현재				
5. 면적(길이)	1,000m ² (1,100mm)				
6. 유기사설(기구) 보유 현황 : 총 1 대					
번호	분류 (내용)	대표유기 시설(기구)	유기사설 (기구)의 명칭	제원사항	안전성검 사대상여 부
1	놀이형	바디슬라이드	바디슬라이드	최소이용간격:30초 길이 : 50m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호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제40조제1항 관련) ▶ 모든 설비별료 현황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교육계획(실시)/월												비고	장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합.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선임신고 후 3개월	합회
		최초교육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2년 만기일 1개월 전	합회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신규근무 자	신규근무 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신임사원의 배치일 당일 오전	자체
		주 1회 1시간 이상																
비상훈련	근무자	년 1회 이상	계획	0	0	0	0	0	0	0	0	0	0	0	0	매주 월요일 오전	자체	
			실적															
			계획													시나리오 훈련(관교)	자체	
			실적															

*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서 선임된 안전 관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하여 외부(유원시설협회)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계획을 참고하여 표시

* 신규근무자의 경우는 입사일 당일에 교육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안전교육(훈련)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과정	교육시간
	시작시간	시 분	근무자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신규종사자	4시간 이상
	종료시간	시 분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주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장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인원	명	교육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사	
교육내용						
교육명단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3호(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첨부가능 ○ 허가신청 시 내용작성 불필요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시설(기구) 명 : 슬라이드

20 년 월

담당자: 안전관리자

번호	점검사항	일일점검실시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내부장애물 상태																																
2	표면의 상태																																
3	슬라이드 체결상태																																
4	내부 물의양의 적정 여부																																
5	굴곡부의 높이차																																
6	비상조작장치 상태																																
7	안전벽의 상태																																
8	미끄럼방지상태																																
9	제작사의 요구에 의한 점검위치																																
※ 점검사항 작성기준: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 참고 ※ 각 기구별로 점검사항을 작성관리 ※ 점검결과표시(정상(양호): ○, 요정비: △, 고장: ×) ※ 정비사항은 정비가력서 참고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정 비 이 력 서

기구명						
제작회사				제작년도		
정비일자 (시간)	정비사유			정비내용	정비결과	비고
	예방 정비	정기 정비	고장 정비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 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 형태			
훈련일시	20 년 월 일. 시간: ~		
훈련장소	훈련실시 부서	안전팀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훈련참가자	대상인원 : 명 참가인원 : 명
훈련내용 (간략하 게 요약)			
훈련성과 및 강평	※ 훈련성과		
	※ 강평		
문 제 점 및 개선 대책	문제점		개선대책
첨 부	1. 교육훈련 참가자 명단(교육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 2. 훈련실시 사진(필요시)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라. B형 물놀이형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 적용 안내 >>

- ▶ 본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A형)은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예시임
- ▶ 본 표준안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체 상황에 맞추어 표준안(B형)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음

《B형 물놀이형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물놀이형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

[작성일자 : 20--년 0 월 0 일]

0 0 랜 드

CONTENTS

- 목 차 -

장	절	목 차 명	
제1장		일반사항	285
	1	목적	285
	2	적용근거	285
	3	적용범위	285
	4	책임과 권한	285
제2장		시설현황 및 예방계획	286
	1	유원시설 일반현황	286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286
	3	사고예방 및 홍보계획	286
	4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	287
	5	법규검토	288
제3장		안전관리계획	289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289
	2	안전교육	294
	3	안전검사 · 점검	295
	4	수질관리	296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297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297
	2	사고보고	299
	3	비상(또는 이상)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300
	4	비상조치 장비(요원)현황	303
	5	의무실(구급약품)현황	305
	6	비상훈련	306
제6장		성과측정 및 경영자 검토	307
	1	성과측정	307
	2	경영자 검토	307
별표 1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308

- 서 식 목 록 -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	312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	313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	314
별지 제4호 서식	기구별점검계획서 -----	315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	316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	317
별지 제7호 서식	사고보고서 -----	318
별지 제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	319
별지 제9호 서식	일일안전점검표지판 -----	320
별지 제10호 서식	위험요소목록 -----	321
별지 제11호 서식	법규검토서 -----	322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평가서 -----	323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측정 -----	324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자검토 -----	325
별지 제15호 서식	수질관리현황 -----	326
별지 제16호 서식	수질관리일지 -----	327

◆ 안전경영방침 ◆

00랜드는 유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경영이념을 선포하여 인간 존중정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안전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유원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설정한다.

1.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에 관한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모든 조직원은 안전활동에 참가한다.
4. 지속된 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위와 같은 안전경영방침을 전 근무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20 . .

주식회사 00랜드

대표이사 최 유 원 서명

1장 일반사항

1. 목 적

동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5조2항(허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3. 적용범위

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업무

나. [OO랜드]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근무인원 및 이용객

4.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내용
[대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의 최종 책임 -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관리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 및 반영 -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효성 및 타당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실행 문서 작성 및 보관(보존기간 : 2년) ■ 유기시설 관련 법률 모니터링 및 개정내용 공지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실행 및 실천

제2장 시설현황 및 예방계획

1. 일반현황

가. 유원시설 일반현황

상 호	00랜드
대 표 자	최 우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면 적	1,000m ²
허 가 일	2018년 1월 1일
관리책임자	홍길동
안전관리자	김안철
기타근무자	10명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세부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구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계
안전성검사대상				1	1
정기확인검사대상					
확인검사대상					
계				1	1

3. 사고예방 및 홍보계획

가. 사고예방 활동(선택사항)

1) 매 분기 대표이사 주제 조회 실시 및 홍보영상 시청

- 2) 전 직원 대상 사고예방을 위한 선서 실시
- 3) 성수기 사고예방 주간 운영(여름철)

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구 분	수 량	활용방법
포스터	20부	사무실 및 게시판 부착
현수막	3개	정문 1개소, 영업장 2개소 부착
교육자료	1식	직원 안전교육 시 활용

- 1) 포스터 제작 (20부), 현수막 제작, 사고예방 사례 및 교육자료 제작
- 2)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선택적 시행

다. TBM 활동(위험예지활동)

- 1) 목 적 : 무재해
- 2) 시 기 : 연 중
- 3) 세부내용 : 근무시작 전 각 시설별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활동

4.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

가. 위험요소 파악

- 1) 일상점검(안전관리자 및 운행자) : 매일 개장 전 유기사설 점검
- 2) 상시점검(운행자) : 운행 중 수시로 위험요인 모니터링
- 3) 정기점검(안전관리자) :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나. 시설(기구)별 위험요소

- 1) 각 시설별로 2가지 이상의 위험요소를 파악
- 2) 각 시설별 위험요소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다. 위험요소 발견시 대응방법

- 1)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장조치
- 2) 인원 통제관련 사항 : 즉시 현장조치
- 3) 전기 · 기계적 결함 : 운행중단 및 즉시조치

5. 법규검토

가. 법규검토가 필요한 안전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 관광 진흥법 , 관광 진흥법 시행령,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 2)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

나. 법규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관련내용을 모든 근무자에게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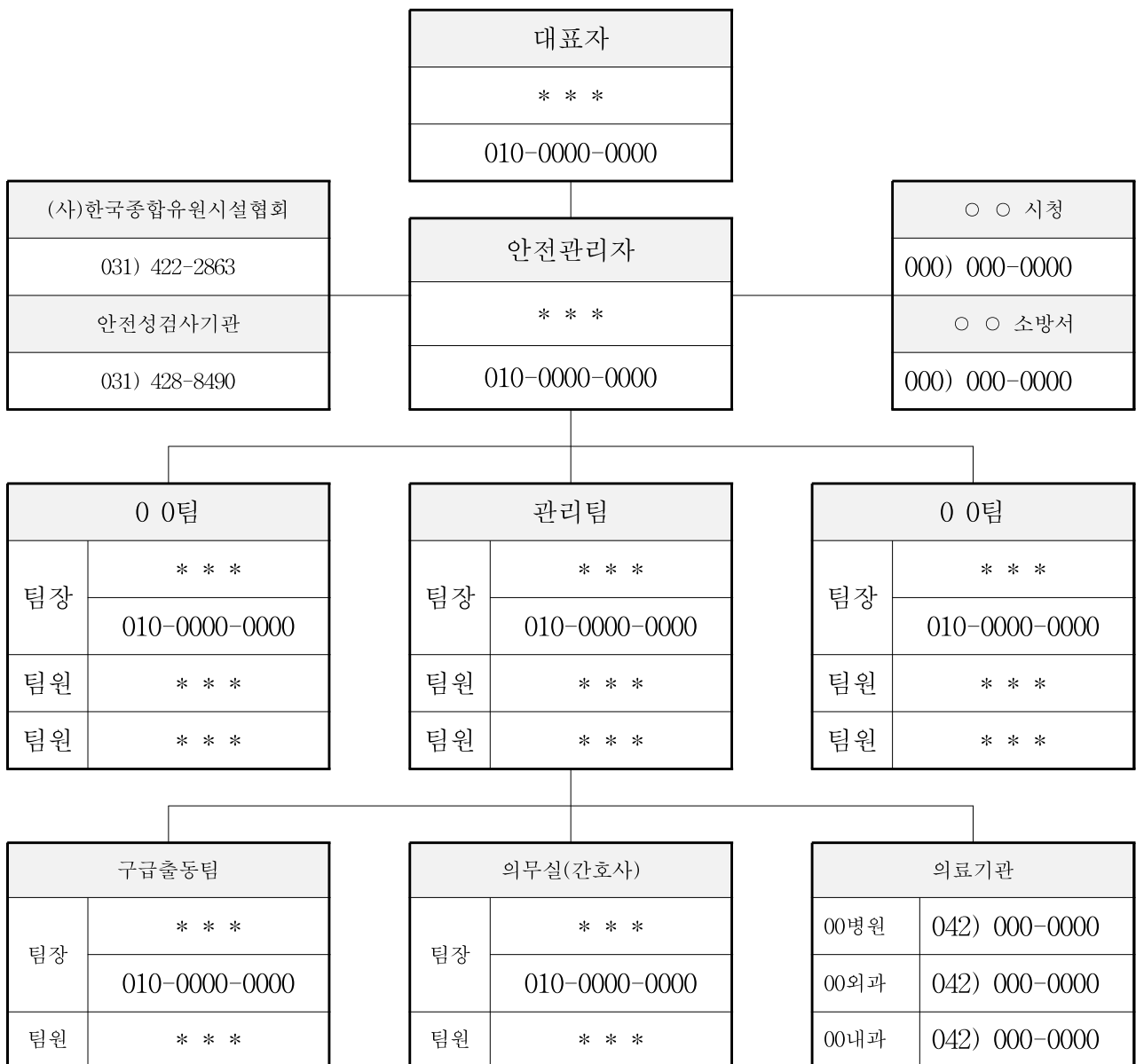
다. 안전관리자는 매 반기 마다 법령의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유지한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가.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도



나. 안전관리자 현황 :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1명 이상을 두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요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현황(의무) : 총 ____명

성명	자격명칭	선임일자	기타
0 0 0	산업안전기사	2018.1.1	

※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41조, 별표 12 의거

2) 정비요원 현황(선택) : 총 ____명

성명	자격명칭	입사일자	기타
0 0 0	철기기사	2018.1.1	

3) 안전요원 현황(선택) : 총 ____명

시 설 명	배치인원		자격조건	기타(기준면적)
	공휴일	평일		
바디슬라이드	2	2	해양경찰청 강습자격자	1,000m ²

* 안전요원 자격조건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제39조의2)을 참고

○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

- 사업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참조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 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5.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풀의 수질 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2.0mg/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마. 각 풀의 대장균균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 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참조

1.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유기사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목 적 :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제반 법규준수

나. 대 상 : 전직원

다. 교육종류 및 주기

구 분	대 상	교육주기 및 시간	비고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최초교육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신규근무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근무자	주 1회 1시간 이상	
비상훈련	근무자	연 1회 이상	권고사항
	(별지 제 8호 서식)		

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마. 교육계획수립 : 안전관리자는 과정 및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 (훈련)계획서를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바. 강 사 : 안전관리자 및 외부강사(안전전문가)

1) 주요교육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나)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요령

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라) 사고발생 시의 대책에 관한 사항

마) 안전경영방침의 내용

바)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결과보고 : 안전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 후 대표이사의 승인

*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사. 교육평가 : 교육 훈련 후에는 교육의 성과를 평가 함

*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3. 안전검사·점검

가. 목 적 : 유기기구의 검사·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법률준수

나. 기구별 점검계획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다. 검사·점검종류

구 분	주 기	검사·점검 자	내 용
자체점검	매일	안전관리자	기구별 점검사항 및 기록부 (별지 제 5호 서식)
안전성검사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검사기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적용
제조사검사	연 1회	안전관리자	제조사의 부품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점검 및 조치 (권고사항)

라. 검사·점검실시

1) 각 검사·점검자는 매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및
일일점검 표지판 기록

2) 각 기구별로 정비이력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구의 잔여
수명을 반영하여 점검 및 보수 실시

구분	점검자	점검시기	점검내용
일일점검	안전관리자, 운영자	개장 1시간 전	기구별 점검기준표
상시점검	운영자	운영중 상시	기구별 점검기준표
주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월간점검	안전관리자	매월 첫째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특별점검	안전관리자	연 1회	제조사의 요구항목
정기검사	검사전문기관	법규준수	외부기관 검사기준을 적용

마. 점검결과 보존기한 : 검사 종료일로부터 2년

4. 수질관리

가. 기구별 점검표지판 부착 *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나. 수질, 순환횟수 및 동시수용인원관리(별지 제15호 서식)

- 1)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다.
- 2) 물의 순환 횟수관리
- 3)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관리

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의한 수질관리일지를 작성

* 별지 제16호 서식 참고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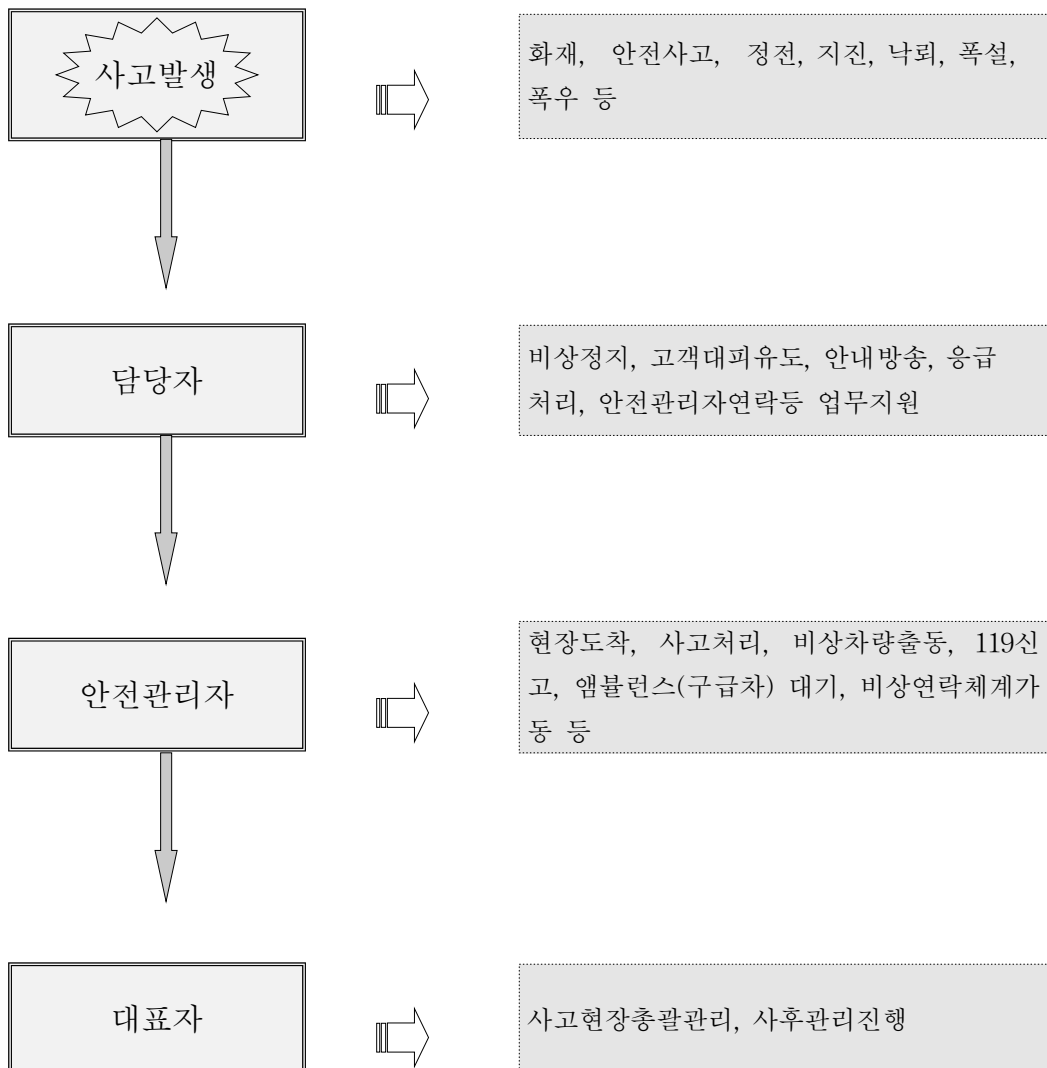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가. 운행담당자는 사전에 시설(기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업무를 개시
 나. 비상상황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 운행 전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1) 운행담당자 :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안전조치
- 2) 안전관리자 : 현장점검 및 조치, 비상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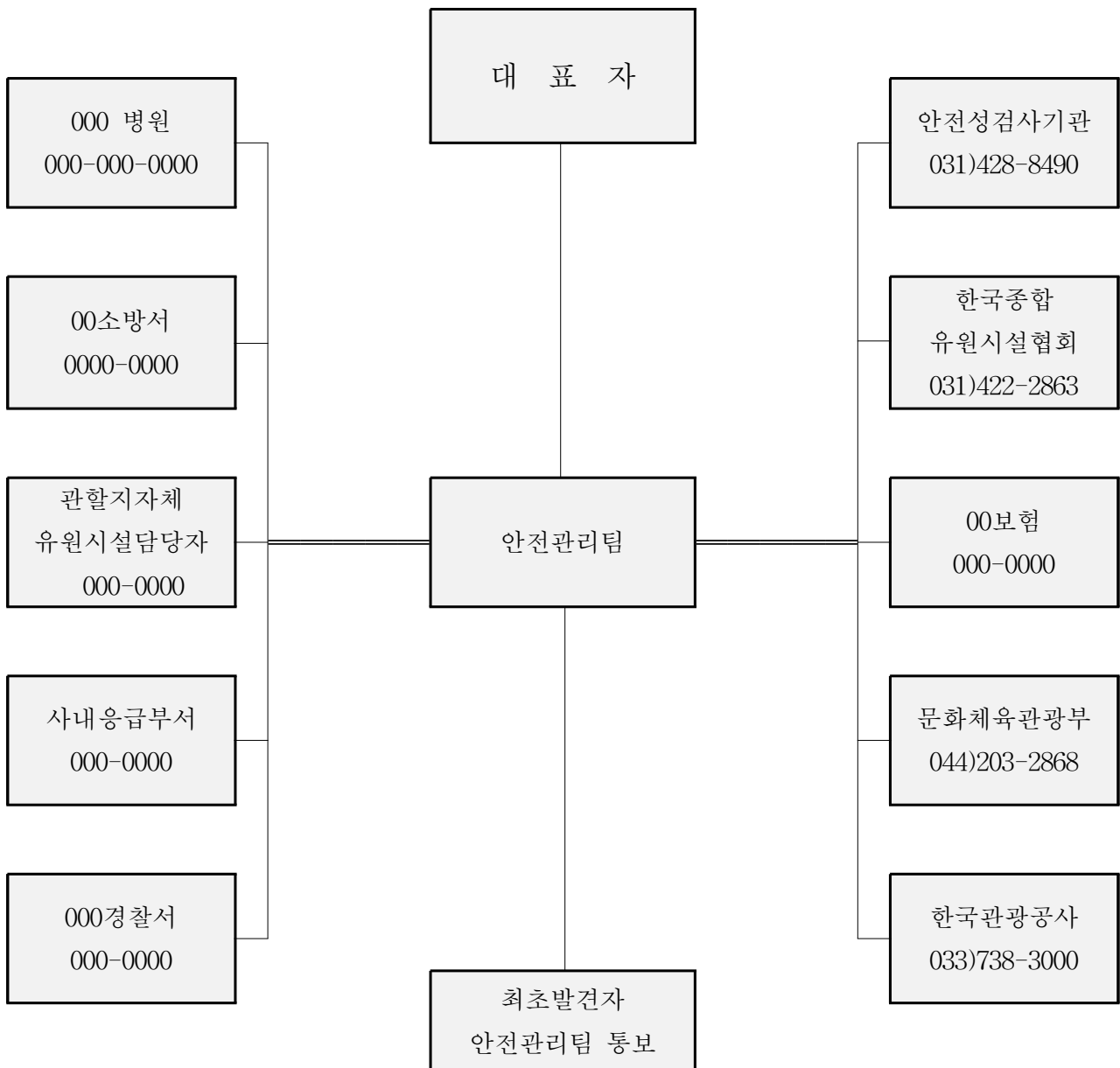
라. 운행 중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마. 비상연락체계

- 1) 최초 발견자는 안전관리팀에 즉시 통보하고, 안전관리팀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비상연락체계



2. 사고보고

가.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 사고보고(시행규칙 제41조의 2)를 한다.

나. 사고보고 대상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3)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4)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다. 보고내용

-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한다)
- 3) 조치 내용
-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라. 보고방법 :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사고보고 접수여부 확인 필)

마. 보고서 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3. 사고(또는 이상) 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가. 사고(또는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운영 담당자는 즉시 시설을 정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한다.

- ◆ 전원을 차단하여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을 정지 시키거나 회전기기의 정지를 유도
- ◆ 시설(기구)의 이상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 유기사설의 탑승객은 출구로 퇴장을 유도하고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
- ◆ 고객이 완전히 퇴장하였는지 확인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체 의료팀과 소방서에 신고한 후 병원 후송을 지원.
- ◆ 출입구를 차단하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입구에 점검안내간판을 부착
- ◆ 유기사설의 동력을 차단
- ◆ 유기사설의 정비부서에 연락
- ◆ 모든 시설(기구)의 수리가 완료되고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 가동 여부를 사업자,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에서 결정

나. 이상발생으로 기구의 정지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서에 통보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고 상황이 종료 된 경우 사고원인조사는 사업자와 담당자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예시 : 슬라이드)

구분	대응요령
비상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위급한 경우)는 비상정지(EMERGENCY STOP)버튼 사용하여 동력(펌프등)을 차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한다. • 유도요원은 이용객을 모두 안전하게 하강을 유도하고 부상자의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상 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
기계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하고 안전관리자(정비부서포함)에게 연락한다. • 부상자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하고 안전관리자(정비부서포함)에게 연락한다.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 전원이 복구되는 경우 시설(기구)의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재 가동 여부를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 하에 결정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시는 신속하게 설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 •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비상사태체계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소방서에 신고 • 소규모의 화재의 경우 주변 소화기로 진압 • 소방대 또는 자체 소방대의 화재 진압 팀을 유도하여 원활 한 화재진압이 되도록 안내 • 상황이 종료되면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진의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시설(기구)의 작동을 정지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 •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낙 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사고는 일반적으로 높고 뾰족한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평소에 피뢰침 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 •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전사고 시의 절차에 따라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 시 행동요령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즉시 신고
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운영자는 안전요원의 배치유무를 수시로 확인 • 기구운영자는 수시로 안전요원과 상호연락을 유지 • 익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안전요원에게 연락 • 익수자의 안전한 처치를 위하여 시설(기구)을 정지 • 이용객의 출발을 금지 •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안내방송	<p>“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000(기구명)의 작동이 000(기계고장, 화재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p>

4. 비상조치 장비(요원)현황

품목	수량	보관위치	비고
구명구	3	장비보관함 3개	각 보관함에 1개씩 보관
구명조끼	9	장비보관함 9개	각 장비보관함에 3개씩 보관
구명로트	3	장비보관함 3개	각 보관함에 1개씩 보관



안전요원	배치인원	총 _____명
	배치기준	규칙 (제39조의2 관련)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 필요시 건축평면 배치도를 첨부		
* 각 장비(요원) 위치를 표시		

5. 의무실(또는 구급약품 비치) 현황

가. 의무시설 현황

관리항목	현황	비고
위치	본관 1층	
연락처	043-000-0000	
면적	30 (m ²)	* 별도의 의무실 면적을 파악
제세동기(AED) 수량	1 개	구비여부
휴게실	1 실	
의사 상주 여부	상주	* 상주(상주, 비상주)여부를 기재
간호인력	2 명	
진료실 유무	있음	* 전용진료실 존재여부
휴식용 침상	1개	
구급약품구비 여부	약품 구비함	* 구비여부를 기재
앰블런스(구급차) 보유 여부	1 대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별도의 의무실 및 구급약품이 필수임 * 일반유원시설의 경우 구급약품이 필수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시설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		

나. 구급약품 현황

관리항목	세부항목	보유여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용 재료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등	보유
외용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보유
주의사항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응급처치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통보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 것 <p>※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08),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 : 보건복지부(재 : 한국보육진흥원) 2015 어린이집평가인증 안내</p>		
<p>*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부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p> <p>*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p>		

6. 비상훈련

가. 목 적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나. 시 기 : 매년 3월중

다. 대 상 : 근무자

라. 비상훈련 내용

1) 각종 안전사고(끼임, 추락, 익수, 화재 등)를 가정하여 상황별 대응 요령 훈련

2) 필요에 따라 소방서 등과 합동훈련 실시

마.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 훈련 종료 1주일 이내에 형식(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함.

바. 훈련 결과보고서 보존기한 : 2년

제5장 성과측정 및 경영자 검토

1. 성과측정

- 가. 목 적 : 성과측정의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년도 안전관리활동에 반영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 나. 시 기 : 매년 11월중
- 다. 내 용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상태 등 18개 항목
- 라. 방 법 : 안전관리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별지 제13호 서식)
- 마. 결과활용 : 경영자 검토에 반영

2. 경영자 검토

- 가. 목 적 : 안전관리 계획서의 실행상태를 경영자가 검토함으로써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차기년도에 반영
- 나. 시 기 : 매년 12월중
- 다. 내 용 : 안전관리 경영방침 준수여부
- 라. 방 법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내용에 대하여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검토

《별표 1.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

(KOSHA GUIDE H - 57 - 2015 : 산업안전보건공단)

1. 응급처치 초기

- 가. (전체적인 관찰) 재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안 안색, 출혈, 구토물등 전체적인 상태를 관찰한다.
- 나. (의식확인) 재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 다. (구조요청) 조사 도중 재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 구급대나 의료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주위에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 라. (심폐소생술 실시) 일반인의 경우 재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무호흡 또는 이상호흡이 감지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전문가는 맥박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재해자가 성인인 경우 흉부압박 30회 대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2분간 5주기 시행 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계속한다. 이 때 흉부 압박은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중앙의 흉골 위치에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시행한다.
- 마. 출혈이 심하면 직접 압박, 지혈점 지압, 지혈대법 등으로 지혈처치를 한다.
- 사. 다음과 같은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면 쇼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과 다리를 지면으로부터 15~30 cm 정도 높이고 보온조치를 한다.
 - 1) 갈증과 불안감
 - 2) 약하고 빠른 맥박
 - 3) 불규칙하고 약한 호흡
 - 4) 창백한 안색
 - 5) 차갑고 축축한 피부
 - 6) 동공의 확대와 빛에 대한 반사지연
 - 7) 구역질과 구토

8) 점진적인 혈압저하

2. 구조요청 및 연락

가. 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에 구조요청 시 유의사항

- 1) 재해자의 수를 알려준다.
- 2) 재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알려준다.
- 4) 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나. 구급차와 통화 시 유의사항

- 1) 재해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 2)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3)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다.
- 4) 눈에 띄는 건물이나 목표물을 지정하여 준다.
- 5) 구조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한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흔들어서 안내한다.

다. 가족에게 연락 시 유의사항

- 1) 상대가 재해자의 가족인지 확인한다.
- 2)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 3) 재해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 4) 재해자의 가족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재해자를 이송할 병원의 위치, 전화번호 및 재해자가 전하는 말 등을 알려준다.

3. 주위의 협력

가. 주위에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있으면 구조자가 각각의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어 협조를 받는다.

- 1) 구급차 및 가족에게 전화연락
- 2) 주변의 위험물 제거

- 3) 응급처치재료 구비
- 4) 보온을 위하여 모포 등 확보
- 5) 응급처치 보조
- 6) 주위사람 정리
- 7) 사업장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하고 필요시 예비차량 호출 등

4. 재해자의 안정과 적합한 자세의 유지

가.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자세를 유지하여 준다.

- 1)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 준다.
- 2) 의식이 없이 엎드려 있다면 경추와 척추를 잘 지지한 후 통나무 굴리듯이 돌려 눕혀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여준다.
- 3) 안색이 창백하면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려 주고, 안색이 붉으면 상체를 비스듬히 높여준다.
- 4) 의식이 없는 재해자가 구토를 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5) 일반적으로 출혈부위와 골절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준다.

나.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응급처치 시행중 자주 조용히 말을 건다.

다. 재해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라. 재해자의 처치와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균중을 통제한다.

5. 보온유지

가.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포나 옷을 덮어 준다.

나. 재해자의 옷이 젖어 있으면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보온을 위한 모포나 마른 옷, 수건 등이 없을 때에는 신문지 등 주변에 있는 것을 덮어 준다.

6. 수분 공급

- 가. 의식이 없는 재해자에게 아무 것도 먹이지 않아야 한다.
- 나. 재해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출혈이 심하거나, 내출혈이 의심 되거나, 병원 이송 후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음료수를 먹이지 않는다.
- 다. 의식이 있으면 상온의 음료수를 수저로 떠먹이는 정도로 소량씩 먹인다.
- 라. 의식이 있고 보온이 필요하면 따뜻한 음료수를 먹인다.
- 마. 땀을 많이 흘렸거나 설사 등에 의하여 탈수가 우려되는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이온음료수를 먹이거나 물에 소금과 설탕을 약간씩 타서 먹인다.

7. 재해자의 이송

- 가. 응급처치가 끝나면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송장비에 고정한다.
- 나. 이송장비나 재해자가 주변의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이송한다.
- 다. 의식이 없는 재해자를 차량으로 이송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반드시 1인 이상의 구조자가 동승한다.
- 라. 재해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재해자가 더 이상의 손상을 입거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응급처치 시행자는 재해자의 자세를 적절히 유지하고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다.
- 마.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잘 아는 최초의 응급처치 시행자가 동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유원시설 세부현황

1. 대표자	최 우 원				
2. 영업의 종류	물놀이형유원시설				
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번지				
4. 영업기간	2018년1월1일 부터 ~ 현재				
5. 면적(깊이)	1,000m ² (1,100mm)				
6. 유기사설(기구) 보유 현황 : 총 1 대					
번호	분류 (내용)	대표유기 시설(기구)	유기사설 (기구)의 명칭	제원사항	안전성 검사대상 여부
1	놀이형	바디슬라이드	바디슬라이드	최노이용간격:30초 길이 : 50m	대상
<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호</p> <p>*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제40조제1항 관련)</p> <p>* 모든 설비별로 현황 작성</p>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교육계획(실시)/월												비고	장소			
			교육계획(실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합.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6개월 이내																선임신고 후 3개월	협회
		최초교육			0														
	교육이수 후 2년 마다				0													2년 만기일 1개월 전	협회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신임사원의 배치일 당일 오전	
비상훈련	신규근무 자	배치 전 4시간 이상																매주 월요일 오전	자체
	근무자	주 1회 1시간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매주 월요일 오전	
	근무자	년 1회 이상								0								시나리오 훈련(권고)	

*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서 선임된 안전 관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하여 외부(유원시설협회)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계획을 참고하여 표시

* 신규근무자의 경우는 임시일 당일에 교육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안전교육(훈련)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과정	교육시간
	시작시간	시 분	근무자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신규종사자	4시간 이상
	종료시간	시 분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주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장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인원	명	교육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사	
교육내용						
교육명단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3호(준수사항) * 명단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첨부가능 * 허가신청 시 내용작성 불필요						

《별지 제4호 서식 기구별 점검 계획서》

기구별 점검 계획서(예시)

순번	시설(기구)명	설치 년도	점검 (자체) 일	안전성검사 (외부검사기관)		제작사의 요구에 의한 부품의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점검				
				반 기	1년	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바디슬라이드	2015	○		○			○		

* 허가신청시 각 기구별로 사업장에서 해당월을 확인하여 표기
 *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작성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6. 12. 30.>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시설(기구) 명 : 슬라이드

20 년 월

담당자: 안전관리자

번호	점검사항	일 일 점검 실시 시 결 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내부장애물 상태																																	
2	표면의 상태																																	
3	슬라이드 체결상태																																	
4	내부 물의양외 적 정여부																																	
5	글곡부의 높이차																																	
6	비상조작장치 상태																																	
7	안전벽의 상태																																	
8	미끄럼방지상태																																	
9	제작사의 요구에 의한 점검위치																																	
※ 점검사항 작성기준: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 참고 ※ 각 기구별로 점검사항을 작성관리 ※ 점검결과표시[정상(양호): ○, 요정비: △, 고장: ×] ※ 정비사항은 정미이력서 참고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정 비 이 력 서

기 구 명						
제작회사				제작년도		
정비일자 (시간)	정비사유			정비내용	정비결과	비고
	예방 정비	정기 정비	고장 정비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 형태			
훈련일시	20 년 월 일. 시간: ~		
훈련장소	훈련실시 부서	안전팀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훈련참가자	대상인원 : 명 참가인원 : 명
훈련내용 (간략하게 요약)			
훈련성과 및 강평	※ 훈련성과		
	※ 강평		
문 제 점 및 개선 대책	문제점		개선대책
첨 부	1. 교육훈련 참가자 명단(교육결과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 2. 훈련실시 사진(필요시)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9호 서식 일일안전점검표지판》

일 일 안 전 점 검 표 지 판

유기기구명	슬라이드	안전성검사일	00 년 0 월 0 일	
점검기준	관광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안전관리자	김 안 쉰	위험요인 발생신고	010-000-0000	
일일안전 점검결과	점검일자	정상	정비중	운행중지
	20 년 0 월 0 일			

- ※ 표 최소규격(예시) : 가로 50cm × 세로 40cm
- ※ 허가시에는 일일안전 점검결과란 작성 불필요
- ※ ‘별표5’ 유기시설·유기기구 허가 전 안전성검사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위험요소목록》

위험요소목록

2018 년 1월 1일

시설(기구)	위험요소의 종류 및 형태	현재안전대책	위험요소 개선 대책(필요시)
슬라이드	추락	안전난간설치	정기적인 점검
	충돌(미끄럼대)	돌출부점검	운영자 교육
	표면(미끄럼대)마찰	적정수량관리	펌프성능관리
<p>* 각 기구별로 다양한 위험요소를 추정하여 작성하여야 함</p> <p>* 모든 시설별로 2가지 이상의 위험요소목록 작성</p>			

《별지 제11호 서식 범규검토서》

범 규 검 토 서

(20 년도)

검토자 : 안전관리자

범규명	검토항목	검토결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관광 진흥법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물놀이행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기타 관광 진흥법의 변경사항				
관광 진흥법시행령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기타 관광 진흥법 시행령의 변경사항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기타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				
	제6조(허가 전 검사 기준)				
	기타 기준의 변경사항				
* 검토결과와 란에는 사업장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기재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 표시 함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평가서》

교육평가서

교육강사(평가자) : 인

번호	평가항목(이해정도)	평가결과		
		양호	보통	미흡
1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2	비상 시나리오에서 본인의 임무			
3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4	교육내용의 이해정도			
5	운용설비의 점검항목의 내용			
6	운용설비의 위험요소의 종류			
7	운용설비의 가동 및 비상정지의 절차			
8	----- 필요시 추가 작성			
* 교육내용을 기재하고 평가 실시				
* 허가신청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측정》

성 과 측 정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번호	측정항목	측정결과 (○ 표시)		비고
		양호	불량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상태			
2	안전경영방침의 게시상태			
3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의 실시상태			
4	위험요소의 확인과 개선조치상태			
5	정기적으로 법규검토의 실시상태			
6	안전관리자의 적정 배치상태			
7	교육의 정상적인 실시상태			
8	교육실시후 평가의 실시상태			
9	해당시설의 정기안전성검사의 실시상태			
10	일일점검 및 점검기록부의 작성상태			
11	안전점검표지판의 정상부착상태			
12	비상연락체계(연락번호)의 정확성상태			
13	중대사고발생시의 적절한 보고상태			
14	이상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상태			
15	수질검사장비의 비치상태			
16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의 적정배치 상태			
17	안전요원 배치			
18	전년도 경영자평가에서 계획한 사항의 실천여부			
*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작성 * 허가신청 시 측정결과 표기 불필요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자 검토》

경 영 자 검 토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준수 여부		준수여부를 표기 함
법규검토결과 변경사항발생한 경우 반영 여부		적정여부를 표기 함
목표의 적정 달성여부		적정여부를 표기 함
전년도 경영자 검토결과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표기 함
사업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 표기 함
경영자 검토결과 경영자의 의견		1년 동안의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 기재
* 안전관리계획수립의 실행결과를 총평가하는 개념이므로 서술 식으로 표현이 가능 함 * 허가신청 시 검토결과 작성 불필요		

《별지 제15호 서식 수질관리현황》

수 질 관 리 현 황

설비명 : 슬라이드 월 일 시 분 현재

구분	법정수질기준	측정결과
탁도	2.8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부터 8.6	
유리잔류염소	0.4mg/l에서 2.0mg/l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15mg/l 이하	
대장균군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미 2개 이하	
설비운영관리		
유기기구 정원	50 명	
1일 순환횟수	3 회	

* 허가신청 시 측정결과 작성 불필요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수질관리일지》

수 질 관 리 일 지

설비명 :

20 년 월

일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일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1					17			
2					18			
3					19			
4					20			
5					21			
6					22			
7					23			
8					24			
9					25			
10					26			
11					27			
12					28			
13					29			
14					30			
15					31			
16								

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9조의2 관련)

1. 탁도 : 2.8NTU 이하
2.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 15mg/l 이하
3. 대장균군 :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인 2개 이하

마. A형 기타유원시설업

<< 적용 안내 >>

- ▶ 본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A형)은 기타유원시설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예시임.
- ▶ 본 표준안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체 상황에 맞추어 표준안(B형)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음.

《A형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기타유원시설업)

[작성일자 : 20--년 0 월 0 일]

0 0 랜 드

CONTENTS

- 목 차 -

장	절	목 차 명	
제1장		일반사항	333
	1	목적	333
	2	적용근거	333
	3	적용범위	333
	4	책임과 권한	333
제2장		시설현황	335
	1	유원시설 일반현황	334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334
제3장		안전관리계획	335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335
	2	안전교육	338
	3	안전검사 · 점검	339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340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340
	2	사고보고	342
	3	사고(또는 이상)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343
	4	비상조치 장비현황	345
	5	구급약품현황	346

- 서 식 목 록 -

별지 제1호서식 유원시설현황 ----- 347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계획서 ----- 348
별지 제3호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 349
별지 제4호서식 기구별점검계획서 ----- 350
별지 제5호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 351
별지 제6호서식 정비이력서 ----- 352
별지 제7호서식 사고보고서 ----- 353
별지 제8호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 354

◆ 안전경영방침 ◆

00랜드는 유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경영이념을 선포하여 인간존중정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안전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유원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설정한다.

1.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에 관한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모든 조직원은 안전활동에 참가한다.
4. 지속될 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위와 같은 안전경영방침을 전 근무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포함되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20 . .

주식회사 00랜드

대표이사 최 유 원 서명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동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5조4항(신고)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3. 적용범위

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업무

나. [OO랜드]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근무인원 및 이용객

4.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내용
[대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 수립·실행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의 최종 책임 -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 수립·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 및 반영 -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효성 및 타당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실행 문서 작성 및 보관(보존기간 : 2년) ■ 유기사설 관련 법률 모니터링 및 개정내용 공지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실행 및 실천

제2장 시설현황

1. 일반현황

가. 유원시설 일반현황(예시)

상 호	00랜드
대 표 자	최 유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면 적	100m ²
허 가 일	2018년 1월 1일
관리책임자	홍 길동
기타근무자	2명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세부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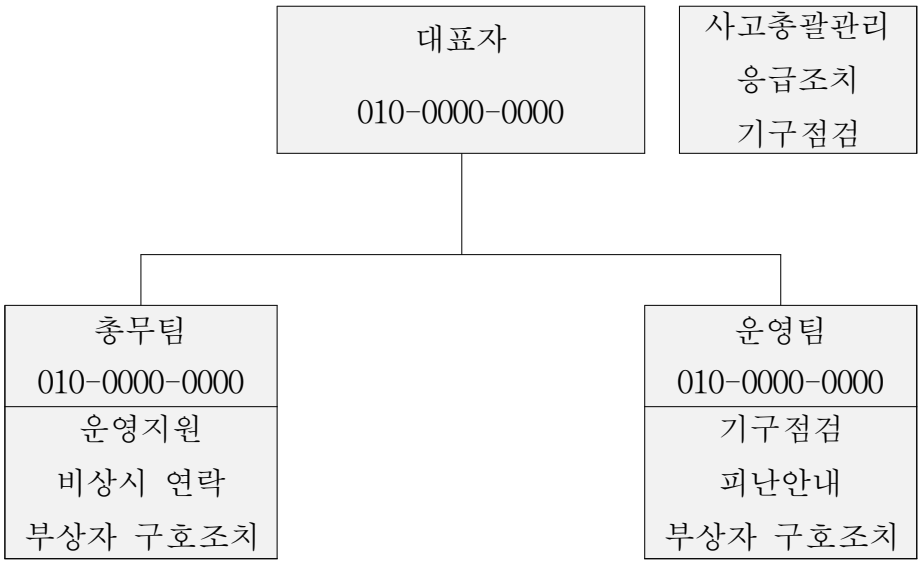
구 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계
비안전성검사대상	1				1
계	1				1

제3장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가.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도



나. 안전관리자 현황 :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사업자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현황(선택) : 총 _____명

성명	자격명칭	선임일자	기타

2) 정비요원 현황(선택) : 총 _____명

성명	자격명칭	입사일자	기타

3) 안전요원 배치현황(선택) : 총 _____명

시 설 명	배치인원		자격조건	기타 (기준면적)
	공휴일	평일		

* 안전요원 배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아닌 경우 선택사항임

다.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

1) 사업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1. 공통사항

- 가.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사설 또는 유기

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바.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사설은 제외한다.
- 사.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아.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제40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기타유원시설업

-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목 적 :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제반 법규준수

나. 대 상 : 전직원

다. 교육종류 및 주기

구 분	대 상	교육주기 및 시간	비 고
안전교육	사업자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별표11 제2호 나목2의 기구 운영자
	신규근무자	배치 전 2시간 이상	
	근무자	월1회 2시간 이상	
비상훈련	근무자	년1회 이상	권고사항
	* 비상훈련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마. 교육계획 수립 : 사업자는 과정 및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바. 강 사 : 사업자 및 외부강사(안전전문가)

사. 주요내용

-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요령
-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4) 사고 발생 시의 대책에 관한 사항
- 5) 안전경영방침의 내용
- 6)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교육결과보고 : 안전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 후 대표이사의 승인

*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3. 안전검사 · 점검

가. 목 적 :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법률준수

나. 기구별 점검계획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다. 검사·점검종류

구분	주기	검사·점검자	내 용
자체점검	매일	사업자	기구별 점검사항 및 기록부 (별지 제 5호 서식 참고)
제조사검사	연 1회	사업자	제조사의 부품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점검 및 조치(권고사항)

라. 안전검사 · 점검실시

- 1) 각 검사·점검자는 매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및 일일점검 표지판 기록
- 2) 각 기구별로 정비이력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구의 잔여 수명을 반영하여 점검 및 보수 실시

구분	점검자	점검시기	점검내용
일일점검	사업자(운행자)	개장 1시간 전	기구별 점검기준표
상시점검	사업자(운행자)	운행중 상시	기구별 점검기준표
특별점검	사업자(운행자)	연 1회	제조사의 요구항목

마. 점검결과 보존기한 : 검사종료일로부터 2년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가. 운행담당자는 사전에 시설(기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업무를 개시
 나. 비상상황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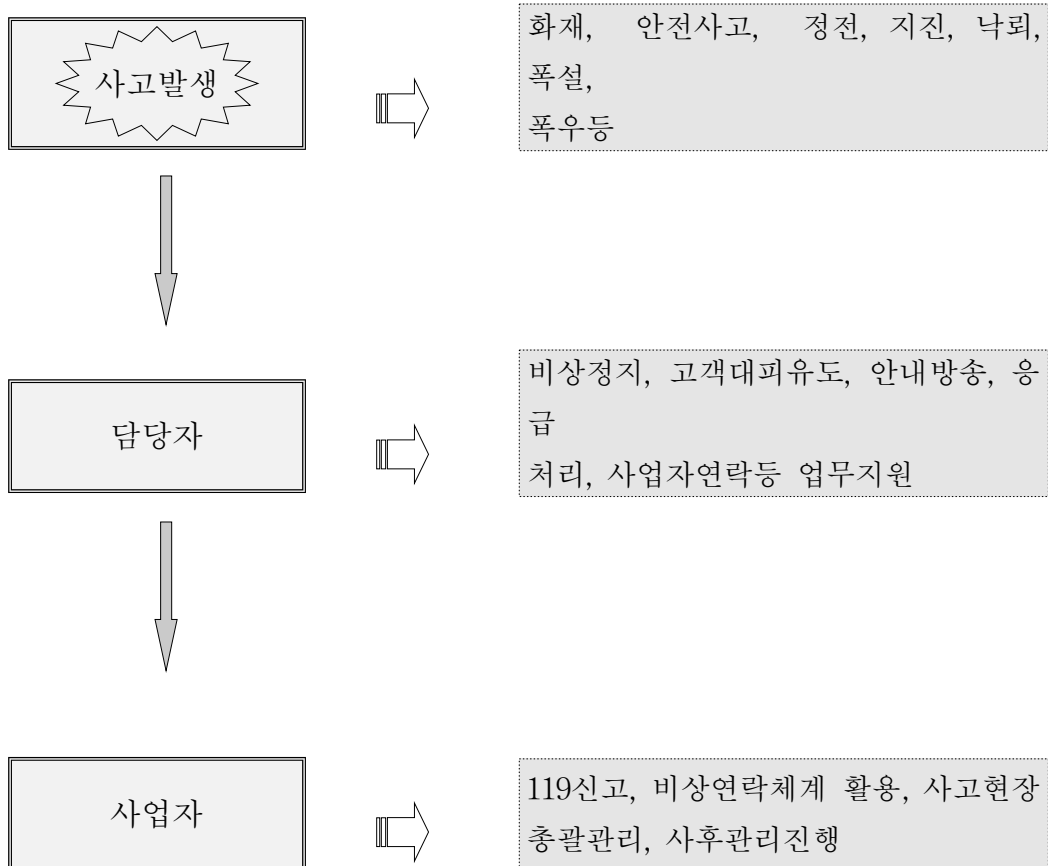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 운행 전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1) 운행담당자 : 사업자에게 통보, 안전조치

2) 사업자 : 현장점검 및 조치, 비상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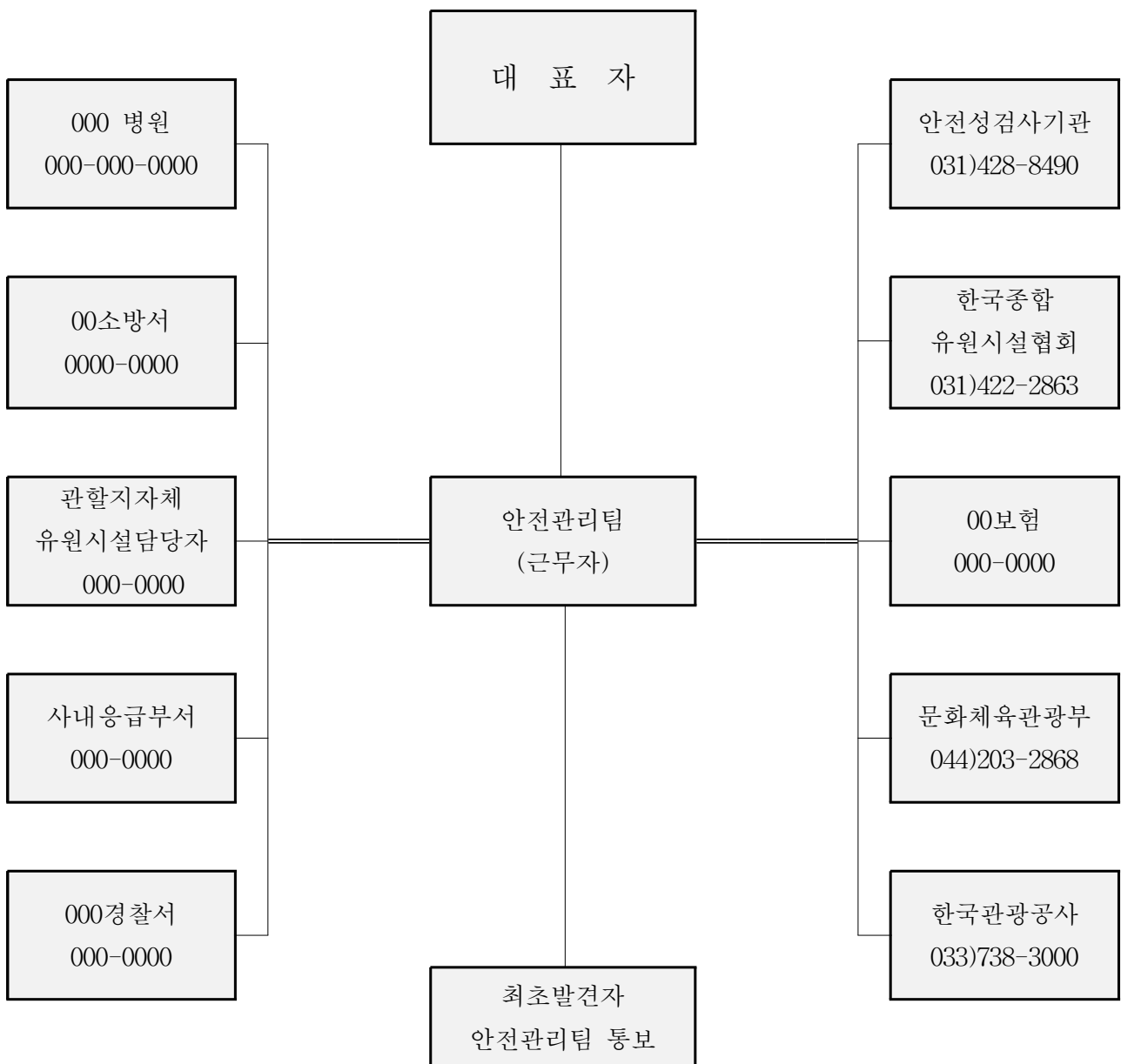
라. 운행 중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마. 비상연락체계

- 1) 최초 발견자는 안전관리팀(사업자)에 즉시 통보하고, 안전관리팀(사업자)은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비상연락체계



2. 사고보고

가.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 사고보고(시행규칙 제41조의2)를 한다.

나. 사고보고 대상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3)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4)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다. 보고내용

-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한다)
- 3) 조치 내용
-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라. 보고방법 :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사고보고 접수여부 확인 필)

마. 보고서 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3. 사고(또는 이상) 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가. 사고(또는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운영 담당자는 즉시 시설을 정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한다.

- ◆ 기구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진자운동 및 회전운동이 감쇄하여 자연적으로 정지하도록 유도
- ◆ 시설(기구)의 이상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 유기사설의 탑승객은 출구로 퇴장을 유도하고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
- ◆ 고객이 완전히 퇴장하였는지 확인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체 의료팀과 소방서에 신고한 후 병원 후송을 지원
- ◆ 출입구를 차단하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입구에 점검안내간판을 부착.
- ◆ 유기사설의 동력을 차단
- ◆ 유기사설의 정비부서에 연락
- ◆ 모든 시설(기구)의 수리가 완료되고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가동 여부를 사업자,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에서 결정

나. 이상발생으로 기구의 정지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서에 통보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고 상황이 종료 된 경우 사고원인조사는 사업자와 담당자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예시 : 미니기차)

구 분	대응요령
비상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위급한 경우)는 비상정지(EMERGENCY STOP)버튼 사용 ● 미니기차의 정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 유무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을 개방하여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차시킨다. 이 때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된다. • 환자 발생시 머리, 목, 척추 등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동해서는 안되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한다.
기계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 • 부상자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 전원이 복구되는 경우 시설(기구)의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재가동 여부를 사업자와 안전관계자의 협의 하에 결정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시는 신속하게 설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비상사태체계에 따라서 사업자 및 소방서에 신고 • 소규모의 화재의 경우 주변 소화기로 진압 • 상황이 종료되면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진의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또는 지진을 감지하는 경우에 시설(기구)의 작동을 정지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낙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회사고는 일반적으로 높고 뽀족한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평소에 피뢰침 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 • 낙회로 인하여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전사고시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회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화재 시 행동요령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회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즉시 신고

폭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설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설이 내리기 전은 사업자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여부를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 폭설에 의한 피해가 예상 되면 시설(기구)을 정지한 후 이상 발생시 행동절차에 따름 • 폭설이 종료되면 시설(기구)의 재 가동여부는 사업자와 안전관계자의 협의로 결정
폭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장마철)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우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우가 내리기 전에는 사업자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여부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 폭우에 의한 피해가 예상 이 되면 시설(기구)을 정지
안내방송	<p>“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000(기구명)의 작동이 000(기계고장, 화재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p>

4. 비상조치 장비현황

품 목	수 량	보관위 치	비 고
사다리	1	자재창고	
로프	1	자재창고	
조명등	1	사무실	
기타공구세트	1	자재창고	

※ 사업장 특성에 따라 품목 조정가능

5. 구급약품 비치현황

가. 구급약품 현황

관리항목	세부항목	보유여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용 재료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등	보유
외용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보유
주의사항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p>《응급처치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통보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 것 <p>※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08),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 : 보건복지부(재 : 한국보육진흥원) 2015 어린이집평가인증 안내</p>		
<p>*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부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p> <p>*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p>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유원시설 세부현황

1. 대표자	최 유 원				
2. 영업의 종류	기타유원시설				
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번지				
4. 영업기간	2018년1월1일 부터 ~ 현재				
5. 면적	100m ²				
6. 유기사설(기구) 보유 현황 : 총 1 대					
번호	분류 (내용)	대표유기 시설(기구)	유기사설 (기구)의 명칭	제원사항	안전성검사 대상여부
1	주행형	라이더	미니기차	레일안쪽 길이 : 25m 탑승정원 : 10명	해당없음
<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호</p> <p>*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p> <p>* 모든 설비별로 현황 작성</p>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20 년 월 일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교육계획(실시)/월												비고	장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 (유원시설업)	사업자	2년마다 1회이상 4시간					○									2년 만기일 1개월 전	협회
	신규근무자	배치 전 2시간 이상														배치일 당일 오전	자체
	근무자	월 1회 2시간 이상	○	○	○	○	○	○	○	○	○	○	○	○	○	매월 첫째주 월요일	자체
	근무자	년 1회 이상					○									시나리오 훈련(권고)	자체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테오타기, 회전행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물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분봉뿔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위더에어 바운스 등														
* 교육계획의 표기는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한 월에 표기																	

*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서 종사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하여 외부(유원시설협회)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 기타 유원시설업의 사업자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설비(기구)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함(시행규칙 별표 13)

유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테오타기, 회전행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물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분봉뿔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위더에어 바운스 등

* 교육계획의 표기는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한 월에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안전교육(훈련)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과정	교육시간
	시작시간	시 분	근무자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신규종사자	2시간 이상
	종료시간	시 분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월 1회 이상 2시간 이상
교육장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인원	명	교육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사	
교육내용						
교육명단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3호(준수사항)</p> <p>○ 명단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첨부가능</p> <p>○ 신고 시 작성 불필요</p>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시설(기구)명 : 미니기차

20 년 월

담당자 : 사업자

번호	점검사항	일일점검실시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레일구조물 상태																																
2	전동장치 상태																																
3	제동장치상태																																
4	승용구조물 상태																																
5	전기제어반 상태																																
6	비상조작장치 상태																																
7	안전울타리 및 안전띠 상태																																
8	의자의 고정상태																																
9	제작사의 요구에 의한 점검위치																																
※ 점검사항 작성기준: 관광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 참고																																	
※ 각 기구별로 점검사항을 작성관리																																	
※ 점검결과표시(정상: ○, 요정비: △, 고장: ×)																																	
※ 정비사항은 정비가력서 참고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정 비 이 력 서

기 구 명						
제작회사				제작년도		
정비일자 (시간)	정비사유			정비내용	정비결과	비고
	예방 정비	정기 정비	고장 정비			
* 허가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 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 형태			
훈련일시	20 년 월 일.		시간: ~
훈련장소		훈련 실시 부서	안전팀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훈련참가자	대상인원 : 명 참가인원 : 명
훈련내용 (간략하게 요약)			
훈련성과 및 강평	※ 훈련성과		
문 제 점 및 개선 대책	문제점		개선대책
첨 부	1. 교육훈련 참가자 명단(교육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 2. 훈련실시 사진(필요시)		

※ 신고 시 작성 불필요

바. B형 기타유원시설업

<< 적용 안내 >>

- ▶ 본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A형)은 기타유원시설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예시임.
- ▶ 본 표준안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체 상황에 맞추어 표준안(B형)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음.

《B형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기타유원시설업)

[작성일자 : 20--년 0 월 0 일]

0 0 랜 드

CONTENTS

- 목 차 -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	361
1	목적 -----	361
2	적용근거 -----	361
3	적용범위 -----	361
4	책임과 권한 -----	361
제2장	시설현황 및 예방계획 -----	362
1	유원시설 일반현황 -----	362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362
3	사고예방 및 홍보계획 -----	362
4	위험요소확인 및 대응 -----	363
5	법규검토 -----	363
제3장	안전관리계획 -----	364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	364
2	안전교육 -----	367
3	안전검사 · 점검 -----	368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	369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369
2	사고보고 -----	371
3	사고(또는 이상)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	372
4	비상조치 장비현황 -----	374
5	구급약품 비치현황 -----	375
6	비상훈련 -----	376
제5장	성과측정 및 경영자 검토 -----	377
1	성과측정 -----	377
2	경영자 검토 -----	377
별표 1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	378

- 서 식 목 록 -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	282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	283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	284
별지 제4호 서식	기구별점검계획서	-----	285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	286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	287
별지 제7호 서식	사고보고서	-----	288
별지 제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	289
별지 제9호 서식	안전점검표지판	-----	290
별지 제10호 서식	위험요소목록	-----	291
별지 제11호 서식	법규검토서	-----	292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평가서	-----	293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측정	-----	294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자검토	-----	295

◆ 안전경영방침 ◆

00랜드는 유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경영이념을 선포하여 인간 존중정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안전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유원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설정한다.

1.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에 관한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모든 조직원은 안전활동에 참가한다.
4. 지속된 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위와 같은 안전경영방침을 전 근무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20 . .

주식회사 00랜드

대표이사 최 유 원 서명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동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근거

- 가. 관광진흥법 제5조4항(신고)
-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3. 적용범위

- 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업무
- 나. [00랜드]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근무인원 및 이용객

4.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내용
[대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 수립·실행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의 최종 책임 -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 수립·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 및 반영 -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효성 및 타당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실행 문서 작성 및 보관(보존기간 : 2년) ■ 유기시설 관련 법률 모니터링 및 개정내용 공지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획의 실행 및 실천

제2장 시설현황 및 예방계획

1. 일반현황

가. 유원시설 일반현황(예시)

상 호	00랜드
대 표 자	최 유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면 적	100m ²
허 가 일	2018년 1월 1일
관리책임자	홍 길동
안전관리자	김 안전
기타근무자	2명

2. 유원시설(기구)의 종류 및 수량 * 세부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구 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계
안전성검사대상	1				1
정기확인검사대상					
계	1				1

3. 사고예방 및 홍보계획

가. 사고예방 활동(선택사항)

- 1) 매 분기 대표이사 주제 조회 실시 및 홍보영상 시청
- 2) 전 직원 대상 사고예방을 위한 선서 실시
- 3) 성수기 사고예방 주간 운영(여름철)

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법

구 분	수 량	활용방법
포스터	2부	사무실 및 게시판 부착
현수막	1개	정문 1개소, 영업장 1개소 부착
교육자료	1식	직원 안전교육 시 활용

- 1) 포스터 제작 (2부), 현수막 제작, 사고예방 사례 및 교육자료 제작

- 2)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선택적 시행
- 다. TBM 활동(위험예지활동)
 - 1) 목 적 : 무재해
 - 2) 시 기 : 연중
 - 3) 주요내용 : 근무시작 전 각 시설별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활동

4.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

- 가. 위험요소 파악
 - 1) 일상점검(안전관리자 및 운행자) : 매일 개장 전 유기사설 점검
 - 2) 상시점검(운행자) : 운행 중 수시로 위험요인 모니터링
 - 3) 정기점검(안전관리자) :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나. 시설(기구)별 위험요소

- 1) 각 시설별로 2가지 이상의 위험요소를 파악
- 2) 각 시설별 위험요소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다. 위험요소 발견시 대응방법

- 1)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장조치
- 2) 인원 통제관련 사항 : 즉시 현장조치
- 3) 전기 · 기계적 결함 : 운행중단 및 즉시조치

5. 법규검토

가. 법규검토가 필요한 안전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 관광 진흥법 , 관광 진흥법 시행령,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 2) 유기사설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

나. 법규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내용을 모든 근무자에게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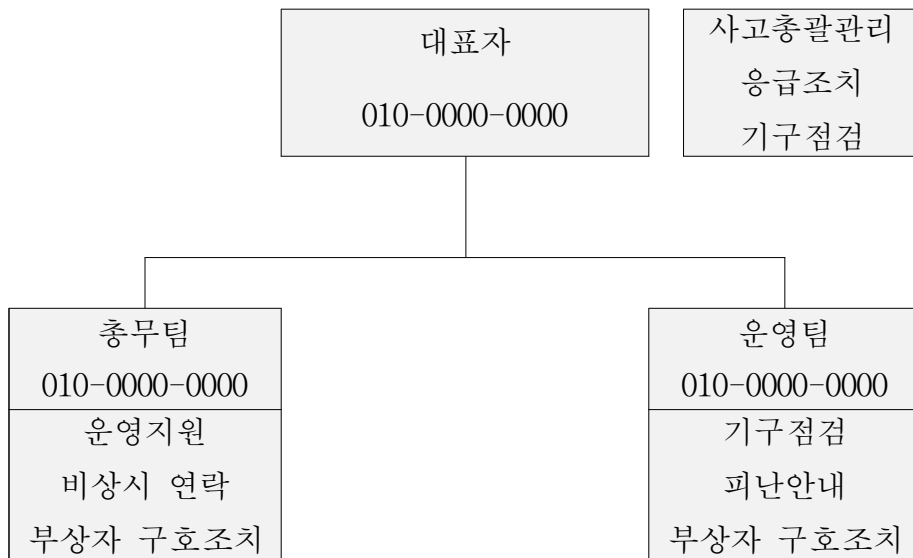
다. 사업자는 매 반기 마다 법령의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유지한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가.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도



나. 안전관리자 현황 :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사업자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현황(선택) : 총_____명

성명	자격명칭	선임일자	기타

2) 정비요원 현황(선택) : 총 _____명

성명	자격명칭	입사일자	기타

3) 안전요원 배치현황 : 총 _____명

시 설 명	배치인원		자격조건	기타 (기준면적)
	공휴일	평일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이 아닌 경우 안전요원 배치는 선택임

다.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

1) 사업자의 임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1. 공통사항

- 가.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바.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사설은 제외한다.
- 사.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아.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제40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기타유원시설업

-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목 적 :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제반 법규준수

나. 대 상 : 전직원

다. 교육종류 및 주기

구분	교육대상	교육주기 및 시간	비고
안전교육	사업자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별표11 제2호나목2의 기구 운영자
	신규근무자	배치 전 2시간 이상	
	근무자	월 1회 2시간 이상	월1회: 필수 2시간 이상
비상훈련	근무자	년 1회 이상	권고사항
	(별지 제8호 서식)		

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마. 교육계획 수립 : 사업자는 과정 및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
(훈련)계획서를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바. 강 사 : 사업자 및 외부강사(안전전문가)

사. 주요내용

-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요령
-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교육결과보고 : 안전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 후 대표이사의 승인
*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자. 교육평가 : 교육 훈련 후에는 교육의 성과를 평가 함
*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3. 안전검사·점검

가. 목 적 : 유기기구의 안전검사·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법률준수

나. 기구별 점검계획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다. 검사·점검종류

구분	주기	검사·점검자	내용
자체점검	매일	사업자	기구별 점검사항 및 기록부 (별지 제 5호 서식 참고)
제조사검사	연 1회	사업자	제조사에 부품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점검 및 조치(권고사항)

라. 안전검사·점검실시

- 1) 각 검사·점검자는 매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및 일일점검 표지판 기록
- 2) 각 기구별로 정비이력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구의 잔여 수명을 반영하여 점검 및 보수 실시

마. 안전점검표지판 부착 *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구분	점검자	점검시기	점검내용
일일점검	사업자(운행자)	개장 1시간전	기구별 점검기준표
상시점검	사업자(운행자)	운행중 상시	기구별 점검기준표
주간점검	사업자(운행자)	매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월간점검	사업자(운행자)	매월 첫주 월요일	기구별 점검기준표
특별점검	사업자(운행자)	연 1회	제조사에 요구항목

바. 점검결과 보존기한 : 검사종료일로부터 2년

제4장 비상(또는 이상)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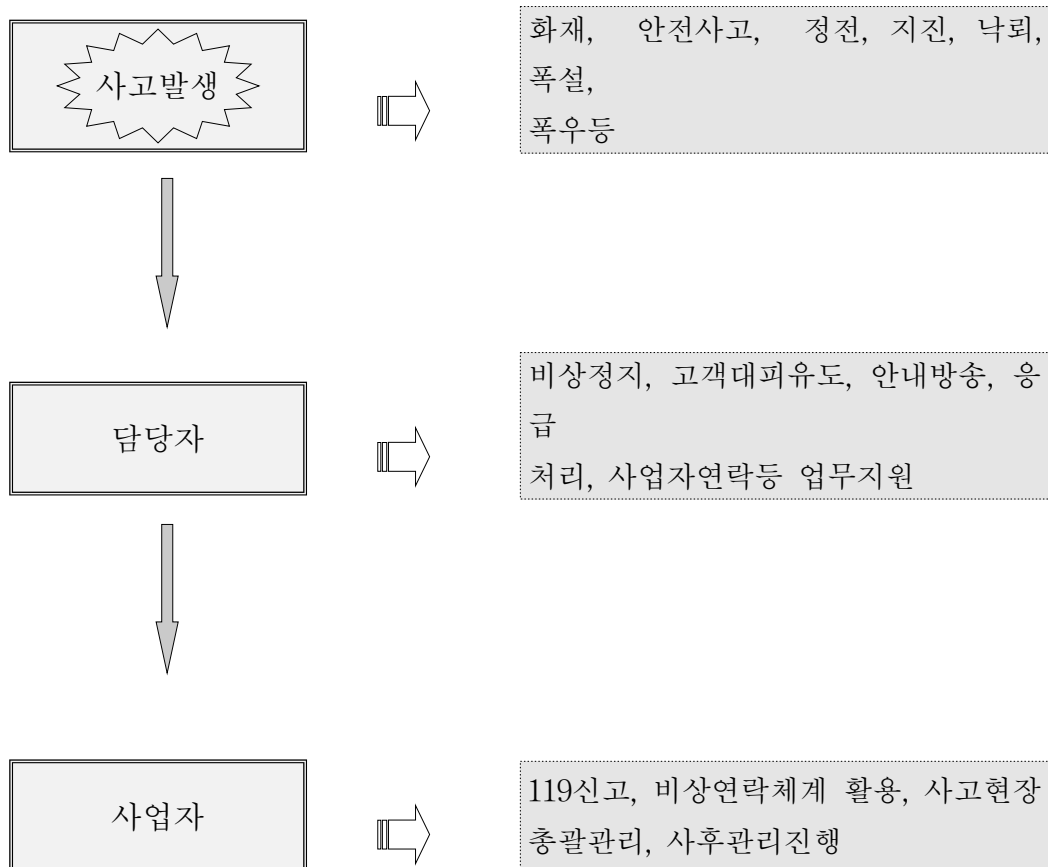
1. 사고(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가. 운행담당자는 사전에 시설(기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업무를 개시
 나. 비상상황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 운행 전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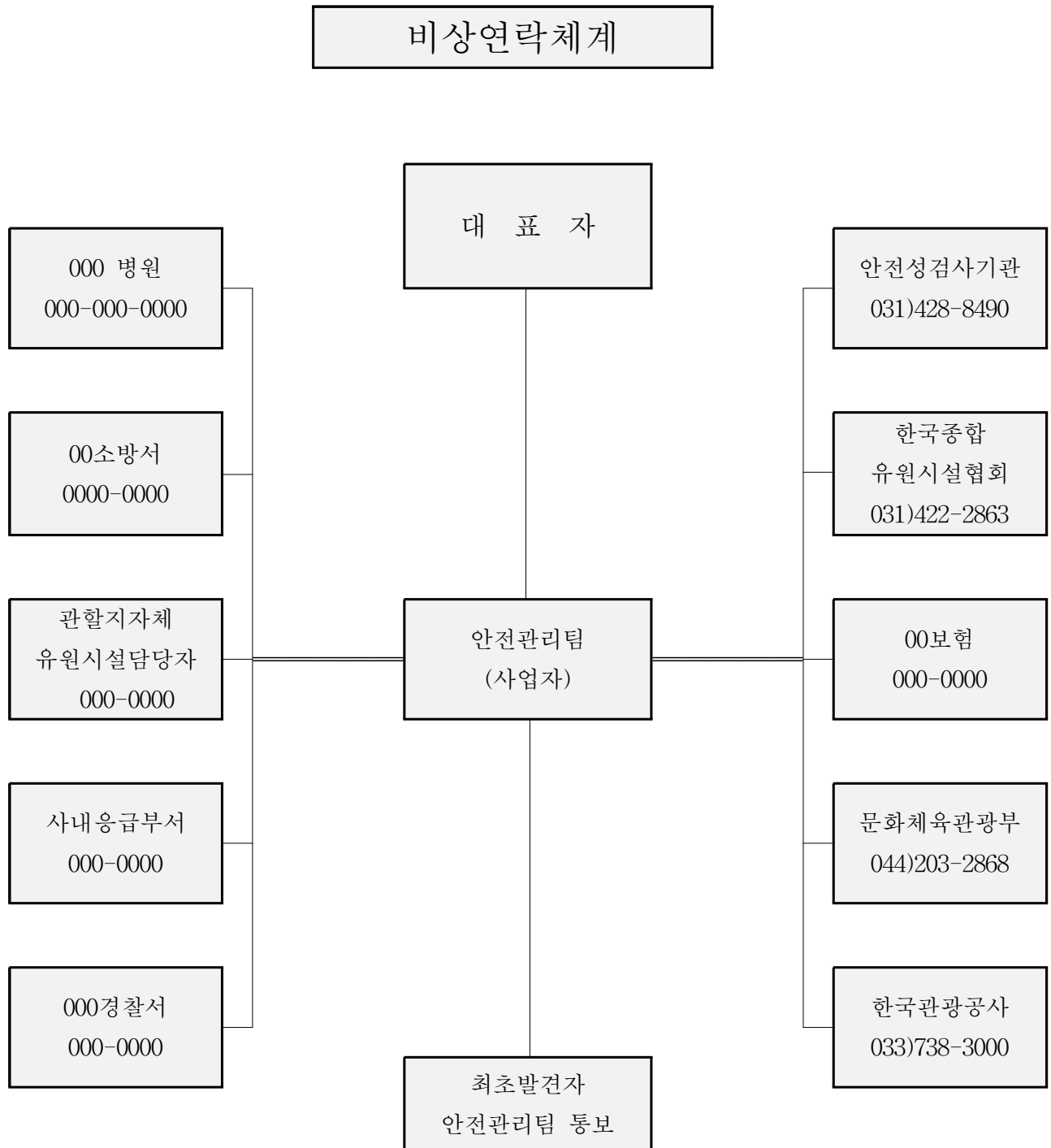
- 1) 운행담당자 : 사업자에게 통보, 안전조치
- 2) 사업자 : 현장점검 및 조치, 비상연락

라. 운행 중 비상(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마. 비상연락체계

- 1) 최초 발견자는 안전관리팀(사업자)에 즉시 통보하고, 안전관리팀(사업자)은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2. 사고보고

가.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 사고보고(시행규칙 제41조의2)를 한다.

나. 사고보고 대상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3)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4) 사고 발생일 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이상 발생한 경우
-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다. 보고내용

-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한다)
- 3) 조치 내용
-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라. 보고방법 :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사고보고 접수여부 확인 필)

마. 보고서 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3. 사고(또는 이상) 상황별 담당자 대응요령

가. 사고(또는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운영 담당자는 즉시 시설을 정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한다.

- ◆ 기구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진자운동 및 회전운동이 감쇄하여 자연적으로 정지하도록 유도
- ◆ 시설(기구)의 이상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 유기시설의 탑승객은 출구로 퇴장을 유도하고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
- ◆ 고객이 완전히 퇴장하였는지 확인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체 의료팀과 소방서에 신고한 후 병원 후송을 지원
- ◆ 출입구를 차단하여 출입을 금지시키고, 입구에 점검안내간판을 부착.
- ◆ 유기시설의 동력을 차단
- ◆ 유기시설의 정비부서에 연락
- ◆ 모든 시설(기구)의 수리가 완료되고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가동 여부를 사업자, 안전관리팀 및 정비부서 팀의 협의에서 결정

나. 이상발생으로 기구의 정지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서에 통보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고 상황이 종료 된 경우 사고원인조사는 사업자와 담당자 또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예시 : 미니기차)

구 분	대응요령
비상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위급한 경우)는 비상정지(EMERGENCY STOP)버튼 사용 • 미니기차의 정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 유무를 확인한다. • 안전문을 개방하여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차시킨다. 이 때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된다. • 환자 발생시 머리, 목, 척추 등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동해서는 안되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한다.

기계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 • 부상자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원을 차단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 전원이 복구되는 경우 시설(기구)의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재 가동 여부를 사업자와 안전관계자의 협의 하에 결정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시는 신속하게 설비의 전원을 차단 •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비상사태체계에 따라서 사업자 및 소방서에 신고 • 소규모의 화재의 경우 주변 소화기로 진압 • 상황이 종료되면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진의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또는 지진을 감지하는 경우에 시설(기구)의 작동을 정지 • 시설(기구)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
낙 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사고는 일반적으로 높고 뾰족한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평소에 피뢰침 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 •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전사고시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화재 시 행동요령의 절차에 따라 행동 • 낙뢰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즉시 신고
폭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설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설이 내리기 전은 사업자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여부를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 폭설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설(기구)을 정지한 후 이상 발생시 행동절차에 따름 • 폭설이 종료되면 시설(기구)의 재 가동여부는 사업자와 안전관계자의 협의로 결정

폭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장마철)에는 관내 기상청에서 폭우에 대한 정보를 시설(기구)의 가동 전에 파악 • 폭우가 내리기 전에는 사업자의 판단으로 시설(기구)의 가동여부 판단. • 시설(기구)의 가동 중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 폭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설(기구)을 정지
안내방송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000(기구명)의 작동이 000(기계고장, 화재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4. 비상조치 장비현황

품 목	수 량	보 관위 치	비 고
사다리	1	자재창고	
로프	1	자재창고	
조명등	1	사무실	
기타공구세트	1	자재창고	

※ 사업장 특성에 따라 품목 조정가능

5. 구급약품 비치현황

가. 구급약품 현황

관리항목	세부항목	보유여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용 재료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등	보유
외용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보유
주의사항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p>《응급처치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통보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 것 <p>※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08),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 : 보건복지부(재 : 한국보육진흥원) 2015 어린이집평가인증 안내</p>		
<p>*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부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p> <p>*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시설의 기준</p>		

6. 비상훈련

- 가. 목 적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나. 훈련시기 : 3월
- 다. 대 상 : 근무자
- 라. 비상훈련 내용
- 1) 각종 안전사고(끼임, 추락, 넘어짐, 화재 등)를 가정하여 상황별 대응요령 훈련
 - 2) 필요에 따라 소방서 등과 합동훈련 실시
- 마.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 훈련 종료 1주일 이내에 형식(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 바. 훈련결과 보고서 보존기한 : 2년

제5장 성과측정 및 경영자 검토

1. 성과측정

- 가. 목 적 : 성과측정의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년도 안전관리활동에 반영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 나. 측정시기 : 매년 11월
- 다. 측정내용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상태 등 15개 항목
- 라. 측정방법 : 안전관리팀(사업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 *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 마. 결과활용 : 경영자 검토에 반영

2. 경영자 검토

- 가. 목 적 : 안전관리 계획서의 실행상태를 경영자가 검토함으로써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차기년도에 반영
- 나. 검토시기 : 매년 12월
- 다. 검토내용 : 안전관리 경영방침 준수여부
- 라. 검토방법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내용에 대하여 검토
 - * 별지 제14호 서식 참고

《별표 1.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

(KOSHA GUIDE H - 57 - 2015: 산업안전보건공단)

1. 응급처치 초기

- 가. (전체적인 관찰) 재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안 안색, 출혈, 구토물 등 전체적인 상태를 관찰한다.
- 나. (의식확인) 재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 다. (구조요청) 조사 도중 재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 구급대나 의료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주위에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 라. (심폐소생술 실시) 일반인의 경우 재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무호흡 또는 이상호흡이 감지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전문가는 맥박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재해자가 성인인 경우 흉부압박 30회 대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2분간 5주기 시행 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계속한다. 이 때 흉부 압박은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중앙의 흉골 위치에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시행한다.
- 마. 출혈이 심하면 직접 압박, 지혈점 지압, 지혈대법 등으로 지혈처치를 한다.
- 바. 다음과 같은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면 쇼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과 다리를 지면으로부터 15~30 cm 정도 높이고 보온조치를 한다.
 - 1) 갈증과 불안감
 - 2) 약하고 빠른 맥박
 - 3) 불규칙하고 약한 호흡
 - 4) 창백한 안색
 - 5) 차갑고 축축한 피부
 - 6) 동공의 확대와 빛에 대한 반사지연

- 7) 구역질과 구토
- 8) 점진적인 혈압저하

2. 구조요청 및 연락

가. 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에 구조요청 시 유의사항

- 1) 재해자의 수를 알려준다.
- 2) 재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알려준다.
- 4) 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나. 구급차와 통화 시 유의사항

- 1) 재해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 2)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3)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다.
- 4) 눈에 띄는 건물이나 목표물을 지정하여 준다.
- 5) 구조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한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흔들며 안내한다.

다. 가족에게 연락 시 유의사항

- 1) 상대가 재해자의 가족인지 확인한다.
- 2)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 3) 재해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 4) 재해자의 가족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재해자를 이송할 병원의 위치, 전화번호 및 재해자가 전하는 말 등을 알려준다.

3. 주위의 협력

가. 주위에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있으면 구조자가 각각의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어 협조를 받는다.

- 1) 구급차 및 가족에게 전화연락
- 2) 주변의 위험물 제거
- 3) 응급처치재료 구비

- 4) 보온을 위하여 모포 등 확보
- 5) 응급처치 보조
- 6) 주위사람 정리
- 7) 사업장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하고 필요시 예비차량 호출 등

4. 재해자의 안정과 적합한 자세의 유지

가.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자세를 유지하여 준다.

- 1)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 준다.
- 2) 의식이 없이 엎드려 있다면 경추와 척추를 잘 지지한 후 통나무 굴리듯이 돌려 눕혀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여준다.
- 3) 안색이 창백하면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려 주고, 안색이 붉으면 상체를 비스듬히 높여준다.
- 4) 의식이 없는 재해자가 구토를 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5) 일반적으로 출혈부위와 골절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준다.

나.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응급처치 시행중 자주 조용히 말을 건다.

다. 재해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라. 재해자의 처치와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군중을 통제한다.

5. 보온유지

가.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포나 옷을 덮어 준다.

나. 재해자의 옷이 젖어 있으면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보온 조치를 취한다.

다. 보온을 위한 모포나 마른 옷, 수건 등이 없을 때에는 신문지 등 주변에 있는 것을 덮어 준다.

6. 수분 공급

가. 의식이 없는 재해자에게 아무 것도 먹이지 않아야 한다.

나. 재해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출혈이 심하거나, 내출혈이 의심 되

거나, 병원 이송 후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음료수를 먹이지 않는다.

다. 의식이 있으면 상온의 음료수를 수저로 떠먹이는 정도로 소량씩 먹인다.

라. 의식이 있고 보온이 필요하면 따뜻한 음료수를 먹인다.

마. 땀을 많이 흘렸거나 설사 등에 의하여 탈수가 우려되는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이온음료수를 먹이거나 물에 소금과 설탕을 약간씩 타서 먹인다.

7. 재해자의 이송

가. 응급처치가 끝나면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송장비에 고정한다.

나. 이송장비나 재해자가 주변의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이송한다.

다. 의식이 없는 재해자를 차량으로 이송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반드시 1인 이상의 구조자가 동승한다.

라. 재해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재해자가 더 이상의 손상을 입거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응급처치 시행자는 재해자의 자세를 적절히 유지하고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다.

마.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잘 아는 최초의 응급처치 시행자가 동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원시설현황》

유원시설 세부현황

1. 대표자	최 유 원				
2. 영업의 종류	일반유원시설				
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번지				
4. 영업기간	2018년1월1일 부터 ~ 현재				
5. 면적	100m ²				
6. 유기시설(기구) 보유 현황 : 총 1 대					
번호	분류 (내용)	대표유기 시설(기구)	유기시설 (기구)의 명칭	제원사항	안전성검 사대상여 부
1	주행형	라이더	미니기차	레일안쪽 길이 : 25m 탑승정원 : 10명	해당없음
<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호</p> <p>*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40조제1항 관련)</p>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20 년 월 일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교육계획(실시)/월												비고	장소		
			계획 실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 (유원시설업)	사업자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계획 실적						○								2년 만기일 1개월 전	협회
	신규근무자	배치 전 2시간 이상	계획 실적														배치일 당일 오전	자체
	근무자	월 1회 2시간 이상	계획 실적	○	○	○	○	○	○	○	○	○	○	○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자체
	근무자	년 1회 이상	계획 실적						○								시나리오 훈련	자체

- *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서 종사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하여 외부(유원시설협회)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 * 기타 유원시설업의 사업자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설비(기구)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함(시행규칙 별표 13)

유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테오타기, 회전형라이다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풍분뽀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위티에어 바운스 등

* 교육계획의 표기는 실제 사업장에서 실행가능 한 월에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훈련)보고서》

안전교육(훈련)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과정	교육시간
	시작시간	시 분	근무자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신규종사자	4시간 이상
	종료시간	시 분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월 1회 이상 2시간 이상
교육장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인원	명	교육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사	
교육내용						
교육명단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순번	교육이수자	확인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3호(준수사항) * 명단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첨부가능 * 신고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5호 서식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일일안전점검사항 및 기록부

시설(기구)명 : 미니기차

20 년 월

담당자: 안전관리자

번호	점검사항	일 일 점검 실시 시 결 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레일구조물 상태																																
2	전동장치 상태																																
3	제동장치상태																																
4	승용구조물 상태																																
5	전기제어반 상태																																
6	비상조작장치 상태																																
7	안전울타리 및 안전 띠 상태																																
8	의자의 고정상태																																
9	제작사의 요구에 의 한 점검위치																																
※ 점검사항 작성기준: 관광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 참고																																	
※ 각 기구별로 점검사항을 작성관리																																	
※ 점검결과표시(정상: ○, 요정비: △, 고장: ×)																																	
※ 정비사항은 정비가력서 참고																																	

《별지 제6호 서식 정비이력서》

정 비 이 력 서

기 구 명						
제 작 회 사				제 작 년 도		
정 비 일 자 (시 간)	정 비 사 유			정 비 내 용	정 비 결 과	비 고
	예 방 정 비	정 기 정 비	고 장 정 비			
* 신고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7호 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20 년 월 일

사업소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사고현황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시설(기구)명칭		
사고원인			
조치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사고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대상 여부			
<p>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담당자</p> <p style="margin-right: 200px;">인</p>			

* 신고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 8호 서식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비상사태 훈련 결과 보고서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 형태						
훈련일시	20 년 월 일.		시간:		~	
훈련장소			훈련실시 부서	안전팀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훈련참가자	대상인원 :	명	
				참가인원 :	명	
훈련내용 (간략하게 요약)						
훈련성과 및 강평	※ 훈련성과					
	※ 강평					
문 제 점 및 개선 대책	문제점			개선대책		
첨 부	1. 교육훈련 참가자 명단(교육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 2. 훈련실시 사진(필요시)					

* 신고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9호 서식 안전점검표지판》

일 일 안전 점검 표 지 판

유기기구명	미 니 기 차	안전성검사일	00 년 0 월 0 일	
점검기준	관광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안전관리자 (사업자)	김 안 철	위험요인 발생신고	010-000-0000	
일일안전 점검결과	점검일자	정상	정비중	운행중지
	20 년 0 월 0 일			

- ※ 1) 표 최소규격(예시) : 가로 50cm × 세로 40cm
- 2) 신고 시 일일안전 점검결과 내용 작성 불필요
- ※ “별표5” 유기시설·유기기구 허가 전 안전성검사 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범규검토서》

범 규 검 토 서

(20 년도)

검토자: 안전관리자(사업자)

범규명	검토항목	검토결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관광 진흥법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기타 관광 진흥법의 변경사항				
관광 진흥법시행령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기타 관광 진흥법 시행령의 변경사항				
관광 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기타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				
	제6조(허가 전 검사 기준)				
	기타 기준의 변경사항				
* 검토결과와 란에는 사업장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기재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 표시 함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평가서》

교육평가서

교육강사(평가자):

인

번호	평가항목(이해정도)	평가결과		
		양호	보통	미흡
1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2	비상 시나리오에서 본인의 임무			
3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4	교육내용의 이해정도			
5	운용설비의 점검항목의 내용			
6	운용설비의 위험요소의 종류			
7	운용설비의 가동 및 비상정지의 절차			
8	----- 필요시 추가 작성			
* 교육내용을 기재하고 평가 실시				
* 신고 시 작성 불필요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추정》

성 과 추 정

20 년 월 일

번호	추정항목	추정결과 (○ 표시)		비고
		양호	불량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상태			
2	안전경영방침의 게시상태			
3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의 실시상태			
4	위험요소의 확인과 개선조치상태			
5	정기적으로 법규검토의 실행상태			
6	안전관리자의 적정 배치상태			
7	교육의 정상적인 실시상태			
8	교육실시 후 평가			
9	해당시설의 정기안전성검사의 실시상태			
10	일일점검 및 점검기록부의 작성상태			
11	안전점검표지판의 정상부착상태			
12	비상연락체계(연락번호)의 정확성상태			
13	중대사고발생시의 적절한 보고상태			
14	이상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상태			
15	전년도 경영자평가에서 계획한 사항의 실천 여부			
<p>*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작성 * 신고 시 추정결과 표기 불필요</p>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자 검토》

경 영 자 검 토

20 년 월 일

결 재	작 성	담 당	승 인

항 목	검토결과	비 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준수 여부		준수여부를 표기 함
법규검토결과 변경사항발생한 경우 반영 여부		적정여부를 표기 함
목표의 적정 달성여부		적정여부를 표기 함
전년도 경영자 검토결과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표기 함
사업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 표기 함
경영자 검토결과 경영자의 의견		1년 동안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 기재
* 안전관리계획수립의 실행결과를 총평가하는 개념이므로 서술식으로 표현이 가능 함 * 신고 시 검토결과 작성 불필요		

4 안전사고 사례 및 대응요령

▣ 「관광진흥법」 제33조

가. 안전사고 사례

1) 사례1(연결부탈락사고)

- 사고기구명 : 크레이지크라운(대표기구명 : 점프보트)



- 사고일자 : 2017.11.00 (일)

- 사고현황

크레이지크라운(대표기구명:점프보트)의 중앙부에 승용물 아암을 연결하는 고정 볼트가 부러져 승용물이 약 1 m 높이에서 탑승장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승용물에 탑승하고 있던 이용객 2명이 상해(경상)를 입었으며,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

○ 진행사항

- 사고 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놀이기구의 한 축(아암)이 분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기계 결합 여부와 운영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 경찰 현장조사 실시(관계자 참고인 진술 조사)
- 국과수 감식 조사 실시(검사기관 합동조사)

○ 경찰 조사결과

- 해당기구 본체와 다리를 연결하는 볼트 총3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개는 부러지고 1개는 휘어진 상태로 조사됨

○ 사고처리결과

- 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3명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불구속 입건

2) 사례2(정지사고)

○ 사고기구명 : 플라이벤처(대표기구명:다이내믹시트)



○ 사고일자 : 2017.8.00 (토)

○ 사고현황

- 플라이벤처(대표기구명:다이내믹시트) 이용객 중 1인일 기구 운행자에게 운행중단 요청을 수신호로 하여, 운행자가 비상정지버튼으로 운행정지를 하였으나 기구가 탑승장으로 자동복귀를 하지 않고 멈춰버린 고장사고 발생함.
- 이용객을 수동으로 좌석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 체인블록 등 수동 고정 장치로 기구를 고정시킨 후 이용객 70명을 좌석에서 하강시킴(이용객 구호 소요시간 2시간 30분)
- 119소방대에서 이용객 70명을 외상없이 모두 구조하였으나, 어린이 1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함.

○ 진행사항

- 사고 후 경찰에서 당일근무자 및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기구는 조사가 끝날 때 까지 이용 중단하도록 조치함.
- 경찰 현장조사 실시(관계자 참고인 진술 조사)
- 국과수 감식 조사 실시(검사기관 합동조사)

○ 경찰 조사결과

- 정확한 원인은 못 찾음 (시스템오류 추정)

○ 사고처리결과

-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정지사고 발생시 조치 시간을 단축 시킴
- 재검사 후 운행

나. 안전사고 대응요령

1) 상황 파악 및 보고

- 중대사고발생시 업체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사고현장 방문이 가능한 경우 사고현장을 방문 및 상황 파악
- 사고기구의 사고처리 이후까지 운행정지 권고
- 사고내용(주요요지) 사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초동 공유

2) 현장조치

- 사고보고를 받은 관청 담당자는 현장조사 실시
-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사고조사반 구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통보 (단, 긴급한 경우 문서 생략할 수 있음)
- 현장조사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완료 후 검사기관의 운행 적합 검사를 받도록 하여함

3) 경찰조사

- 경찰에서는 사고 원인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업체 관계자 및 허가 신고 담당자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요청함
- 참고인 진술 준비사항
 - 업체 안전성검사 이력사항(정부점검, 법적검사, 자체점검 등)
 - 업체 안전관리자 현황 및 안전성검사 현황
 - 허가 신고 절차 및 내용
 - 유원시설업 업무담당자로서 과실 여부 조사에 따른 대응자료
- 참고인 진술이후 과실이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재조사

4) 행정처분

-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3일내 통보하지 하지 않은 경우(법제33조의2제

1항)에 대해 10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함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5) 재발방지

- 업체에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하도록 문서로 통보함
- 사고원인이 개선 조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재검사 실시후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운영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민원사례

1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 유형(FAQ)

□ 민원인

-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은 민원인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 유원시설업 이용객, 그리고 유원시설업 관련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 기관이 제기한 민원으로 구성됨

□ 민원 내용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은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등의 행정처리 규정,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입지지역, 물놀이형 유원시설, 신규시설인 키즈카페 관련 문의,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게임물해당 유원시설, 의무교육, 「관광진흥법」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가 다수를 이룸
- 그 밖에 법령 해석이 모호해 질의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 차수 적용, 타인경영,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종(種) 수, 보험가입 등 「관광진흥법」의 해석 상의 민원 등이 제기되었고, 유원시설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의무, 각종 행정처분 절차 질의 등이 제기됨

□ 민원 처리 기관

- 유원시설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주(主)를 이룸. 즉 유원시설업 관련 주요 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함
- 「관광진흥법」이외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기관이 민원을 처리함
 - 유원시설업 입지와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규 적용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함

<표 3-1>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 유형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가. 허가 신고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1	<p>•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유기사설·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업이라도 「관광진흥법」상 유기사설·유기기에 해당하면 유원시설업 규정이 적용됨</p>
	2	<p>•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의 행정절차</p> <p>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대상은 다르므로 기존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을 폐업신고한 후 신규허가를 취득해야 함</p>
	3	<p>•폐기내용을 증명해야하는 변경 허가신청시 폐기내용 증명 방법</p> <p>폐기하려는 유기사설·기구의 소유자의 폐기승인 문서, 고철 매각처분 문서,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됨</p>
	4	<p>•일반대중에게 무료로 이용할 때에도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가 필요한지</p> <p>이용요금 징수여부는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판단여부의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무료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p>
	5	<p>•영업허가전 사람 탑승가능 여부</p> <p>등록관청의 영업허가 후 탑승가능 함</p>
	6	<p>•섬에 모노레일 허가절차 문의</p> <p>모노레일은 궤도주행형 유기기구로서 허가 대상임. 해당 섬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허가신청하여야 함</p>
	7	<p>•매년 한시적 영업 후 영업 재개시 절차</p> <p>유기사설·기구의 재검사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가 폐업을 통보한 경우는 신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p>
	8	<p>•6개월미만 단기 허가 신고를 한 경우 폐업절차</p> <p>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보도록 함</p>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시설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 야영장 내 트램폴린, 에어바운스 등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할 경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붕붕뽀플(트램폴린), 에어바운스 등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바 상기 유원시설업의 정의에 해당한다면 이를 갖추어 영업할 때에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제곱미터이하에 설치된 확인 검사대상 기구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유기사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미니기차, 로데오타기, 영상모함관, 붕붕뽀플 등)를 설치하는 사업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영업장의 전체 설비시설 구성도면(레이아웃도면), 주요시설(유원시설, 음식시설, 휴게시설, 의무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각각의 명칭과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시설 및 설비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유원시설업에서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은 벽 또는 시설물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될 수 있음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등의 적정 여부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가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검 	대지면적(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이 1만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사대상 유기기구 6종 설치한 경우 종합유원시설업 해당여부	제곱미터 이상이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음식시설(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합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을 수 있음
3	•휴식시설 설치 해석	휴식시설은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로서 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예들 들어 규정한 것이며, 유원시설 사업장에 설치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따라 휴식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봄
4	•의무실약품 사용범위 문의	「약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대지면적(연면적)산정기준	바닥면적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말하며, 실 사용면적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는 유원시설업의 면적으로 산정.
6	•유원사업체에서의 풍속계 설치	20m이상인 유기사설유기기구가 있는 유원시설업체는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함
다. 유원시설업 입지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원시설업의 입지 가능 지역 •유원시설업 관련 부대시설의 입지 가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상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은 위락시설 설치가능지역, 500제곱미터만인 기타유원시설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가능지역, 500제곱미터이상인 기타 유원시설업은 운동시설이 설치가능한 지역,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원지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상 관광지 등에 입지할 수 있음 ■ 부대시설은 유원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함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2	•계획관리지역 내 유원시설 허가 가능 여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인 위탁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위탁시설 건축 할 수 없음(단 기타유원시설업은 가능할 수 있음)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허용 여부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이 허용된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과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음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건축 등 인허가 행위가 필요하므로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건축물의 용도상 위탁시설에 유원시설업의 시설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건축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5	•판매시설에 기타 유원시설업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타유원시설업은 설치할 수 있음
6	•물놀이형 검사대상기구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에 설치 가능한지	물놀이형등 검사대상 시설은 위탁시설에 해당되어 위탁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설치가능
7	•대규모 박람회장의 유원시설업 입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17.5.18.)에 따르면, 유원시설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점, 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바,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음.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라. 물놀이형 유원시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영장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적용하며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면 유원시설업에 해당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 간이물놀이 시설의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이동식 수영장)만 있는 경우는 유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슬라이드 등의 부속시설로 착지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슬라이드와 착지 부분(수영금지)만 유원시설에 해당 되므로 수영장 시설부분과 구획 관리하여야 하며 간이 수영장 시설을 착지 전용시설로 모두 사용할 경우는 유원시설업으로만 관리하면 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규칙에 의해 대상항목, 검사 공인기관, 년 몇회 검사 시행 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나와 있는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 산출방법은 업체의 특성(휴식공간 이나 이동 동선 등) 즉 면적 이나 락카수, 유기기구의 이용형태, 이용방법에 따라 업체마다 차이가 있어 사업자 스스로 가능한 수용인원을 정하게 하는 자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형 유원시설 사업장 내에 유기시설 또는 수영장에 해당하지 않는 풀의 안전요원 배치 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1호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는 각종 시설 기구는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유기시설 또는 수영장에 해당하지 않는 풀(바데풀 등)에도 안전요원 배치 및 수질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
마. 키즈카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즈카페 설치 가능 여부 	기타유원시설업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신고 가능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즈카페는 일반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관광사업(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키즈카페의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안전정책조정회의(13년11월)에서 키즈카페 내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하 유기시설)는 기타유원시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설업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건축법 등)이 개정(14년4월)되었음. 관광진흥법 요건에 부합하면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여야 함	
3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 등 어린이놀이시설법 중복관리시설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고 있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중복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제2호다목2)에 따라 2년마다 정기확인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서류로 관광진흥법의 정기확인검사(2년주기)를 받은 것으로 처리함 	
4	•키즈카페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소재지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본점 및 각 지점별로 해당 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함	
5	•키즈카페내 검사대상 2기종 있는 경우	검사대상 기구가 있으므로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거나 해당지역이 허가 불가능지역인 경우 기구를 철거하여야 함	
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1	•안전사고 보고 및 조치	사업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영업정지 가능여부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수 있음
	3	•안전요원 배치 위반시 제재	안전요원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가능함,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사. 게임물해당 유원시설	1	<p>•게임물 해당 유원시설에 대해 게임법의 영업시간 적용 여부</p> <p>•2017년 1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설치 된 경우 게임법에 따라 영업시간을 적용해야함</p>
	2	<p>•게임물 해당 유원시설 사행성 조장 금지, 영업시간, 청소년시간 등의 미준수시 조치방안</p> <p>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에 해당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p>
아. 의무교육	1	<p>•안전관리자 자격관련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계, 전기, 전자 또는 안전관리분야 해당 자격명칭</p> <p>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서 해당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3개 직무분야 159개 자격증이 해당됨</p>
	2	<p>•시군구에 휴업신고 업체는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p> <p>장기 휴업일 경우에는 휴업신고 기간을 제외하고 의무교육일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 휴업일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p>
	3	<p>•안전관리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받은 일로 부터 만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년되는해 마지막날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p> <p>안전관리자 의무교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회수가 한정적으로 진행되므로 2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교육을 이수해야 됨</p>
	4	<p>•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의무교육을 사업자가 아닌 자(임의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 등)가 받아도 되는지</p> <p>기타유원시설업 대다수는 사업자가 실질적인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아닌 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 단기 근로인력 또는 제삼자 등이 교육을 받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함</p>
	5	<p>•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모두 의무교육대상인지</p> <p>기타유원시설업자중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사설(미니기차, 영상모험관, 붕붕뽀플 등)을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됨</p>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자. 기타	1	•기타 유원시설업의 행정처분 차수 적용 및 사전통지 기준 동일한 유원시설업체라도 하나의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각 차수별로 사전통지 하여야 함
	2	•공매로 인하여 유원시설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인수' 개념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 인수 요건 충족 시 승계 가능함.
	3	•유원시설업의 타인경영 가능 여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는 타인이 경영할 수 없음
	4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종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 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개수를 의미함
	5	•수륙양용선박의 타 법령과의 중복 적용 여부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음
	6	•휴업중에도 보험에 가입 여부 휴업 중에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7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유기기구에의 위생기준 적용 여부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유기기구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8	•결격사유 조회 및 미신고 폐업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취소(신고업종 영업소 폐쇄명령)절차 따름. 폐업미신고시 시정명령 해당절차 이행하는 것이 적절함
	9	•양수(지위승계) 안전관리자 승계 여부 고용승계 받은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법령 준수 여부 검토 필요함
	10	•관광사업자 영업보증금 예치 가능 여부 허가 및 신고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 대신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차. 유기시설 · 유기기 구 해당 여부	1	해당하지 않음	1	짚라인(아라나비,하늘가르기,짚와이어 형태)
			2	사계절 썰매장(물포함)
			3	인공암벽
			4	오리배
			5	4륜오토바이(ATV)
			6	행글라이더 체험장
			7	방탈출
			8	주드라이브(Zoo Drive)
			9	비비탄 사격장
			10	스크린 승마시설
			11	스크린 골프
			12	스크린 야구
			13	번지점프
			14	유로번지
			15	로프웨이
			16	간이수영장
			17	에어로바
			18	대형튜브
			19	크리스탈타워
			20	그물나무
			21	인간인형뽑기
2	해당	1	전동레일바이크	
		2	이동식 미니 바이킹	
		3	4D 체험시설(에그VR)	
		4	4D 체험시설	
		5	자이로 VR 리미티드	
		6	비행기	
		7	회전컵	
		8	슬라이드 착지풀전용	
		9	콜크 사격장	
		10	풍선터트리기	
		11	로봇카	

2 민원사례

가.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1. 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지 여부

질 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에도 해당 하면서 동시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도 포함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는 경우, 그 영업도 유원시설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유원시설업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검사 등의 규정도 적용되어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의 시설기준 및 허가·신고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기타유원시설업자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 행정절차

질 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자가 이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을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존 신고내역 폐업신고 후 신규허가’ 취득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의

답 변

-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르면 유원시설업 허가와 신고 대상이 다르므로 기존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을 폐업한 후 신규허가를 받아야 함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의 폐기 증명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보면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기사설 폐기를 원하는 경우, 대상시설에 대한 사진과 폐기사유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폐기를 하라는 것인지, 먼저 폐기한 다음 폐기한 사진을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질의
-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폐기를 먼저 하고 그 사진을 넣어 허가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을 먼저 폐기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는 동법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6호 서식의 폐기내용 증명서류란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소유자의 폐기승인문서, 고철 매각처분 문서, 관련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바, 이는 폐기 후에 관련 자료를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4.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일반대중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때에도 유원 시설업 허가 신고가 필요한지

질 의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료로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관광진흥법 제5조 1항 6호에 유원시설업 정의를 보면,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기구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유원시설업에 포함하고 있음
- 이용요금 징수여부는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판단여부의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료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

5. 유기시설 허가 전 사람 탑승 가능 여부

질 의

-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이 아직 유원시설업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 광고촬영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탑승이 가능한지

답 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절차이며, 등록관청은 이 외에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비록 안전성검사를 완료하여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 전 영업행위가 아닌 광고 촬영일지라도 등록관청의 영업허가 이전에 유원시설업 홍보를 하기 위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음

6. 모노레일 허가 관련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관광궤도업’이 있는데, 섬에 모노레일을 건설할 때 필요한 관광사업 허가 절차 질의

답 변

- 관광궤도업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모노레일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유기기구 중 ‘궤도주행형’에 해당됨
- 따라서, 안전성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입지가 가능하여야 함

7. 매년 한시적 영업 후 영업재개시 절차

질 의

- 매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영업재개시 절차 질의

답 변

- 매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원시설업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함
(단, 단기영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폐업 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나 매년 운행 재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됨)
- 사업자가 휴업을 통보하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재검사 여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가 폐업을 통보한 경우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

8. 6개월미만 단기 허가 신고를 한 경우 폐업절차

질 의

- 여름철 이나 지역 행사 등 6개월 미만에 단기적으로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할 경우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폐업 절차

답 변

-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시 유원시설업 허가 · 신고 신청서 양식에 영업기간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단서 규정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봄.

9.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질 의

-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 대표자 변경 신고 건으로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서’ 및 ‘유기시설 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만으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최초로 허가받을 때와 같이 토지 및 건물(유기시설) 모두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 권한이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가, 유기시설에 대한 권한만으로도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답 변

-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상법」 제18조 내지 제28조 규정을 참고하여야 함

10. 음식점 · 야영업장 내에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붕붕뽀뽀 · 에어바운스) 설치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여부

질 의

-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사업(일반야영장)장내에 놀이시설(트램폴린(방방시설), 에어바운스)이 있는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대상으로 판단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이나 일반야영장업의 부대시설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

답 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트램폴린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붕붕뽀뽀’에 해당되며,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령에 안전성검사 대상 또는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바 상기 유원시설업의 정의에 해당한다면 이를 갖추어 영업할 때에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

11. 40제곱미터이하에 설치된 확인검사대상 기구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에서 유기시설 운영할때의 관리방안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유원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내 기타유원시설업의 개별기준에는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유기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미니기차,로데오타기, 영상모험관, 붕붕뽀뽀 등)를 설치하는 사업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하여야 함

1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질 의

-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하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답 변

- 영업장의 전체 설비시설 구성도면(레이아웃 도면), 주요시설(유원시설, 음식시설, 휴게시설, 의무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각각의 명칭과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1.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에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의 의미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르면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공통기준에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이란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왕래 등을 할 수 없도록 벽 또는 시설물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야 하는지

답 변

-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은 벽 또는 시설물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될 수 있음
-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의 적정 여부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가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을 설치한 경우 종합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질 의

- 5,000제곱미터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을 설치하였을 경우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문의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지면적(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음식시설(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종 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종 수란

- ‘바이킹’과 같이 하나의 기구가 독립된 유기기구로서 이용될 경우, 각각의 유기기구 개수를 종수로 봄
 - ☞ 바이킹 1개 → 1종, 바이킹 10개 → 10종
- ‘범퍼카’와 같이 하나의 시설이 여러 개의 승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범퍼카’ 시설 전체를 1종으로 봄
 - ☞ 여러 개 승용물로 구성된 범퍼카 한 세트 → 1종

3. 의무실 약품 사용 범위 문의

질 의

- 종합유원시설의 의무시설에서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편의시설에서 판매가능한 품목)들을 손님상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의무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를 구급약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 「약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등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원시설에서는 현재 동 약품에 대해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4. 기타유원시설업은 면적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나뉘어 지는데, 이때의 면적 산정 기준

질 의

- 기타유원시설은 면적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나뉘어 지는데, 이때의 면적 산정 기준

답 변

-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타유원시설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유원시설업은 운동시설에 입지할 수 있음
- 이때의 바닥면적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말하며, 실 사용면적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는 유원시설업의 면적으로 산정해야 함

5. 유원시설업장에서의 풍속계 설치

질 의

- 모든 유원시설업체에서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풍속계를 설치할 때 고정식 대신 이동식 풍속계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허가전검사 항목에 최고 높이가 20m이상 인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체의 경우는 풍속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풍속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풍속이 10m/s 이상일 경우 안전을 위해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방식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다. 유원시설업 입지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

질 의

- 유원시설업은 도시계획이용 상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구이거나 유원지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부대시설로 설치한 건물(매표소 등)이 위락시설이 아닌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답 변

-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은 위락시설 설치가능지역, 500제곱미터미만인 기타유원시설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가능지역, 500제곱미터이상인 기타유원시설업은 운동시설이 설치가능한 지역,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9조)에 따른 유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광지 등에 입지할 수 있음
- 부대시설은 유원시설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함

2. 계획관리지역 내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여부

질 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내에 카트(안전성검사 대상 주로주행형 스포츠카를 설치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민원 개요〉

- 관련 관청 유권해석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5,나,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위락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에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아'항 규정에 의거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
- 다른 유권해석
 - 본 유원시설업 허가대상은 주로주행형 유기기구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아'에 해당되지 않는 유원시설업종 유기기구에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

답 변

-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시에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별표1]의 위락시설일 경우 가능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의 '아'호의 의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없음
단 기타유원시설업인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바가 없는 경우 운영할 수 있음.
-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입지가 가능하여야 함

3.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질 의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형태의 유기기구), ‘두더지’(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 형상이 나오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의 유기기구로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를 두고 영업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 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이 허용된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과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운영하고자 하는 ‘배터리카’, ‘두더지’ 등은 토지에 정착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건축 또는 토지의 정착물 등을 설치하는 등 건축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 등 개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4. 건축물의 용도상 위락시설에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호, 위락시설의 용도에 유원시설업의 시설이 명기되어 있고 따라서 유원시설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락시설에 해당함으로 위락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용도상 위락시설이 아니고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부대시설(방송시설 및 휴식시설, 화장실, 안내소)이 위락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공작물설치신고(건축법 83조, 건축법시행령 118조)로 부대시설은 위락시설로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의견에 대한 여부

답 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의미함.
- 이와 관련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 등이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 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라 공작물 등으로도 축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국토부 건축정책과 답변, 2015.10.14.)
-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건축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5. 판매시설에 기타 유원시설업 설치 가능 여부

질 의

-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인 곳에 유원시설업 설치가 가능한지

답 변

-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타유원시설업은 설치할 수 있음

6. 안전성검사 대상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용도

질 의

- 안전성검사 대상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나 운동시설에 설치가 가능한지

답 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놀이형 시설도 예외라고 볼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은 위락시설에 입지할 수 있음

7. 대규모 박람회장의 유원시설업 입지

질 의

- 코엑스나 킨텍스 등 대규모 박람회장내 유원시설업 가능 여부

답 변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17.5.18.)에 따르면, 유원시설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바,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음.

라. 물놀이형 유원시설

1. 수영장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수영장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답 변

-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함.
- 다만, 수영장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있는 경우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함

2.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이동식 수영장) 신고 여부

답 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에서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동 종목으로서 수영을 강습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 형태, 대상 고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이동식 수영장)만 있는 경우는 유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슬라이드 등의 부속시설로 착지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슬라이드와 착지 부분(수영금지)만 유원시설에 해당 되므로 수영장 시설부분과 구획 관리하여야 하며 간이 수영장시설을 착지 전용시설로 모두 사용할 경우는 유원시설업으로만 관리하면 됨



3.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규칙에 의해 대상항목, 검사 공인기관, 년 몇회 검사 시행 여부

질 의

-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규칙에 의해 대상항목, 검사 공인기관, 년 몇회 검사 시행 여부

답 변

- 전항목 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검사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검사공인기관은 전국에 17년말 기준 7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7개의 지역별 환경청에서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어 지역별환경청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검사항목은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본 매뉴얼 56 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

4. 물놀이형 유원시설 사업장 내에 유기시설 또는 수영장에 해당하지 않는 풀의 안전요원 배치 여부

질 의

- 물놀이형 유원시설 사업장 내에 유기시설에 유기시설 또는 수영장에 해당하지 않는 풀(바데풀, 체온유지탕)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1호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는 각종 시설 기구는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 유기시설 또는 수영장에 해당하지 않는 풀(바데풀 등)에도 안전요원 배치 및 수질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마. 키즈카페 (기타유원시설업)

1. 키즈카페 설치 가능 여부

질 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가능 지역 여부

답 변

- 기타유원시설업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신고 가능함
-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 및 건축용도별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요함

2. 키즈카페 관광객 대상으로 사업 여부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에 따라 당 업체에서는 관광객이 아닌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키즈카페는 일반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관광사업(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답 변

- 키즈카페의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안전정책조정 회의(13년11월)에서 키즈카페 내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건축법 등)이 개정(14.4월)되었음. 관광진흥법 요건에 부합하면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여야 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키즈카페내 설치된 놀이기구가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기기구이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구로 안전이 각별히 유의되는 만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여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3.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중복관리시설 관리방안

질 의

-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의 놀이기구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기시설(확인검사대상)에도 해당됨
- 이 경우 이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본 검사서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고 있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중복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됨 (단 검사대상 유기기구는 해당 안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제2호다목2)에 따라 2년마다 정기확인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시설 검사 서류로 관광진흥법의 정기확인검사(2년주기)를 받은 것으로 처리함

4. 키즈카페 본점과 지점별 신고

질 의

- 키즈카페 본점이 타시군에 있고, 지점을 우리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음. 이 경우 본점만 본점 소재지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완료하면 지점은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인지 문의
- 여행업의 경우 본점만 본점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지점은 변경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타유원시설업도 이에 준용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등 운영관리도 본점소재지 등록관청의 소관인 것인지 문의

답 변

- 키즈카페의 본점이 타 시군구에 있고, 지점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지점별로 해당 관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고된 각 지점별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사항들을 준수해야 할 것임.

5. 키즈카페내 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경우

질 의

- 확인검사대상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유기사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유원시설업 등록 가능여부(건축물대장 용도는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으로 표기되어 있음)
- 위 사항의 경우 유원시설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 변

- 확인검사 유기기구만 운영하는 경우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이지만,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1종이라도 설치된 경우는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대상임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맞아야 하나, 일반유원시설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서 운동시설에는 기타유원시설업만 허용됨
- 따라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철거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한 후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아야 할 것임

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1. 안전사고 보고 및 조치

질 의

-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안전사고는 기계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문의
- 이용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기기구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한 질의

답 변

- 「관광진흥법」제33조의2에 따라, 유원시설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함
-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2.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유원시설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으로서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범버카 지붕인 천막이 찢어져 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물기가 있는 채 범버카를 운행할 시 감전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조치 요구하였으나 유원시설업자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 이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구만 영업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수 있음

3.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배치 관련

질 의

- 물놀이형 유원시설 내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 2 제10호가목과 나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안전요원이 사고가 난 지점을 조망할 수 없는 지점에 있었다면 해당 유원시설의 안전요원의 배치는 잘못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2 제10호 가목과 나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요원의 수는 최소 배치에 대한 개념이며 해당 안전요원이 사고지점을 조망할 수 없는 경우 CCTV설치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워터파크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

사. 게임물해당 유원시설

1. 게임물 해당 유원시설 영업시간 적용 여부

질 의

- 게임물 해당 유원시설에 대해 게임법의 영업시간 적용 여부

답 변

- 2017년 1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1.공통사항 개정 이후 설치 된 경우 게임법에 따라 영업시간을 적용해야함

2. 게임물 해당 유원시설 사행성 조장 금지, 영업시간, 청소년시간 등의 미준수시 조치 방안

질 의

- 게임물 해당 유원시설 사행성 조장 금지, 영업시간, 청소년시간 등의 미준수시 조치 방안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아. 의무교육

1. 안전관리자 자격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분야 해당 자격명칭

질 의

- 안전관리자 자격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분야 해당 자격명칭은 무엇인지

답 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에서 해당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3개 직무분야 159개 자격증이 해당됨

※ 본 매뉴얼 92페이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배치기준 및 임무」 참조

2. 시군구에 휴업을 통보한 업체의 안전관리자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시군구에 휴업을 통보한 업체의 안전관리자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 장기 휴업일 경우에는 휴업신고 기간을 제외하고 의무교육일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 휴업일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3. 안전관리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받은 일로 부터 만 2년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년 되는 해 마지막날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질 의

- 안전관리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받은 일로 부터 만 2년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년 되는 해 마지막날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답 변

- 안전관리자 의무교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회수가 한정적으로 진행되므로 2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교육을 이수해야 됨

4.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의무교육을 사업자가 아닌 자(임의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 등)가 받아도 되는지

질 의

-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를 대신하여 다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기타유원시설업 대다수는 사업자가 실질적인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아닌 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 단기 근로인력 또는 제삼자 등이 교육을 받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함

5.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모두 의무교육 대상 인지

질 의

-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모두 의무교육대상인지 여부

답 변

- 기타유원시설업자중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사설(미니기차, 영상모험관, 붕붕뽀들 등)을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됨

자. 기타

1. 행정처분 차수 적용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일반기준 나항’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해당 유기기구가 다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적용은 1차(시정명령)가 맞는가, 2차(사업정지 10일)가 맞는지 문의
- 행정처분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 10일), 3차(사업정지 1개월), 4차(사업정지 3개월)를 연속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각각의 차수마다 해야 하는가, 아니면 1차 시정명령 시에만 해도 무방한지 여부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별표 2]에 따라 별개의 유기기구를 다른 시기에 각기 설치한 것은 ‘같은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차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행정처분 각 차수별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

2. 공매로 인하여 유원시설업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인수’의 개념

질 의

-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의
- 종전 영업자인 A회사가 ‘지위승계신고서’에 날인을 거부한다면 인수자인 B회사의 날인만으로도 신고서로서 효력이 있는가? 즉 「관광진흥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시설 인수 관련 ‘지위승계 증명서류’에 종전 A회사의 동의 의사가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의 인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승계 가능함
- ‘지위승계 증명서류’의 양도인란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인의 날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 및 법원의 인도명령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유원시설업의 타인경영 가능 여부

질 의

-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 여부

답 변

-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호에서는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타인이 경영할 수 없는 관광사업의 시설로 규정함
- 유원시설업의 핵심이 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직접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유기기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임
-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비록 허가를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하여도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경영은 법규에 위반함

4.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종 수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수를 규정하는데,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는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으로 분류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수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

답 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개수를 의미함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종 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개수란
 - '바이킹'과 같이 하나의 기구가 독립된 유기기구로서 이용될 경우, 각각의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됨
 - ☞ 바이킹 1개 → 한 번의 안전성검사, 바이킹 10개 → 10번의 안전성검사
 - '범퍼카'와 같이 하나의 시설이 여러 개의 승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범퍼카' 시설을 하나의 유기시설로 보아 안전성검사를 실시함
 - ☞ 여러 개 승용물로 구성된 범퍼카 한 세트를 한 개로 봐 안전성검사를 실시함

5. 수륙양용선박의 타 법령과의 중복 적용

질 의

-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선박법」 제26조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음
-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 규제 대상 및 내용도 상이하므로 「관광진흥법」 제33조 상의 안전성검사 대상이라 하여 「선박법」 제8조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6. 휴업 중에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여행업을 제외하고 유원시설업 등에 대하여 휴업 중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유원시설업은 휴업 중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 변

-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보험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업 중에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7. 물과 직접 접촉이 없는 놀이형 보트타기에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 의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라" 항목 놀이형 중 '보트타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이용자는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음),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39조2 [별표 10의2])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중 놀이형의 보트타기를 설치 운영할 때 이용자가 물과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9조 2(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관련 [별표 10의2]가 적용되지 않음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기구		검사대상 기구
		
놀이형 보트타기	주행형 페달보트	범퍼보트

8. 기타유원시설업 결격사유 조회 및 미신고 폐업

질 의

- 다른 관광사업 신청서와 달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시에 신청인의 주민번호 및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는 것이 없으면, 결격사유 조회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조항이 모든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신고 시 첨부서류에 적혀있을 때만 조회하는 것인지, 즉 신고 시 첨부서류 어디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류가 없는데 결격사유 조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 폐업을 하고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3차 등의 과정이 있는데, 폐업하고 이미 2년이 지나고 이미 가게도 없고, 여러번 다른 업종의 가게로 바뀌어서 흔적이 없다면 행정처분은 무의미 한지, 무의미해도 1차 시정명령 이후 영업폐쇄명령까지 하는지, 폐업신고 할 때까지 행정처분을 하는지 질의

답 변

- 「관광진흥법」제7조상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2]상 위반사항 '라.'에 해당되어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절차에 따르게 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마.' 동법 제8조 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엔 1차 시정명령, 2차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3차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단서조항 신설)

9. 양수(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승계 여부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관광사업(일반유원시설업) 양수(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 구비서류를 미첨부하여도 되는 지 질의
-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는지, 지위승계 계약서상 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한 승계 조항만 명기 시켜도 되는지 여부

답 변

-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고용승계 받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등이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서류 등은 관련 규정의 양식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람

10. 관광사업자의 영업보증금 예치건

질 의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규정에 대한 질의

답 변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및 신고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 대신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차.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해당 여부





1.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해당 않됨

질 의 및 답 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에 해당되지 않은 주요 문의 시설 또는 기구

구분	문의명칭	사진	비고
1	짚라인 [유사기구명] 짚와이어 아라나비 하늘가르기		현재 관련법이 없음
2	사계절 썰매장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3	인공암벽		현재 관련법이 없음

구분	문의명칭	사진	비고
4	오리배		<p>저수지 이용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해당</p>
5	4륜오토바이(ATV)		<p>50cc이상은 원동기 면허</p>
6	행글라이더 체험장		<p>현재 관련법이 없음</p>
7	방탈출		<p>현재 관련법이 없음</p>

구분	문의명칭	사진	비고
8	주드라이브		[유사기구명] 골프카 (동력:бат데리)
9	비비탄 사격장		비비탄사용
10	스크린 승마시설		-
11	스크린 골프		-

구분	문의명칭	사진	비고
12	스크린 야구		-
13	번지점프		현재 관련법이 없음
14	유로번지		현재 관련법이 없음
15	로프웨이		현재 관련법이 없음




구분	문의명칭	사진	비고
16	간이수영장 (미니수영장)		<p>체육시설업 수영장업에 미해당시 관련법 없음</p>
17	에어로바 (AEROBAR)		<p>현재 관련법이 없음</p>
18	대형튜브		<p>현재 관련법이 없음</p>
19	크리스탈타워		<p>현재 관련법이 없음</p>

구분	문의명칭	사진	비고
20	그물나무		현재 관련법이 없음
21	인간인형뽑기		현재 관련법이 없음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해당 됨

질 의 및 답 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에 해당되는 주요 문의 시설 또는 기구

구분	문의명칭	사진	비고
1	전동레일바이크 (스카이바이크)		검사대상 (궤도운송법 에 적용을 받지 않음)
2	이동식 미니 바이킹		검사대상
3	4D체험시설 (에그VR)		확인 검사대상

4	4D체험시설 (레이싱게임)		확인 검사대상
5	자이로 VR 리미티드		확인 검사대상 (자이로VR 은 검사대상)
6	비행기		검사대상
7	회전컵		검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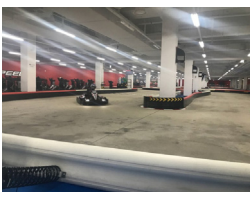
<p>8</p>	<p>슬라이드 착지풀전용</p>		<p>슬라이드 높이에 따라 검사대상 또는 확인 검사대상</p>
<p>9</p>	<p>콜크 사격장</p>		<p>콜크 총알 사용</p>
<p>10</p>	<p>풍선터트리기</p>		<p>표적맞추기</p>
<p>11</p>	<p>로봇카</p>		<p>주행속도에 따라 검사대상 또는 확인 검사대상</p>

3 관광진흥법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설명 및 사진

가. 검사대상 유기시설 · 유기기구

1) 주행형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궤도주행형	스카이 사이클	일정높이의 레일위를 이용객이 승용물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기구(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모노레일	 사이클모노레일
		일정높이의 레일 위 또는 아래를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연결된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기구(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스카이제트	 미니레일
 관광열차		
꼬마기차	일정높이의 레일 위를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개별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기구(하늘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되어 일정 레일을 주행하는 시설·기구(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꼬마기차	
	 축제열차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정글마우스	여러 가지 자동차형 연결 승용물이 일정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시설·기구(빅트릭, 서킷2000, 클래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미니자동차	
	 빅트릭	
	 서킷2000	
정글마우스	 해피스카이	
	개별 승용물이 일정 레일을 따라 급회전 및 방향전환을 하는 시설·기구(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정글마우스	 정글마우스	
	 탑코스터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궤도주행형	미니코스터	<p>전기 동력 장치로 구동되는 연결 승용물이 상하 굴곡이 있는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구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비룡열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자이언트루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우주열차</p> </div> </div>
	제트코스터	<p>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복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카멜백코스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T익스프레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틀란티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마운틴코스터</p> </div> </div>
궤도주행형	루프코스터	<p>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수직, 스크류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부메랑코스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판타지아스페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블랙홀200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포특급</p> </div> </div>
	공중궤도라이드	<p>천장 또는 상부에 설치된 일정 레일 아래를 따라 주행하는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관람하며 주행하는 시설·기구(바룬라이드 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바룬라이드</p> </div>
궤도자전거	궤도자전거	<p>지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자전거형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기구(철로자전거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궤도자전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철로자전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레일바이크</p> </div> </div>
스포츠카	스포츠카	<p>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스포츠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고카트</p> </div> </div>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주 로 주 행 형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p>무궤도열차</p>	 <p>트램카</p>	 <p>코끼리열차</p>
	봅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기구(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등)		
	 <p>봅슬레이</p>	 <p>루지</p>		
수 로 주 행 형	후름라이드	배 모양의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리프팅하여 낙하시키면서 유속에 의해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시설·기구(후름라이드, 급류타기 등)		
		 <p>후름라이드</p>	 <p>후름라이드</p>	 <p>급류타기</p>
	신밧드의 모험	배 모양의 승용물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수로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설·기구(지구마을 등)		
	 <p>신밧드의모험</p>	 <p>지구마을</p>		
래피드라이드	이용객이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가 흐르는 일정한 수로를 따라 주행하는 기구(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p>래피드라이드</p>	 <p>보트라이드</p>	 <p>아마존익스프레스</p>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자유주행형	범퍼카	일정한 공간의 지면에서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여 좌우충돌을 하며 주행하는 기구(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p>범퍼카</p>	 <p>어린이범퍼카</p>	 <p>박치기차</p>
	범퍼보트	일정한 공간의 수면에서 배터리방식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며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 조작을 통해 좌우충돌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기구(박치기보트 등)		
	 <p>범퍼보트</p>	 <p>박치기 보트</p>		
수륙양용관람차	일정한 공간의 수면 또는 지면을 운행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변을 관람하는 기구(로스트밸리 등)			
	 <p>로스트밸리</p>			




2) 고정형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총회전고정형	회전관람차	<p>수평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암 또는 스포크 구조물 등의 끝단에 승용물을 매달아 수직 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회전관람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어린이관람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우주관람차</p> </div> </div>
	플라잉카펫	<p>수평축을 중심으로 2개 또는 4개의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플라잉카펫</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는소방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는양탄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위즈</p> </div> </div>
	아폴로	<p>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360° 수직 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폴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샤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우주유람선</p> </div> </div>
	레인보우	<p>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는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는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레인보우</p> </div>
	바이킹	<p>수직중심축에 매달린 배 모양의 승용물을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가 마찰하는 방식으로 예각의 범위에서 회전 운동하는 기구(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바이킹</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미니바이킹</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콜럼버스대탐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스윙보트</p> </div> </div>
	고공파도타기	<p>2개의 수평 중심축에 각각의 균형추가 있는 암과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교차 연결하여 암을 수직원운동 시키는 기구(터너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애나존스, 탑스핀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고공파도타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스페이스루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디애나존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탑스핀</p> </div> </div>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스카이 코스터	2개의 지지부재 상부에 수평축을 연결하고 그 수평축에 그네형태로 와이어 로프로 승용물을 연결하여 인양 후 자유 낙하시켜 진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스카이코스터 등)  스카이코스터
	회전그네	수직축 상부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산형태 구조물 끝단에 승용물을 메달아 수평원운동을 하는 기구(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그네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회전목마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 위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목마 등을 고정하거나 각각의 크랭크축으로 목마가 상하로 움직이며 운행하는 기구(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회 회 전 고 정 형	티컵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대회전)위에 커피잔 모양의 승용물이 개별 회전(소회전)하며 운행하는 기구(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티컵 회전컵 어린이왕국 데이트컵
	회전보트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 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점프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암 끝에 연결된 오토바이 모양의 승용물이 굴곡이 있는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피에로 오토바이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회 회 전 고 정 형	<p>음악 익스프레스</p>	경사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암 끝의 승용물이 경사진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p>음악익스프레스</p>	 <p>피터팬</p>	 <p>록카페</p>		
	<p>스윙댄스</p>	원판형 승용물의 한쪽 끝을 실린더로 올리고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p>디스코라운드</p>	 <p>댄싱플라이</p>			
	<p>타가다 디스코</p>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p>타가다</p>	 <p>타가다디스코</p>				
<p>닌자거북이</p>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하고 그 끝에 승용물을 매달아 회전운동을 하는 기구(스페이스피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p>닌자거북이</p>	 <p>스페이스화이트</p>	 <p>라이온킹</p>	 <p>우주정거장</p>		
복 합 회 전 고 정 형	<p>회전비행기</p>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높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			
	 <p>회전비행기</p>	 <p>탑비행기</p>			
<p>우주전투기</p>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연결된 암이 상하작동하며 암 끝단에 승용물이 고정되어 이용자가 가상전투게임으로 앞쪽 승용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터,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p>우주전투기</p>	 <p>미니플라이트</p>	 <p>아라비안나이트</p>	 <p>삼바</p>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복합 회전 고정형	점프보트	수직중심축 상부에 다수의 암을 연결하고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연결하며 그 암을 상하로 움직여 수직중심축이 회전하는 기구(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다람쥐통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굴곡에 의해 수직회전운동을 하며 암전체가 횡회전을 하는 기구(록큰롤, 투이스타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스페이스 자이로	실린더에 의해서 기울어진 원판의 승용물이 타원회전 운동하는 기구(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스카이댄싱	 팽이놀이	 회전의자
	엔터프라이즈	중심축에 연결된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중심축이 들려서 전체 회전운동을 하고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문어다리	방사형 아암 끝에 승용물이 연결되어 대형 암이 중심축을 회전하고 편심축의 회전에 의해서 승용물이 상하 운동 및 자전을 하는 기구(문어다리,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문어다리	 왕문어춤	 문어댄스
슈퍼스윙	회전체에 내려뜨린 암 끝에 승용물이 매달려 탐회전 원심력과 실린더에 의해 외측방향으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기구(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복합 회전 고정형	베이스볼	회전판을 기울여지도록 한쪽을 상승시키고 그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개별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레이크댄스	회전판이 돌면서 스포크에 연결된 개별 승용물이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풍선기구 모양의 승용물이 회전체에 매달려 회전, 상승하면서 이용객이 높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구(동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허리케인	수직중심축에 매달린 회전하는 원형고리 모양의 승용물을 상부 또는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에 의해 좌우로 예각, 둔각, 360도의 범위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프리스윙, 자이로스윙, 토네이도, 블리자드 등)			
	매직스윙	반원형 궤도내에서 회전 원형 승용물이 하부 동력장치에 의해서 좌우로 예각 범위 내에서 수직 회전 운동하는 기구(자이로 스피, UFO 등)			
	슈퍼라이드	다양한 형태의 복합 회전운동을 하는 유기기구(칸칸, 에블루션, 삼각바퀴, 챌린저, 우주선 등)			
	 <p>플리퍼</p>	 <p>회전바구니</p>	 <p>월드컵2002</p>	 <p>카오스</p>	
	 <p>레이크댄스</p>	 <p>레이크댄스</p>	 <p>스피디</p>	 <p>스타댄서</p>	
 <p>풍선타기</p>	 <p>동실비행선</p>	 <p>플라워레이스</p>			
 <p>허리케인</p>	 <p>자이로스윙</p>	 <p>토네이도</p>	 <p>디스커버리</p>		
 <p>자이로스핀</p>	 <p>UFO</p>				
 <p>스카이레이서</p>	 <p>렛츠트위스트</p>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사이버인 스페이스	원형의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수평,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자이로 캡슐 등)			
		 <p>사이버인스페이스</p>	 <p>자이로 캡슐</p>	 <p>자이로 VR</p>	
	패러슈터 타워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 상승·하강하는 기구(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p>패러슈터타워</p>	 <p>낙하산타기</p>	 <p>개구리점프</p>	
승강고정형	타워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상승시켜 하강시키는 기구(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트워 등)			
		 <p>자이로드롭</p>	 <p>콘돌</p>	 <p>스페이스샷</p>	 <p>메가드롭</p>
	프레쉬팡팡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피스톤의 상단에 좌석 승용물을 고정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좌석 승용물이 상하로 운동하는 기구(프레쉬팡팡 등)			
		 <p>프레쉬팡팡</p>			

3) 관람형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영상모험관	단일구동장치에 의해 승용물이 좌우·전후 요동하고 탑승자는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제트, 사이버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p>영상모험관</p>	 <p>와일드윙</p>	 <p>풍수해체험관</p>	
입체 관람형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는 시설·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p>환상의집</p>	 <p>요술집</p>	 <p>착각의집</p>	
	다이나믹 시트	일정한 시설 내에 복수구동장치에 의해 좌석 승용물이 영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기구(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p>다이나믹시트</p>	 <p>슈팅시어터</p>	 <p>입체영상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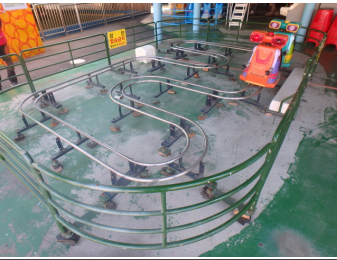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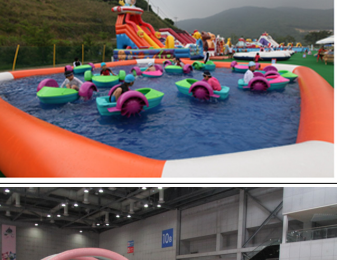

4) 놀이형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일반 놀이형	편하우스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미끄럼, 줄타기, 다람쥐 놀이 등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기구(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모험놀이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기구(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등)		
	에어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		
물 놀이형	파도풀	담수된 풀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파도를 일으키는 구조의 시설·기구(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기구(리버웨이 등)		
	토랜트리버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번에 유출시켜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기구(익스트림 리버 등)		
 <p>편하우스</p>	 <p>미로탐험</p>	 <p>오즈의성</p>		
 <p>모험놀이</p>	 <p>액션존</p>	 <p>짝궁놀이터</p>		
 <p>에어바운스</p>	 <p>에어바운스</p>	 <p>에어바운스</p>		
 <p>파도풀</p>	 <p>파도풀</p>	 <p>파도풀</p>	 <p>케리비안웨이브</p>	
 <p>유수풀</p>	 <p>리버웨이</p>	 <p>보텍스풀</p>		
 <p>토랜트리버</p>	 <p>와일드리버</p>			

부류 구분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물 놀 이 형	바디 슬라이드	<p>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바디슬라이드, 워터볼슬레이, 스피드슬리아드, 아쿠아루프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바디슬라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워터볼슬레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쿠아루프</p> </div> </div>
	보울 슬라이드	<p>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튜브를 타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스페이스 보울, 와이퍼 아웃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스페이스보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와이퍼아웃</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보울슬라이드</p> </div> </div>
	직선 슬라이드	<p>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매트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수직평면상 직선형태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한 개 또는 여러개의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레이싱 슬라이드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레이싱슬라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경주용슬라이드</p> </div> </div>
	튜브 슬라이드	<p>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1인 또는 다인승)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튜브라이더, 와일드블라스트, 패밀리슬라이드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튜브슬라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패밀리레프트슬라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패밀리슬라이드</p> </div> </div>
	토네이도 슬라이드	<p>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실린더형통 또는 깔대기형통(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 월드엘리슬라이드, 슈퍼엑스슬라이드, 토네이도 엑스, 메일스트롬, 쓰나미슬라이드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토네이도슬라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토네이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p> </div> </div>

분류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물놀이형	부메랑고	<p>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부메랑 슬라이드, 웨이브슬라이드, 사이드 와인더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자이언트부메랑고</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부메랑고</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이드와인더</p> </div> </div>
	마스터 블라스트	<p>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에 물분사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해 이용자가 튜브를 가속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로켓슬라이드, 몬스터블라스트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마스터블라스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워터코스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로켓슬라이드</p> </div> </div>
	서핑라이더	<p>유속이 빠른 경사 구간을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서핑을 즐기는 시설·기구(플로우라이더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핑라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플로우라이더</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와일드서핑</p> </div> </div>
	수중모험 놀이	<p>물총, 슬라이드, 물바가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종합 시설·기구(모험놀이 어린이풀, 자이언트 워터플렉스, 스플레쉬어드벤처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수중모험놀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쿠아플레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어린이풀(MLPS)</p> </div> </div>
	워터 에어바운스	<p>물놀이형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에어슬라이드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에어바운스 워터슬라이드</p>

나. 확인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유형	예시	예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사진 및 정의)
가) 주 행 형	미니기차	 <p>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p>
	이티로보트	 <p>정원 2인 이하인 승용물을 2대 이하로 연결하여 전기 동력으로 짧은 순환형 궤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배터리카	 <p>정원 2인 이하인 배터리 전기 동력 4륜 승용물을 이용자 스스로 핸들 조작하여 일정한 지역 내를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멜로디페트	 <p>정원 2인 이하인 동물모형의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별도의 안전울타리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수상사이클 & 페달보트	 <p>수심 0.5 m 이하로 담수한 인공저수조에서 부양되는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발 또는 손으로 페달을 돌려 수면 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배터리보트	 <p>수심 0.5 m 이하로 담수한 인공저수조에서 부양되는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배터리 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5 km/h 미만의 속도로 수면 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유형	예시	예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사진 및 정의)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1인승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피칭롤링 회전하는 시설(안전매트 위에 설치)에 탑승하여 로데오타기를 체험하는 유기기구
	회전형 라이더		야자수, 회전목마, 문어, 로봇, 티컵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저속 회전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미니라이더		로봇, 자동차, 동물, 기차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병진, 요동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승용물이 바닥 또는 상부의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1자유도 이상의 운동(저속회전, 병진, 요동 등)을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서 입체적인 움직임을 체험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5인승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 관람형	미니시물레이션		승용물이 바닥 또는 상부의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1자유도 이상의 운동(저속회전, 병진, 요동 등)을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서 핸들 등으로 직접 조작하여 입체적인 움직임을 체험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5인승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		1열로 구성된 좌석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하여 저속으로 (병진, 요동 등)시켜, 이용자가 영상을 관람하며 입체적인 체험을 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10인 이하)
	3D·4D입체 영화관(좌석 고정영상시설)		이용자가 보조기구 또는 직접 눈으로 입체 영상물을 보며 스탠딩 또는 진동만을 주는 좌석에 앉아 음향, 조명 등 다양한 효과를 주어 이용객이 체험하는 유기기구

영양	예시	예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사진 및 정의)	
	봉봉뽀뽀		트램폴린 위에서 이용자가 뛰며 즐기는 유기기구
	미니모험놀이		롤러슬라이드, 타잔타기, 무지개언덕, 원통형건너기, 미끄럼타기, 볼대포 등 복합 놀이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 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탑승높이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라) 영양이벤트	미니사격		코르크 또는 고무마개를 쏘아 고정되어 있는 과녁을 맞추는 유기기구(스크린사격, BB탄 등 연사 발사 제외)
	공쏘기		공을 쏘아서 표적에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광선총		광선총을 쏘아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굴리기		공을 굴려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표적맞추기		작은 화살을 던져 표적을 맞추는 유기기구

유형	예시	예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사진 및 정의)	
유 형 별 예 시	물쏘기		물총을 이용하여 표적을 맞추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미니볼링		공을 목표지점까지 굴리는 유기기구
	미니농구		공을 림에 골인시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던지기		공을 던져 목표물을 맞추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차기		가상의 골대에 공을 발로 차서 넣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에어하키		2인이 손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상대방 골에 퍽을 집어넣어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망치치기		손망치로 화면 및 표적을 맞추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편치		주먹이나 발로 목표물을 때려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영양	예시	예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사진 및 정의)	
영양 게임	미니야구		야구공을 던져 가상의 야구게임을 즐기는 유기기구
	스키타기		스키 발판에 서서 양 옆 손잡이를 잡고 화면의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
	팔씨름		팔모형의 기계와 팔씨름을 겨루는 유기기구
	오토바이 타기		고정된 오토바이모형의 좌석에 앉아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오토바이타기를 체험하는 유기기구
	자동차경주		운전석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 및 레버를 조작하여 운전을 즐기는 유기기구
	자전거타기		고정된 자전거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을 조작하여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유기기구
	보트타기		고정된 보트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 보트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
	말타기		말 모형의 좌석에 앉아 승마체험을 즐기는 유기기구(단, 화면이 있는 경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 만 해당됨.)

유형	예시	예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사진 및 정의)	
놀이영역	뮤직댄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발판, 드럼 등을 밟거나 두드리며 즐기는 유기기구
	수상기구 타기		수상기구형태의 발판에 서서 화면을 통해 수상 기구를 타는 체험을 하는 유기기구
	건슈팅		화면의 적을 향해 기기와 연결된 전자총을 쏘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미니 슬라이드		바닥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물놀이형 유기기구(슬라이드 길이 10 m이하, 탑승높이 2 m이하, 수심 1 m이하)
	미니수중 모험놀이		물버킷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등 복합놀이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슬라이드 전체길이 10 m이하, 탑승높이 2 m이하, 수심 1 m이하)
	미니워터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주입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탑승높이 3 m이하, 설치면적 120 m ² 이하, 수심 1 m이하이며, 수심 및 착지부 풀 전용)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인 쇄 : 2018년 7월

발 행 : 2018년 7월

공동발행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은 향후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매뉴얼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사할 수 없음.